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267-10

통계청승인번호 117067

# 2019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 Contents

## 제1장 / 서론

1. 발간목적 .....	3
2. 법적근거 .....	3
3. 자료수집과정 .....	4
4. 자료분석 .....	4
5. 주요내용 .....	4

## 제2장 /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1. 노인학대 신고접수 .....	9
1) 전체 신고접수 .....	9
2)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	12
3) 신고자 유형 .....	16
4) 신고접수 및 인지경로 유형 .....	20
5) 발생장소별 노인학대 신고 건수 .....	23
2. 노인학대 상담 .....	24
1) 월별 상담횟수 .....	24
2) 지역 및 기관별 학대상담방법에 따른 상담 구분 .....	25
3) 지역 및 기관별 학대상담과정에 따른 상담 구분 .....	28
4) 지역 및 기관별 전체 상담횟수 .....	30
5) 지역 및 기관별 한 사례당 상담횟수 .....	32
6)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	35



# Contents

## 제3장 /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1. 현장조사 .....	39
2. 사례판정 .....	42

## 제4장 / 노인학대 사례 분석 결과

1. 학대피해노인 현황 .....	51
1) 65세 인구 수 대비 학대피해노인 성별 .....	51
2)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	51
3)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노인 성별 .....	52
4) 학대피해노인 성별 노인학대 유형 .....	54
5) 학대피해노인 연령대별 노인학대 유형 .....	55
6) 학대피해노인 결혼 유형 .....	56
7) 학대행위자와의 동거여부 및 동거자 유형 .....	57
8)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	58
9) 학대피해노인 주거형태 .....	59
10)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	59
11) 학대피해노인 교육정도 .....	60
12) 학대피해노인 직업유형 .....	60
13) 학대피해노인 건강상태 .....	61
14) 학대피해노인 일상생활 정도 .....	64
15) 학대피해노인 제공서비스 현황 .....	66
2. 학대행위자 현황 .....	69
1)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	69
2) 지역 및 기관별 학대행위자 성별 .....	70

3)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72
4) 학대행위자 결혼유형	77
5)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77
6) 학대행위자 교육정도	78
7)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79
8) 학대행위자 건강상태	79
9) 학대행위자 제공서비스 현황	81
<b>3. 노인학대 유형 및 특성</b>	<b>83</b>
1) 노인학대 유형 I (학대피해노인 수)	83
2) 노인학대 유형 II (학대 유형 건수)	84
3)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성별	87
4)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연령	87
5)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의 관계	88
6)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89
7) 학대발생장소	90
8) 학대발생빈도	92
9) 학대지속기간	94
10) 학대발생원인(학대행위자 원인)	95
11) 학대발생원인(가족-환경원인)	98

## 제5장 / 특성별 노인학대 사례 분석 결과

1. 경제적학대 현황	101
1) 지역 및 기관별 경제적학대 현황	101
2) 경제적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103



# Contents

3) 경제적학대 학대행위자 유형 .....	104
4) 경제적학대 학대행위자 연령대 .....	105
5) 경제적학대 학대발생장소 .....	106
6) 경제적학대 학대발생빈도 .....	107
7) 경제적학대 학대지속기간 .....	108
8) 경제적학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	108
2.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학대현황 .....	109
1)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현황 .....	109
2)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성별 및 연령대 .....	111
3)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학대행위자 유형 .....	113
4)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학대유형 .....	114
5)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학대발생장소 .....	115
6)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학대발생빈도 .....	116
7)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학대지속기간 .....	117
8)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가구형태 .....	118
3. 시설학대 현황 .....	119
1) 지역 및 기관별 시설학대 현황 .....	119
2) 시설학대 신고자 유형 .....	122
3)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	124
4) 시설학대 학대유형 .....	125
5) 시설학대 학대발생장소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결혼유형 .....	126
6) 시설학대 학대발생빈도 .....	127
7) 시설학대 학대지속기간 .....	128
8)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	129
9)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	130

10) 시설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	131
4. 재학대 현황 .....	132
1) 지역 및 기관별 재학대 현황 .....	132
2) 재학대 신고자 유형 .....	134
3)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	136
4) 재학대 사례판정 .....	137
5) 재학대 학대행위자 유형 .....	138
6) 재학대 사례의 학대유형 .....	139
7) 재학대 학대발생장소 .....	139
8) 재학대 학대발생빈도 .....	141
9) 재학대 학대지속기간 .....	143
10)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	144
11)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	144
12)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	146
13) 재학대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의 동거여부 .....	146
14) 재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	147
15) 재학대 학대행위자 중독 유형 .....	148

## 제6장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현황

1.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실적 .....	151
1) 보호노인 현황 .....	151
2) 보호노인 결혼 유형 .....	153
3) 보호노인 동거자 유형 .....	154
4) 보호노인 가구형태 .....	154



# Contents

- 5) 보호노인 주거형태 ..... 155
- 6) 보호노인 학대 유형 ..... 156
- 7) 보호노인 치매여부 ..... 157
- 8) 보호노인의 우울증 검사 ..... 158
- 9) 퇴소 후 거주 현황 ..... 158
- 10) 쉼터 서비스 제공 현황(입소자) ..... 159
- 11) 쉼터 서비스 제공 현황(이용자) ..... 160

## 제7장 / 연도별 노인학대 예방 사업 (2005~2019년)

- 1. 연도별 학대신고접수 건수 ..... 165
- 2. 연도별 재학대 건수 ..... 166
- 3. 연도별 신고자 유형 ..... 167
- 4. 연도별 전체 상담횟수 ..... 169
- 5.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 170
- 6. 연도별 생활시설 학대 추이 ..... 171
- 7. 연도별 현장조사 현황 ..... 172
- 8.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 173
- 9.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 174
- 10.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 175
- 11.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 178
- 12.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 179
- 13. 연도별 학대 유형 건수 ..... 181
- 14.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 182
- 15. 연도별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 183
- 16.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 184

## 제8장 / 부 록

---

- 노인학대사례 업무진행도 ..... 187
-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 188



# Table Contents

[표 2-1]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	10
[표 2-2] 월별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	11
[표 2-3]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	12
[표 2-4]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율 .....	14
[표 2-5] 신고자 유형 I .....	18
[표 2-6] 신고자 유형 II (신고의무자) .....	18
[표 2-7] 신고자 유형 III (비신고의무자) .....	19
[표 2-8] 신고접수 경로 .....	20
[표 2-9] 신고접수 유형 .....	21
[표 2-10] 신고 인지경로 유형별 신고자 구분 .....	22
[표 2-11] 발생장소별 노인학대 신고건수 .....	23
[표 2-12] 월별 상담횟수 .....	24
[표 2-13] 지역 및 기관별 학대상담방법에 따른 상담 구분 .....	26
[표 2-14] 지역 및 기관별 학대상담과정에 따른 상담 구분 .....	28
[표 2-15] 지역 및 기관별 전체 상담횟수 .....	30
[표 2-16] 지역 및 기관별 한 사례당 평균 상담횟수 .....	32
[표 2-17]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	35
[표 3-1] 현장조사 .....	39
[표 3-2] 지역 및 기관별 현장조사 및 방문상담 .....	40
[표 3-3] 지역 및 기관별 사례판정 결과 .....	43
[표 3-4] 사례판정 결과별 노인학대 유형 .....	45
[표 3-5] 사례판정 결과별 신고자 유형 .....	46
[표 4-1] 65세 인구 수 대비 학대피해노인 성별 분포 .....	51
[표 4-2] 학대피해노인 성별 연령분포 .....	52
[표 4-3]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노인 성별 .....	52
[표 4-4] 학대피해노인 성별 노인학대 유형 .....	54
[표 4-5] 학대피해노인 연령대별 노인학대 유형 .....	55
[표 4-6] 학대피해노인 결혼 유형 .....	56
[표 4-7] 학대행위자와의 동거여부 .....	57

[표 4-8] 학대피해노인 동거자 유형 .....	57
[표 4-9]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	58
[표 4-10] 학대피해노인 주거형태 .....	59
[표 4-11]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	59
[표 4-12] 학대피해노인 교육정도 .....	60
[표 4-13] 학대피해노인 직업유형 .....	60
[표 4-14] 학대피해노인 질병 유형 .....	61
[표 4-15] 학대피해노인 장애 수 .....	62
[표 4-16] 학대피해노인 장애유형 .....	63
[표 4-17]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	64
[표 4-18] 학대피해노인 중독 유형 .....	64
[표 4-19] 학대피해노인 일상생활 정도 .....	65
[표 4-20] 학대피해노인 제공서비스 현황 .....	67
[표 4-21] 학대행위자 성별 연령분포 .....	69
[표 4-22] 지역 및 기관별 학대행위자 성별 .....	70
[표 4-23]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	72
[표 4-24] 학대행위자 연령별 학대행위자 유형 분포 .....	73
[표 4-25]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별 학대행위자 유형 .....	74
[표 4-26] 학대피해노인 학대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	75
[표 4-27] 학대피해노인 학대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유형 .....	76
[표 4-28] 학대행위자 결혼유형 .....	77
[표 4-29]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	77
[표 4-30] 학대행위자 연령대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	78
[표 4-31] 학대행위자 교육정도 .....	78
[표 4-32]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	79
[표 4-33] 학대행위자 장애유형 .....	80
[표 4-34] 학대행위자 중독유형 .....	81
[표 4-35] 학대행위자 제공서비스 현황 .....	82
[표 4-36] 노인학대 유형 I (학대피해노인 수) .....	83



# Table Contents

[표 4-37] 노인학대 유형II(학대 유형 건수) .....	84
[표 4-38] 노인학대 유형별 구체적 행위 .....	86
[표 4-39]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성별 .....	87
[표 4-40]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연령 .....	88
[표 4-41]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	89
[표 4-42]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	90
[표 4-43] 학대발생장소 .....	91
[표 4-44] 학대발생장소별에 따른 학대유형 .....	92
[표 4-45] 학대발생빈도 .....	93
[표 4-46] 학대발생빈도별 노인학대 유형 .....	93
[표 4-47] 학대지속기간 .....	94
[표 4-48] 학대행위자 원인 .....	96
[표 4-49] 학대행위자 원인별 노인학대 유형 .....	97
[표 4-50] 가족-환경 원인 .....	98
[표 5-1] 지역 및 기관별 경제적학대 현황 .....	101
[표 5-2] 경제적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	103
[표 5-3] 경제적학대 행위자 유형 .....	104
[표 5-4] 경제적학대 행위자 연령대 .....	105
[표 5-5] 경제적학대 학대발생장소 .....	106
[표 5-6] 경제적학대 학대발생빈도 .....	107
[표 5-7] 경제적학대 학대지속기간 .....	108
[표 5-8] 경제적학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	108
[표 5-9]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현황 .....	109
[표 5-10]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성별 .....	111
[표 5-11]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연령대 .....	112
[표 5-12]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과 학대행위자 유형 .....	113
[표 5-13]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학대유형 .....	114
[표 5-14]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학대발생장소 .....	115
[표 5-15]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학대발생빈도 .....	116

[표 5-16]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학대지속기간	117
[표 5-17]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가구형태	118
[표 5-18]	지역 및 기관별 시설학대 현황	119
[표 5-19]	시설학대 신고자 유형	122
[표 5-20]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124
[표 5-21]	시설학대 학대 유형	125
[표 5-22]	시설학대 학대발생장소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결혼유형	126
[표 5-23]	시설학대 학대발생빈도	127
[표 5-24]	시설학대 학대지속기간	128
[표 5-25]	시설학대 학대발생빈도별 학대지속기간	129
[표 5-26]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30
[표 5-27]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130
[표 5-28]	시설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131
[표 5-29]	지역 및 기관별 재학대 현황	132
[표 5-30]	신규-재학대 신고자 유형	135
[표 5-31]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136
[표 5-32]	신규-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사례판정	137
[표 5-33]	신규-재학대 학대행위자 유형	138
[표 5-34]	재학대 사례의 학대유형	139
[표 5-35]	신규-재학대 학대발생장소	140
[표 5-36]	재학대 학대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유형	141
[표 5-37]	신규-재학대 학대발생빈도	142
[표 5-38]	신규-재학대 학대지속기간	143
[표 5-39]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44
[표 5-40]	신규-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144
[표 5-41]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별 학대 유형 건수	145
[표 5-42]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146
[표 5-43]	재학대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의 동거여부	147
[표 5-44]	재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147



# Table Contents

[표 5-45] 재학대 학대행위자 중독 유형 .....	148
[표 6-1] 보호노인 현황 .....	151
[표 6-2] 보호노인 성별 및 연령대 .....	152
[표 6-3] 보호노인 결혼유형 .....	153
[표 6-4] 보호노인 동거자 유형 .....	154
[표 6-5] 보호노인 가구형태 .....	154
[표 6-6] 보호노인 주거형태 .....	155
[표 6-7] 보호노인 학대 유형 .....	156
[표 6-8] 보호노인 치매여부 .....	157
[표 6-9] 보호노인 우울증 검사결과 .....	158
[표 6-10] 퇴소 후 거주현황 .....	158
[표 6-11] 쉼터 서비스 제공 현황(입퇴소자) .....	159
[표 6-12] 쉼터 서비스 제공 현황(이용자) .....	161
[표 7-1] 연도별 학대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	165
[표 7-2] 연도별 재학대 건수 및 비율 .....	166
[표 7-3] 연도별 신고자 유형별 신고건수 및 비율 .....	167
[표 7-4] 연도별 전체 상담횟수 및 비율 .....	169
[표 7-5]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	170
[표 7-6] 연도별 생활시설 학대 추이 .....	171
[표 7-7] 연도별 현장조사 현황 .....	172
[표 7-8]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	173
[표 7-9]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	174
[표 7-10]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	176
[표 7-11]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	178
[표 7-12]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	180
[표 7-13] 연도별 학대 유형 건수 .....	181
[표 7-14]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	182
[표 7-15] 연도별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	183
[표 7-16]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	184

# Picture Contents

[그림 2-1] 전체 신고건수 비율	10
[그림 2-2] 학대사례 건수 대비 재학대 건수 비율	10
[그림 2-3] 월별 신고접수 건수 추이	11
[그림 2-4] 지역 기관별 전체 신고접수 건수	13
[그림 2-5] 기관별 노인학대 신고접수율(노인인구 천명당)	16
[그림 2-6] 신고자 유형 I	18
[그림 2-7] 신고자 유형 II	19
[그림 2-8] 신고접수 유형	21
[그림 2-9] 신고의무자의 신고 인지경로	22
[그림 2-10] 비신고의무자의 신고 인지경로	22
[그림 2-11] 월별 상담횟수	25
[그림 2-12] 학대 상담구분	27
[그림 2-13] 지역 및 기관별 전체 상담횟수	31
[그림 2-14] 기관별 한 사례당 상담 횟수	34
[그림 3-1] 지역별 사례판정 결과	45
[그림 3-2] 사례판정 결과별 노인학대 유형	46
[그림 3-3] 사례판정 결과별 신고자 유형	47
[그림 4-1] 학대피해노인 성별 연령분포	52
[그림 4-2] 학대피해노인 성별 노인학대 유형	54
[그림 4-3] 학대피해노인 연령대별 노인학대 유형	56
[그림 4-4] 학대행위자 연령분포	69
[그림 4-5]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72
[그림 4-6] 노인학대 유형 I (학대피해노인 수)	84
[그림 4-7] 노인학대 유형 II (학대 유형 건수)	84
[그림 4-8] 학대발생장소	91
[그림 4-9] 학대발생빈도	93
[그림 4-10] 학대지속기간	95
[그림 4-11] 학대행위자 원인 건수 및 비율	96
[그림 4-12] 학대행위자 원인별 노인학대 주요유형	97



# Picture Contents

[그림 4-13] 가족-환경 원인 .....	98
[그림 5-1] 지역 및 기관별 경제적학대 현황 .....	103
[그림 5-2] 경제적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	104
[그림 5-3] 경제적학대 행위자 유형 .....	105
[그림 5-4] 경제적학대 행위자 연령대 .....	106
[그림 5-5] 경제적학대 학대발생장소 .....	106
[그림 5-6] 경제적학대 학대발생빈도 .....	107
[그림 5-7] 경제적학대 학대지속기간 .....	108
[그림 5-8]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현황 .....	111
[그림 5-9]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성별 .....	111
[그림 5-10]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연령대 .....	112
[그림 5-11]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과 학대행위자 유형 .....	113
[그림 5-12]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학대유형 .....	114
[그림 5-13]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학대발생장소 .....	115
[그림 5-14]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학대발생빈도 .....	116
[그림 5-15]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학대지속기간 .....	117
[그림 5-16]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가구형태 .....	118
[그림 5-17]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	124
[그림 5-18] 시설학대 학대 유형 .....	125
[그림 5-19] 시설학대 학대발생빈도 .....	127
[그림 5-20] 시설학대 학대지속기간 .....	128
[그림 5-21] 시설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	131
[그림 5-22] 기관별 재학대 접수 건수 및 비율 .....	134
[그림 5-23]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	136
[그림 5-24]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사례판정 비율 .....	137
[그림 5-25] 신규-재학대 학대행위자 유형 .....	138
[그림 5-26] 재학대 사례의 학대유형 .....	139
[그림 5-27] 신규-재학대 학대발생장소 .....	140
[그림 5-28] 재학대 학대발생빈도 .....	142

[그림 5-29] 신규-재학대 학대지속기간 .....	143
[그림 5-30]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	145
[그림 5-31]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별 학대 유형 .....	146
[그림 5-32] 재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	148
[그림 6-1] 보호노인 성별 및 연령대 .....	153
[그림 6-2] 보호노인 가구형태 .....	155
[그림 6-3] 보호노인 주거형태 .....	156
[그림 6-4] 보호노인 학대 유형 .....	157
[그림 7-1] 연도별 신고접수 비율 추이 .....	166
[그림 7-2] 연도별 재학대 건수 및 비율 추이 .....	166
[그림 7-3] 연도별 신고자 유형별 신고 비율 추이 .....	168
[그림 7-4] 연도별 전체 상담횟수 비율 추이 .....	169
[그림 7-5]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	171
[그림 7-6] 연도별 현장조사 건수 및 비율 추이 .....	172
[그림 7-7] 연도별 사례판정 비율 추이 .....	173
[그림 7-8]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비율 추이 .....	175
[그림 7-9]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	177
[그림 7-10] 연도별 학대행위자 본인 추이 .....	177
[그림 7-11]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비율 추이 .....	179
[그림 7-12]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비율 추이 .....	180
[그림 7-13] 연도별 학대 유형 비율 추이 .....	181
[그림 7-14]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추이 .....	182
[그림 7-15] 연도별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추이 .....	183
[그림 7-16]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치매 비율 추이 .....	184





2019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 노인학대 관련 용어 해설







# 노인학대 관련 용어 해설

## 노인보호전문기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언,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등의 역할을 수행함(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1항)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신고 접수, 조사 및 개입 등의 노인학대예방사업을 수행함(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학대피해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전문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노인복지법 제39조의19)

### 보호노인

보호노인이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입소자와 이용자의 합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입소자는 쉼터에서 숙식과 함께 치유 프로그램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 받고 있는 대상을 말하는 것이며, 이용자는 쉼터에서 제공하는 단기 치유프로그램 및 상담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대상을 의미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 상담서비스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의 문제해결을 위해 개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의 전문적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

### ● 학대상담

학대상담이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로 판단한 사례에 대한 상담을 의미함

### ● 일반상담

단순 정보제공이나 기관안내 등의 문의 및 학대의심사례로 접수되었으나 일반사례로 판정된 사례의 상담을 의미함.



- **접수상담**

신고접수 시의 초기 상담을 의미함

- **진행상담**

사례개입을 위해 진행되는 모든 상담을 의미하여,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상담, 학대행위자 상담, 관련자 및 주변인 상담, 현장조사 및 방문 상담 등을 말함

- **종결상담**

학대피해노인의 위험요인 제거 및 학대행위자 분리 등 학대피해노인의 안전이 확보되어 종결 앞두고 실시한 상담을 말함. 사례 종결여부는 종결지표를 통해 결정되며, 이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종결 이전에 확인하는 점검리스트의 기능을 함

- **사후관리**

종결된 사례에 대해 학대피해노인이 안전한지 학대 재발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전화 및 방문 상담 등을 말함

- **복지서비스**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게 각종 사회복지 제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필요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 **법률서비스**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의 법적 문제해결을 위해 법률에 대한 정보나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 **의료서비스**

학대피해노인의 건강증진 및 학대행위자의 중독문제 해결을 위해 제공하는 의료적 치료 서비스

- **보호서비스**

학대피해노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지킴이 연결 및 거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 학대행위자

-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행하는 자

## ▶ 부양의무자

- 노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조할 의무가 있는 자로 노인의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노인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해당됨

## ▶ 보호자

- 노인을 보호자는 자로 부양의무자 및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사람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를 받는 사람

## ▶ 노인학대 신고

### ▣ 신고접수

-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 된 상담 및 신고목적으로 접수된 모든 사례

### 재학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되어 종결되었던 사례 중 다시 학대가 발생하여 신고 된 사례로 당해 연도(2019년) 외에 과년도 사례가 포함되어 있음



## ■ 신고자 유형

### 신고의무자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가진 자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장애노인)관련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 시설 관련 종사자,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구급대의 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 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직군이 포함됨(노인복지법 제39조의6)

### 비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모든 자로 본 보고서에서는 친족, 타인, 관련기관, 학대행위자 본인, 학대피해노인 본인 등으로 분류됨

## ■ 현장조사

- 신고 접수된 노인학대의심사례의 학대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로 신고 된 자를 조사하기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최초의 방문을 의미함

### 응급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 당시 응급한 노인학대 상황으로 의심되며,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1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례

### 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 당시 노인학대로 의심되어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가운데, 응급 학대의심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이며, 신고접수를 받은 후 7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 실시

## ■ 사례판정

- 현장조사 및 신고접수 당시 파악된 정보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중심으로 응급 사례, 비응급 사례, 잠재적 사례, 일반사례로 분류하는 과정

## ➔ 노인학대 사례

### ▣ 학대사례

-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로 판정된 사례를 의미함

#### 응급 사례

노인학대가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학대로 인해 즉각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됨. 또한 학대행위자로부터 즉시 격리가 요구되며, 노인의 생명 혹은 안전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말함

#### 비응급 사례

노인학대가 발생하였으나, 학대피해노인의 안전이 확보되어 응급이 아닌 경우,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됨

#### 잠재적 사례

학대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노인부양, 노인과 가족 간의 의사소통 기술부족이나 갈등 등 학대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됨

### ▣ 일반사례

- 신고접수 된 사례 중 단순 정보제공이나 기관 안내 등의 문의로 학대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실관계 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위험요인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됨



## ➔ 노인학대 유형

### ▣ 행위에 따른 노인학대 유형

####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 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 시키는 행위

####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 미사용 등)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중복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유형이 두 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발생한 학대 유형

### ▣ 발생장소에 따른 노인학대 구분

#### 생활시설 학대

노인복지법 제31조의제1호, 제2호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과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의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 이용시설 학대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등)과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등)과 같은 이용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 병원 학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원, 병원(요양병원), 종합병원 등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 공공장소 학대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나 여럿이 함께 있는 장소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 ▣ 노(老) - 노(老)학대

- 65세 이상의 고령의 학대행위자가 노인을 학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고령의 부부 간의 배우자 학대, 고령의 자녀 및 며느리 등에 의한 학대, 고령의 노인이 본인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 유형의 학대 등을 말함



## ➔ 가구형태

### ☑ 노인단독가구

- 다른 가구원 없이 노인 혼자 거주하는 가구형태

### ☑ 노인부부 가구

- 학대피해노인과 배우자만으로 이루어진 가구형태

### ☑ 자녀동거 가구

- 학대피해노인과 자녀만 동거하는 가구형태

### ☑ 손자녀동거 가구

- 학대피해노인과 손자녀만 동거하는 가구형태

### ☑ 자녀·손자녀 동거 가구

- 학대피해노인과 자녀 및 손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가구형태

## ➔ 건강상태

### ☑ 치매

#### 치매진단

의학적 검사를 통해 의사가 치매로 진단한 상태

#### 치매의심

간이정신상태검사지표나 학대피해노인의 상황에 따라 치매로 의심되는 상태

### ☑ ADL/IADL

#### 일상생활수행능력; ADL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등 기본적인 일상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IADL

몸단장하기, 집안일 하기, 식사준비하기, 빨래하기 등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



2019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요약







## 개요

- 본 보고서는 전국 34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상담사업 사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본 보고서는 2019년 한 해 동안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및 상담이 진행된 사례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노인학대 현황을 분석하여 추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업방향과 노인보호 정책마련에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 본 보고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 전국 34개 지역노인 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된 16,071건의 사례를 분석하였음.
- 신고접수 건수 16,071건에 대해 현장조사와 상담진행을 통하여 확인된 학대사례는 5,243건임.
- 본 보고서 자료는 노인학대 신고접수, 상담, 학대 유형, 현장조사, 학대피해노인, 학대행위자, 학대발생원인, 서비스제공에 대한 각각의 현황을 정리하였음.
- 또한 노인복지법 개정(2017. 6. 3.)에 따라 2018년 1월 이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를 노인학대로 규정하였음. 단, 기존 개입한 노인학대 사례(65세 미만)를 중심으로 상담 및 서비스 제공 등이 이루어져 일부 항목의 경우 기존 사례를 포함한 수치임.
- 지역별 현황의 경우, 각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처리현황을 단순 집계한 것으로서 각 유형별 현황의 숫자가 많지 않아 통계적 유의미성을 갖지 못하므로 단순비교에 대한 주의가 요망됨.



##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 노인학대 신고접수

- 2019년 한 해 동안 전국 34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신고 건수는 16,071건이었음.
  - 일반사례<sup>1)</sup> 10,828건(67.4%), 학대사례<sup>2)</sup> 5,243건(32.6%)
- 전년도 대비 전체신고 건수는 3.8% 증가(15,482건 → 16,071건)하였음.
  - 전체사례<sup>3)</sup> 중 일반사례의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음.
  - 일반사례의 경우 전년도 대비 5.2% 증가(10,294건 → 10,828건)
  - 학대사례의 경우 전년도 대비 1.1% 증가(5,188건 → 5,243건)
  - 다만 학대사례는 전년도 대비 전체신고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9%p 감소
    - 일반사례 비중('18년 66.5% → '19년 67.4%)
    - 학대사례 비중('18년 33.5% → '19년 32.6%)
- 학대사례 5,243건 중 신고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914건(17.4%), 서울특별시 534건(10.2%), 경상북도 492건(9.4%)의 순으로 나타남.

### 신고자 유형

- 학대사례 5,243건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는 877건(16.7%)이며 비신고의무자는 4,366건(83.3%)으로 나타남.
  -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 877건에 대한 세부 유형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75건(42.8%),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225건(25.7%), 가정폭력관련 종사자 83건(9.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의 비중이 68.5%로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특정 집단에 집중되어 있음.

---

1) 일반사례란, 신고접수된 사례 중 단순 정보제공이나 기관 안내 등의 문의로 학대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실관계 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위험요인이 드러나지 않는 사례를 의미함.

2) 학대사례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로 판정된 사례를 의미함.

3) 전체사례란, 학대사례와 일반사례를 합한 모든 신고 사례를 의미함.

- 노인학대 예방교육이 일부 집단에 집중되어 있어 다양한 신고의무자 직군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교육이 필요함.
  - 신고의무자의 노인학대 신고 인지경로 유형 중 768건(87.6%)이 “이미 인지가 있는 사람”으로 전년대비 1.2%p 증가('18년 663건, 86.4%)하여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이러한 결과는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다양한 신고의무자 집단을 대상으로 활발한 노인학대 예방교육이 필요함.
- 학대사례 5,243건 중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는 4,366건(83.3%)으로 신고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전체 신고자 유형 중 비신고의무자 신고건수에 대한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지킴이단<sup>4)</sup>, 경찰관 등에 의한 관련기관<sup>5)</sup>이 3,358건(76.9%), 친족 386건(8.8%), 학대피해노인 본인 358건(8.2%), 타인이 259건(5.9%)의 순으로 나타남.

#### ▣ 신고접수 경로 및 접수유형, 인지경로 유형

- 2019년 학대사례 5,243건 중 신고접수 경로 유형은 112이관을 통한 접수가 2,529건 (48.2%)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112이관 2,529건(48.2%), 자체접수 2,231건(42.6%), 행정복지센터 185건(3.5%), 건강보험공단 61건(1.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가장 높은 신고접수 유형으로는 서신으로, 총 2,569건(49.0%)이 신고되었으며 과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함.
  - 그 외 세부 유형으로 전화 2,454건(46.8%), 대면 159건(3.0%), 온라인 61건(1.2%) 등이 있음.

4)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조직된 실버스마일 사업단(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통해 노인학대 사례 발굴·예방, 학대사례의 사후관리 등을 목적으로 노인학대 예방 교육·홍보물, 교육매뉴얼을 개발 및 배포업무를 하는 사업단을 의미함.

5) 관련기관에는 어르신 지킴이단, 경찰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기타관련기관 종사자 등이 해당됨.



- 학대사례 중 신고 인지경로 유형은 “이미 인지가 있는 사람”이 4,219건(80.5%)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미 개입 경험이 있으며 직접 홍보의 경우”가 278건(5.3%), “타기관 안내”가 243건(4.6%)으로 나타남.
  - 신고자가 이미 인지가 있어 신고하거나 직접홍보를 통해 신고한 경우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예방 교육과 홍보의 효과를 말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전략이 필요함.
  - 특히 비신고자의 경우 이미 인지가 있어 신고한 비율이 전년대비 1.9%p 증가했다는 결과를 통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함.
    - 비신고자의 신고 인지경로(이미 인지가 있는 경우) : (‘18년) 3,407건(77.1%) → (‘19년) 3,451건(79.0%)

### ▣ 노인학대 상담

- 신고접수 건수 16,071건에 대한 전체 상담횟수는 140,354회임.
  - 학대상담 횟수 110,226회, 한 사례당 평균 상담횟수 21.0회
  - 일반상담 횟수 30,128회, 한 사례당 평균 상담횟수 2.8회
- 전년대비 상담횟수는 9.7% 증가(127,965회 → 140,354회)하였음.
  - 학대상담 횟수 7.9% 증가(102,172회 → 110,226회)
  - 일반상담 횟수 16.8% 증가(25,793회 → 30,128회)
- 학대상담 횟수 110,226회를 상담과정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진행상담 81,320회(73.8%), 사후관리 18,135회(16.5%), 종결상담 5,422회(4.9%), 접수상담 5,348회(4.9%) 순으로 나타남.

### ▣ 상담원 업무량

- 상담원의 업무량 분석지표로는 신고접수 건수, 상담 횟수, 현장조사 건수, 방문상담 횟수, 학대피해노인 제공서비스 횟수, 학대행위자 제공서비스 횟수, 교육 횟수, 직접홍보 활동 횟수를 산정함.
- 노인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원은 신고접수 업무부터 현장조사, 서비스제공에 이르기까지 상담원 1인이 학대사례에 대한 모든 영역을 수행하는 업무구조로 상담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됨.

### ▣ 상담원 1인당 업무량

- 상담원 1인당 평균 업무량은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체 업무량을 상담원 272명(기관장 제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음.
  - 2019년 한 해 동안 상담원 1인당 신고접수 건수는 59.1건, 상담 횟수는 516.0회, 현장조사는 18.7건, 방문상담 횟수는 110.7회로 나타남.
  - 학대피해노인 1인당 제공서비스는 520.0회, 학대행위자 1인당 제공서비스는 109.3회임.

## ➔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 ▣ 현장조사 및 방문상담

- 2019년 전체 학대사례 5,243건 중 현장조사를 실시한 사례는 5,084건이며, 현장조사 실시비율은 97.0%임.
  - 학대사례의 경우 현장조사를 반드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의 완강한 거부, 학대피해노인의 건강악화로 인한 병원 및 시설입소, 학대피해노인의 이사 및 이주 또는 학대피해노인이 현장조사를 원하지 않고, 제3의 장소나 기관 내방 등을 원하여 불가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 현장조사 실시 비율 : '14년(93.5%) - '15년(95.8%) - '16년(92.8%) - '17년(96.1%) - '18년(95.7%) - '19년(97.0%)
- 전체 학대사례 5,243건에 대한 방문상담 횟수는 30,110회로 한 사례 당 방문상담 횟수는 5.7회로 나타남.
  - 현장조사와 방문상담은 학대피해노인을 직접 방문하여 진행되는 상담으로 학대피해노인의 주거환경 및 생활수준, 심리상태, 주변 자원 등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학대피해노인의 안전여부 및 생활상태 등을 확인하는데 용이함.

### ▣ 사례판정

- 2019년 전체 학대사례 5,243건 중 사례판정 비율은 응급 사례가 104건(2.0%), 비응급 사례가 3,322건(63.4%), 잠재적 사례가 1,817건(34.7%)으로 나타남.
  - 각 사례판정 유형 추이를 보면  
응급 사례의 경우 '15년(6.6%) → '19년(2.0%),



비응급 사례의 경우 '15년(59.5%) → '19년(63.4%),

잠재적 사례의 경우 '15년(33.9%) → '19년(34.7%)

- 응급 사례 및 잠재적 사례의 학대 유형은 “정서적 - 신체적 - 방임” 학대, 비응급 사례의 경우 “신체적 - 정서적 - 방임” 학대의 순으로 나타남.
  - 응급 사례 및 잠재적 사례의 경우 정서적 학대 비율이 높았으며, 비응급 사례는 신체적 학대 비율이 높게 나타남.

### ▣ 재학대

- 2019년 학대사례 5,243건 중 재학대 건수는 500건으로 9.5%에 해당되며 여성노인이 397명(79.4%), 남성노인이 103명(20.6%)으로 나타남.
  - 2010년~2011년 9% 이상이던 재학대 건수는 점차 감소하여 2016년 5.8%로 나타났으나, 2017년에 이어 2019년에도 증가추세를 보임
  - ※ 연도별 재학대율 : '14년(5.9%) - '15년(6.0%) - '16년(5.8%) - '17년(7.8%) - '18년(9.4%) - '19년(9.5%)

## ➔ 학대피해노인 현황

### ▣ 성별 및 연령

- 전체 학대사례 중 여성노인 3,973명(75.8%), 남성노인 1,270명(24.2%)으로 나타남.
- 학대피해노인의 성별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70대를 기점으로 학대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연령대별 학대피해노인 분포를 살펴보면 60대 919명(17.5%), 70대 2,346명(44.8%), 80대 1,617명(30.9%)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모두 정서적 학대가 높게 나타났으며 공통적으로 정서적 - 신체적 - 방임의 순으로 학대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남성노인의 학대 유형 : 정서적 학대 728건(38.4%) - 신체적 학대 637건(33.6%) - 방임 245건(12.9%)
  - 여성노인의 학대 유형 : 정서적 학대 2,737건(43.2%) - 신체적 학대 2,501건(39.5%) - 방임 496건(7.8%)

## ■ 결혼 및 동거가족

- 학대피해노인의 결혼유형을 살펴보면 배우자 있음이 3,036건(57.9%), 배우자 없음이 2,207건(42.1%)으로 나타남
- 전체 학대피해노인 5,243명 중 학대행위자와 동거하는 경우는 3,584명(68.4%)이며, 비동거는 1,659명(31.6%)으로 나타남.
- 학대행위자와 동거하는 3,584명에 대한 동거 가족유형(중복)은 총 5,408명이며, 그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배우자가 2,317명(42.8%)으로 가장 높고, 아들이 1,553명(28.7%), 손자녀가 419명(7.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학대피해노인의 가구형태를 살펴보면 노인부부가구가 1,669명(31.8%), 자녀동거가구가 1,588명(30.3%), 노인단독가구가 1,039명(19.8%)등의 순으로 나타남.  
 ※ 노인부부가구 증가 추이 : '14년(701건) - '15년(808건) - '16년(1,023건) - '17년(1,216건) - '18년(1,512건) - '19년(1,669건)
- 학대피해노인의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본인명의로 된 집에 거주하는 자택 3,177건(60.6%)으로 가장 높고, 전세가 489건(9.3%), 월세 및 의료복지시설이 407건(7.8%)의 순으로 나타남.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및 교육정도

- 학대피해노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810명으로 전체 학대피해노인의 15.4%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나타남.
- 학대피해노인의 교육정도를 살펴보면 초졸이 2,145명(40.9%)으로 가장 높았고 무학이 1,564명(29.8%), 중졸이 853명(16.3%)의 순으로 나타나 주로 초졸과 무학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직업유형은 학대피해노인의 주 수입원인 직업의 유무와 종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무직이 4,534명(86.5%)으로 가장 높고, 단순노무종사자가 229명(4.4%), 농·어·축산업 종사자가 179명(3.4%)으로 그 뒤를 이었음.

## ■ 건강상태

- 전체 학대피해노인 5,243명 중 하나 이상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는 4,212건임.
- 전체 학대피해노인 5,243명 중 하나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대피해노인은 528명으로 10.1%로 나타남.  
 - 528명에 해당하는 장애유형은 크게 신체장애 378건(71.6%), 정신장애 150건(28.4%)으로 분류됨.



- 세부 유형으로는 지체장애가 148건(28.0%), 우울장애가 116건(22.0%), 청각장애 84건(15.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체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가 의심되거나 진단을 받은 경우는 1,381명(26.3%)임.
  - 이 중 치매가 의심되는 치매의심이 550건(10.5%)이며 치매로 병원진단을 받은 치매진단은 831건(15.8%)으로 나타남.
- 전체 학대피해노인 중 하나 이상의 증독을 앓고 있는 경우는 64건으로 전체 학대사례의 1.2%에 해당되며, 64건에 대한 세부유형 중 알코올 사용 장애가 62건(96.9%)으로 나타나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전체 학대피해노인의 일상생활정도를 살펴보면 일상생활수행능력(ADL),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의 두 가지 영역에서 69% 이상이 “완전자립”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 학대피해노인 제공서비스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전체 학대사례 5,243건에 대해 총 141,442회로 한 사례당 평균 27.0회의 서비스가 제공되었음.
  - 이 중 상담서비스가 78,232회(55.3%)로 가장 높았고, 정보제공서비스가 52,629회(37.2%), 복지서비스 제공이 7,779회(5.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학대행위자 현황

#### ▣ 성별 및 연령대

- 전체 학대행위자는 5777명<sup>6)</sup>으로 남성이 4,004명(69.3%), 여성이 1,773명(30.7%)임.
  - 전체 학대행위자 5,777명 중 아들이 1,803명으로 31.2%에 해당하였으며, 이는 남성 학대행위자 4,004명 중 약 45.0%에 해당하는 수치임.
  - 따라서 학대행위자의 남성 비율이 높은 것은 학대행위자 유형의 아들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학대행위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70세 이상이 전체 학대행위자의 30.4%(1,759명)를 차지함.
  - 여성 학대행위자 1,773명 중 50~59세가 596명(33.6%), 60~69세가 446명(25.2%), 40~49세가 374명(21.1%)으로 나타남.

6)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의 수와 학대행위자의 수는 차이가 있음.

- 남성 학대행위자 4,004명 중 70세 이상이 1,507명(37.6%), 50~59세가 869명(21.7%), 40~49세가 810명(20.2%)으로 나타남.

### ▣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 전체 학대행위자 5,777건에 대한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들이 1,803명(31.2%), 배우자가 1,749명(30.3%), 기관이 1,067명(18.5%)의 순으로 나타남.
  - 아들, 배우자, 딸,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등 친족의 경우가 4,288명(74.2%)으로 학대행위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학대행위자가 본인인 경우는 200명(3.5%)에 해당되며 전년대비 0.7%p 감소하였음.
    - ※ 피해자 본인 : '18년(240건, 4.2%) - '19년(200건, 3.5%)

### ▣ 결혼 유형

- 학대행위자 결혼 유형은 크게 배우자 있음과 배우자 없음으로 구분되며 배우자 있음은 3,591명(62.2%), 배우자 없음은 2,186명(37.8%)으로 나타남.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및 교육정도

- 학대행위자의 5,777명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44명(9.4%)으로 나타남.
- 학대행위자의 교육정도 수준으로 살펴보면 고졸이 2,181명(37.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대졸 이상이 1,351명(23.4%)으로 나타남.
- 학대행위자의 직업유형은 무직이 3,385명(58.6%)으로 가장 높았고, 전문직이 650명(11.3%), 서비스·판매종사자가 627명(10.9%), 단순노무종사자가 425명(7.4%) 순으로 나타남.

### ▣ 건강상태

- 학대행위자 5,777명 중에서 하나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대행위자는 총 744명으로 전체 학대행위자의 12.9%에 해당됨.
  - 이에 해당하는 장애유형으로는 정신장애 472명(63.4%), 신체장애가 272명(36.6%)으로 나타남.
  - 세부 유형별로 보면 정신분열 247명(33.2%), 우울장애 163명(2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체 학대행위자 중 974명(16.9%)이 하나 이상의 중독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중 알코올 사용 장애가 925명(16.0%), 도박중독이 30명(0.5%), 약물 사용 장애가 19명(0.3%)으로 나타남.

### ▣ 학대행위자 제공서비스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행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학대행위자 5,777건에 대해 총 29,729회로 한 사례당 평균 5.1회의 서비스가 제공되었음.
  - 이는 학대피해노인에게 제공된 서비스 141,442회의 약 21.0% 수준임.
  - 학대행위자 제공서비스를 살펴보면 상담서비스가 15,964회(53.7%)로 가장 높고 정보제공서비스가 12,238회(41.2%) 등의 순으로 나타나 상담과 정보제공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 노인학대 유형 및 학대발생원인

### ▣ 노인학대 유형

- 여러 유형의 학대가 동시에 발생하는 학대 유형을 중복으로 집계한 것으로 2019년 학대 유형 건수는 8,229건<sup>7)</sup>으로 나타남.
  - 정서적 학대 3,465건(42.1%), 신체적 학대 3,138건(38.1%), 방임 741건(9.0%), 경제적 학대 426건(5.2%), 성적학대 218건(2.6%), 자기방임 200건(2.4%), 유기 41건(0.5%)순으로 나타남.
- 전체 학대유형 8,229건 중 여성은 6,332명(76.9%)이며, 남성은 1,897명(23.1%)으로 나타남.
  - 신체적 학대 : 여성 2,501명(79.7%), 남성 637명(20.3%)
  - 정서적 학대 : 여성 2,737명(79.0%), 남성 728명(21.0%)
  - 성적 학대 : 여성 174명(79.8%), 남성 44명(20.2%)
  - 경제적 학대 : 여성 301명(70.7%), 남성 125명(29.3%)
  - 방임 : 여성 496명(66.9%), 남성 245명(33.1%)
  - 자기방임 : 여성 101명(50.5%), 남성 99명(49.5%)
  - 유기 : 여성 22명(53.7%), 남성 19명(46.3%)

7)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노인학대 수치와 노인 학대 유형별 통계수치는 차이가 있음. 즉, 학대피해노인 1명이 학대행위자로부터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를 당한 경우, 학대사례는 1건이나 학대유형 건수는 2건으로 집계됨.

- 학대 유형별로 학대피해노인의 연령대 현황을 보면 주로 70~80대 비율이 76.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신체, 정서 학대 유형의 경우 70대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반면, 성적과 방임, 유기 학대 유형은 80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학대와 방임 학대의 경우 70대와 80대 모두 비슷한 비율로 발생함.
-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의 학대행위자 유형은 “배우자 - 아들 - 딸”이며, 방임의 경우는 “기관<sup>8)</sup> - 아들 - 딸” 순으로 나타남.
  - 방임의 경우, 자녀에 의한 방임과 노인복지시설 등의 기관을 이용하거나 입소한 학대피해노인을 방임하는 것을 모두 포함함.
  - 기타 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 유형 순위
    - 경제적 학대(아들 - 기관 - 배우자)
    - 성적 학대(기관 - 배우자 - 타인)
    - 유기(아들 - 딸 - 배우자, 피해자 본인, 친척)

## ▣ 학대발생장소

- 전체 학대사례 5,243건 중 노인학대 발생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4,450건(84.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가정 내 4,450건(84.9%), 생활시설 486건<sup>9)</sup>(9.2%), 이용시설 131건(2.5%), 기타 71건(1.4%), 공공장소 60건(1.1%), 병원 45건(0.9%) 등으로 나타남.
    - 매년 가정 내 학대 신고건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가정 내 학대발생 예방과 더불어 사례 발굴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이용시설의 경우 총 131건(2.5%)으로, 전년대비 약 3배 증가하였음.
- ※ 이용시설 현황 : '18년(41건, 0.8%) - '19년(131건, 2.5%)

## ▣ 학대발생빈도 및 지속기간

- 노인학대사례의 학대 발생빈도를 살펴보면 1주일에 한번 이상이 1,462건(27.9%), 1개월에 한번 이상 1,430건(27.3%), 일회성 806건(15.4%) 등의 순으로 나타남.

8) 노인복지시설 등의 기관을 이용하거나 입소한 학대피해노인을 방임하는 경우를 의미함.

9) 2015년부터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에 한하여 생활시설 학대로 집계함



- 매일 및 1주일에 한번 이상 학대를 받는 경우가 2,194건(41.9%)으로 학대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반복적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학대지속기간은 최초 학대가 발생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지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5년 이상이 1,770건(33.8%), 1년 이상 5년 미만이 1,711건(32.6%),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 851건(16.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 이상 학대가 지속된 경우가 3,481건(66.4%)으로 나타남.
  - 이는 오랜 기간 학대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학대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 학대행위자 원인

- 2019년 한 해 동안 신고접수 된 학대사례 중에서 학대 발생원인이 학대행위자에게서 발견된 경우 그 세부원인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중복)하게 했을 때 총 9,300건 중 개인의 내적 문제가 3,260건(35.1%), 개인의 외적문제가 1,594건(17.1%)으로 나타나 학대행위자 개인의 내적·외적 기질적 특성으로 인한 학대행위자 원인이 52.2%로 과반을 차지함.
  - 개인의 내적문제는 학대행위자의 성격문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노, 고집, 자신감 결여, 폭력 및 충동성 등의 조절 또는 통제에 어려움을 갖는 경우가 해당되며, 학대피해노인 부양부담은 부양의무감 및 책임감으로 느끼게 되는 정신적, 경제적 부담감을 의미하고, 개인의 외적문제는 학대행위자의 이혼, 재혼, 부부갈등, 스트레스, 실직 등의 문제를 나타냄.

### ▣ 가족 - 환경 원인

- 학대 발생원인이 가족 - 환경 원인에 있는 경우는 총 4,850건으로 피해자 - 학대행위자 갈등이 3,154건(65.0%)으로 가장 높고, 가족구성원과의 갈등이 1,135건(23.4%),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561건(11.6%)으로 나타남.
  - 학대피해노인 - 학대행위자 갈등은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 두 사람 사이의 갈등관계를 의미하며, 가족구성원간의 갈등은 부모 부양문제, 재산 문제 등으로 학대피해노인 자녀 간, 형제 간, 친족 간의 갈등으로 여러 사람이 갈등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 등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의미함.

##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 보호노인 현황

- 2019년 보호노인은 총 1,143명이며 입소자가 487명, 이용자가 656명으로 쉼터 1개당 월 평균 5.3명이 입소 및 이용하였음.

### ▣ 보호노인 연령대

- 보호노인 전체 연령 비율은 주로 70대에서 80대 초반에 분포되어 있음.
  - 입소자 : 70~84세 연령대 수 357명(73.2%)
  - 이용자 : 70~84세 연령대 수 473명(72.0%)

### ▣ 보호노인 결혼 유형

- 보호노인 전체 결혼 유형은 배우자 있음이 589명(51.5%), 배우자 없음이 554명(48.5%)으로 나타남.
  - 배우자 있음 : 입소자 282건(57.9%), 이용자 307건(46.8%)
  - 배우자 없음 : 입소자 205건(42.1%), 이용자 349건(53.2%)

### ▣ 보호노인 동거자 유형

- 입소자의 동거자 유형은 배우자 252명(48.2%), 아들 153명(29.3%), 딸 43명(8.2%)의 순이며,
  - 이용자는 배우자 258명(46.2%), 아들 168명(30.1%), 손자녀 56명(10.0%) 등임.

### ▣ 보호노인의 가구형태

- 입소자의 가구형태 비율은 노인부부 - 자녀동거 - 노인단독의 순인 반면, 이용자의 가구형태 비율은 노인단독 - 노인부부 - 자녀동거로 다른 양상을 보임
  - 입소자 : 노인부부 203명(41.7%) - 자녀동거 168명(34.5%) - 노인단독 62명(12.7%)
  - 이용자 : 노인단독 227명(34.6%) - 노인부부 190명(29.0%) - 자녀동거 169명(25.8%)



### ▣ 보호노인 주거형태

- 보호노인의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입소자의 경우** 자가 343명(70.4%), 전세 44명(9.0%), 월세 37명(7.6%), 영구임대아파트 29명(6.0%) 등의 순이며 이용자는 자가 430명(65.5%), 월세 95명(14.5%), 전세 52명(7.9%) 순이었음.

### ▣ 보호노인 학대 유형

- 입소자의 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 403건(45.5%), **신체적 학대** 369건(41.6%), **경제적 학대** 48건(5.4%) 등의 순이며, **이용자는 정서적 학대** 518건(51.1%), **신체적 학대** 324건(32.0%), **방임** 75건(7.4%)의 순으로 나타남.

### ▣ 보호노인 치매여부

- 보호노인의 치매여부를 보면 치매가 의심되거나 치매로 판정받은 경우는 입소자의 경우 82명(16.8%), 이용자는 51명(7.8%)으로 나타남.

### ▣ 보호노인의 우울증 검사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보호노인은 사전·사후 자가 우울증 검사를 실시하여 우울증의 감소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있음.
  - 2019년 보호노인 1,143명 중 급작스런 퇴소, 학대피해노인의 거부, 치매,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을 제외한 우울증 검사를 실시한 사례는 938건이며 그 중 **926명(98.7%)이 우울증이 감소하였음.**

###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서비스 제공현황

- 입소노인에 대한 쉼터 서비스 제공현황을 살펴보면 **총 98,823명(연인원)**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었음.
  - 제공된 서비스는 **식사제공**, **법률상담연결** 및 **법률소송지원**등의 **법률서비스**, 학대피해노인의 의료기관 연계 및 의료비 지원 등의 **의료서비스**,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상담원 상담 및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및 건강증진, 문화여가, 사회기능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있음.
- 이용노인에 대한 쉼터 서비스 제공현황을 살펴보면 **총 7,484명(연인원)**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었음.



2019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 제1장 서론

1. 발간목적
2. 법적근거
3. 자료수집과정
4. 자료분석
5. 주요내용







# 제 1 장 서 론

## 1 발간목적

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04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노인의 인권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제도적 발달이 늦은 것은 사실이나, 지난 10년 동안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활동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제고됨은 물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질적 성장을 거듭하였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34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1개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18개<sup>10)</sup>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통해 학대피해노인의 안전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노인학대 신고접수부터 현장조사,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학대피해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학대받는 노인의 인권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2019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국의 노인학대 현황 추이를 분석하고 노인학대와 관련한 인권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한국사회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노인학대 예방 사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승인된 일반통계(통계청 승인번호 117067)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취약노인지원시스템에 기록된 노인학대 사례 자료를 분석하였음

10) 이 중 경북서북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지자체에서 별도 예산으로 설치하여 경상북도서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음.



### 3 자료수집과정

본 자료는 2019년 한 해 동안 진행된 노인학대 예방 사업실적을 취약노인지원시스템에 집계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며, 해당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이다.

### 4 자료분석

모든 항목에 대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의미 있는 몇 개의 항목에 대해서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노인학대 현황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주요 학대사례에 대해 연도별 변화(05년~19년) 추이를 살펴보았다. **본 보고서에 포함된 통계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각 항목의 합계가 100%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 개정(2017. 6. 3.)에 따라 2019년 1월 이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를 노인학대로 규정하였다. 단, 기존 개입한 노인학대사례(65세 미만)를 중심으로 상담 및 서비스 제공 등이 이루어져 일부 항목의 경우 기존 사례를 포함한 수치이다.

### 5 주요내용

전국 34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집계된 노인학대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본 보고서에서 파악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 류	내 용	
신고접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접수 및 상담 건수</li> <li>• 신고자 유형</li> <li>• 신고접수 경로 및 인지경로 유형</li> </ul>	
노인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조사</li> <li>• 사례판정</li> </ul>	
노인학대 사례분석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대피해노인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 연령대, 학대유형, 결혼유형, 동거여부 및 동거자 유형</li> <li>- 가구형태, 주거형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교육정도, 직업유형</li> <li>- 건강상태, 일상생활 정도</li> <li>- 학대피해노인 제공서비스</li> </ul> </li> <li>• 학대행위자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 연령대, 결혼유형</li> <li>-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학대행위자 유형)</li> <li>-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교육정도, 직업유형</li> <li>- 건강상태, 학대행위자 제공서비스</li> </ul> </li> </ul>	
노인학대 유형 및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학대 유형 I (학대피해노인 수)</li> <li>• 노인학대 유형 II (학대 유형 건수)</li> <li>• 학대발생장소, 학대발생빈도, 학대지속기간, 학대발생원인</li> </ul>	
특성별 노인학대 사례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적학대 현황</li> <li>•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학대현황</li> <li>• 시설학대 현황</li> <li>• 재학대 현황</li> </ul>	
기타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li> </ul>	
연도별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도별 신고접수 현황</li> <li>• 연도별 재학대 현황</li> <li>• 연도별 신고자 유형</li> <li>• 연도별 전체 상담횟수</li> <li>• 연도별 학대발생장소</li> <li>• 연도별 생활시설학대 현황</li> <li>• 연도별 현장조사 현황</li> <li>•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li> <li>•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li> <li>• 연도별 학대행위자 유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li> <li>•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li> <li>• 연도별 학대 유형 건수</li> <li>•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li> <li>• 연도별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li> <li>•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li> </ul>





2019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 제2장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1. 노인학대 신고접수
2. 노인학대 상담







# 제2장

##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 1 노인학대 신고접수

#### 1) 전체 신고접수

전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속한 학대사례 개입을 위하여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노인인권증진 및 노인학대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 34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운영하고 있으며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및 이메일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직접내방, 가정방문, 이동상담 등을 통한 대면 접수 및 서신에 의한 접수,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sup>11)</sup>, 보건복지콜센터 129<sup>12)</sup>, 112, 119 신고 등을 통하여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신고접수된 사례는 노인학대 여부, 응급성 정도, 현재 학대피해노인의 안전 및 학대 지속성 여부 등의 기초정보를 수집하여 노인학대의심사례와 일반사례를 판정한다. 노인학대의심사례란 신고접수 당시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로 응급(12시간), 비응급 및 잠재적 사례(72시간)를 말하며, 일정 시간 이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와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신변보장과 안전 조치 등을 확인하고 학대의심사례로서의 적합성 판정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한다. 일반사례는 신고접수된 사례 중 학대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로 노인학대와 관련 없이 단순 시설입소, 기관안내 등의 문의와 자녀 간 재산 갈등의 법적 분쟁 등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및 노인학대로 신고되었지만 정보부족(노인 및 기타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부족, 주소불명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1) 행정안전부가 ‘긴급 신고전화 통합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함(2015.1.27.). 비응급 일반 민원이나 전문상담은 110을 이용하며, 2016년 7월부터 정부민원콜센터 110으로 걸려온 노인학대 관련문의의 콜센터 상담사가 접수하여 각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연계함.

12) 행정안전부가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를 2016년 10월부터 전면시행하면서 범죄와 관련된 긴급 신고 번호를 112로 통합함.

이처럼 신고 당시 수집한 기초정보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중심으로 각 기관은 자체사례회의 및 사례판정위원회 등을 거쳐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일반사례로 분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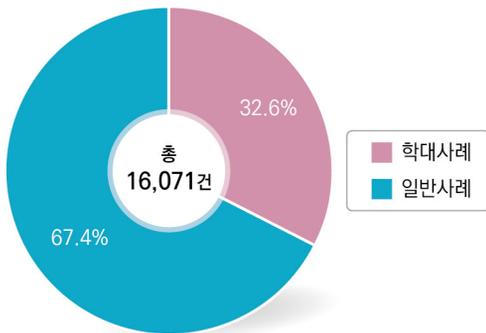
본 보고서에서는 학대사례에 포함되는 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와 일반사례 접수 건수의 총계를 전체 신고접수 건수로 보았다.

[표 2-1]에서 보듯이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하여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노인학대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16,071건이며, 이 중 일반사례 건수는 10,828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67.4%이고, 학대사례는 5,243건, 32.6%로 나타났다. 접수된 학대사례 건수에는 2019년 처음 노인학대가 발생하여 신고된 신규사례 4,743건(90.5%)과 2019년 이전 또는 당해 접수된 사례 중 재학대 되어 접수된 사례 500건(9.5%)이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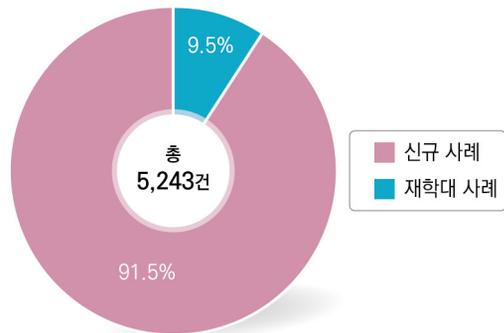
[표 2-1]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구 분	전체 신고접수			학대사례 대비 재학대 사례
	학대사례	일반사례	전 체	
건 수	5,243	10,828	16,071	500
비 율	32.6	67.4	100	9.5



[그림 2-1] 전체 신고건수 비율



[그림 2-2] 학대사례 건수 대비 재학대 건수 비율

2019년 접수된 노인학대신고 접수현황을 월별로 살펴보면 월평균 1,339.3건(8.3%)이 접수되었고 신고접수가 가장 많았던 달은 10월이 1,545건(9.6%)으로 가장 높았으며, 5월이 1,482건(9.2%), 9월 1,453건(9.0%)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체적으로 평균수준을 상회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1월의 신고건수가 1,037건(6.5%)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2-2] 월별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구분	학대사례		일반사례		전체사례	
1월	406	7.7	631	5.8	1,037	6.5
2월	381	7.3	773	7.1	1,154	7.2
3월	413	7.9	852	7.9	1,265	7.9
4월	491	9.4	957	8.8	1,448	9.0
5월	500	9.5	982	9.1	1,482	9.2
6월	409	7.8	844	7.8	1,253	7.8
7월	495	9.4	951	8.8	1,446	9.0
8월	511	9.7	925	8.5	1,436	8.9
9월	442	8.4	1,011	9.3	1,453	9.0
10월	419	8.0	1,126	10.4	1,545	9.6
11월	358	6.8	895	8.3	1,253	7.8
12월	418	8.0	881	8.1	1,299	8.1
계	5,243	100	10,828	100	16,071	100



[그림 2-3] 월별 신고접수 건수 추이



## 2)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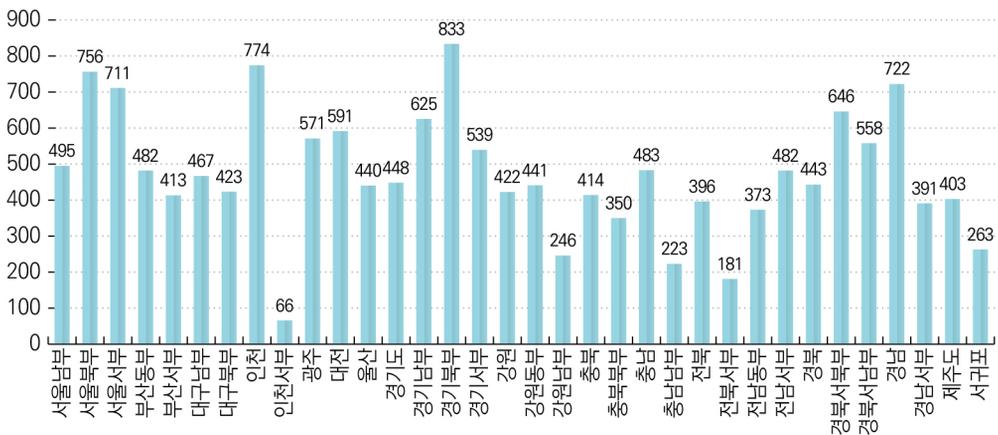
[표 2-3]과 같이 전체 지역별 신고접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국 17개 시·도의 신고접수 건수 평균은 945.4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신고 건수가 높은 지역은 경기도로 2019년 한 해 동안 2,445건이 신고 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서울특별시 1,962건, 경상북도 1,647건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신고 건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440건인 울산광역시로 나타났다.

[표 2-3]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지역	기관명	학대사례		일반사례		계	
서울	서울남부	188	38.0	307	62.0	495	100
	서울북부	169	22.4	587	77.6	756	100
	서울서부	177	24.9	534	75.1	711	100
	소계	534	27.2	1,428	72.8	1,962	100
부산	부산동부	190	39.4	292	60.6	482	100
	부산서부	174	42.1	239	57.9	413	100
	소계	364	40.7	531	59.3	895	100
대구	대구남부	116	24.8	351	75.2	467	100
	대구북부	108	25.5	315	74.5	423	100
	소계	224	25.2	666	74.8	890	100
인천	인천	352	45.5	422	54.5	774	100
	인천서부	17	25.8	49	74.2	66	100
	소계	369	43.9	471	56.1	840	100
광주		235	41.2	336	58.8	571	100
대전		123	20.8	468	79.2	591	100
울산		102	23.2	338	76.8	440	100
경기	경기도	89	19.9	359	80.1	448	100
	경기남부	228	36.5	397	63.5	625	100
	경기북부	333	40.0	500	60.0	833	100
	경기서부	264	49.0	275	51.0	539	100
	소계	914	37.4	1,531	62.6	2,445	100
강원	강원	141	33.4	281	66.6	422	100
	강원동부	103	23.4	338	76.6	441	100
	강원남부	121	49.2	125	50.8	246	100
	소계	365	32.9	744	67.1	1,109	100
충북	충북	106	25.6	308	74.4	414	100
	충북북부	69	19.7	281	80.3	350	100
	소계	175	22.9	589	77.1	764	100

지역	기관명	학대사례		일반사례		계	
충남	충남	159	32.9	324	67.1	483	100
	충남남부	99	44.4	124	55.6	223	100
	소계	258	36.5	448	63.5	706	100
전북	전북	144	36.4	252	63.6	396	100
	전북서부	122	67.4	59	32.6	181	100
	소계	266	46.1	311	53.9	577	100
전남	전남동부	151	40.5	222	59.5	373	100
	전남서부	186	38.6	296	61.4	482	100
	소계	337	39.4	518	60.6	855	100
경북	경북	170	38.4	273	61.6	443	100
	경북서북부	206	31.9	440	68.1	646	100
	경북서남부	116	20.8	442	79.2	558	100
	소계	492	29.9	1,155	70.1	1,647	100
경남	경남	242	33.5	480	66.5	722	100
	경남서부	97	24.8	294	75.2	391	100
	소계	339	30.5	774	69.5	1,113	100
제주	제주 특별자치도	115	28.5	288	71.5	403	100
	제주도 서귀포시	31	11.8	232	88.2	263	100
	소계	146	21.9	520	78.1	666	100
계		5,243	32.6	10,828	67.4	16,071	100



[그림 2-4] 지역 기관별 전체 신고접수 건수



지역별 신고 접수율을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나라 전체인구수 및 65세 이상 노인인구수와 비교하여 분석해보았다. 우선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1,651,341명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서울특별시가 1,478,664명, 부산광역시가 620,123명으로 주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지역에 노인인구수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총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비율을 살펴보면, 전라남도 동부가 22.6%로 가장 높았으며 경상북도가 20.6%, 전라북도가 20.4%로 나타나 위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긴 하나, 각 지역의 전체인구수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방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신고건수를 기준으로 노인인구수 천 명당 노인학대 신고접수율을 추정해보면 노인인구 천 명당 학대 신고 접수율은 2.0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가 6.6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강원도 3.7명, 대전 및 경상북도 3.0명 순이었다.

그러나 위의 수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고접수에 의해 발생된 피해자 및 피해자 주변인의 적극적 신고에 의한 신고건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노인학대의 은폐성을 고려할 때 학대피해노인은 더 많을 수 있어 실제 노인학대 발생률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표 2-4]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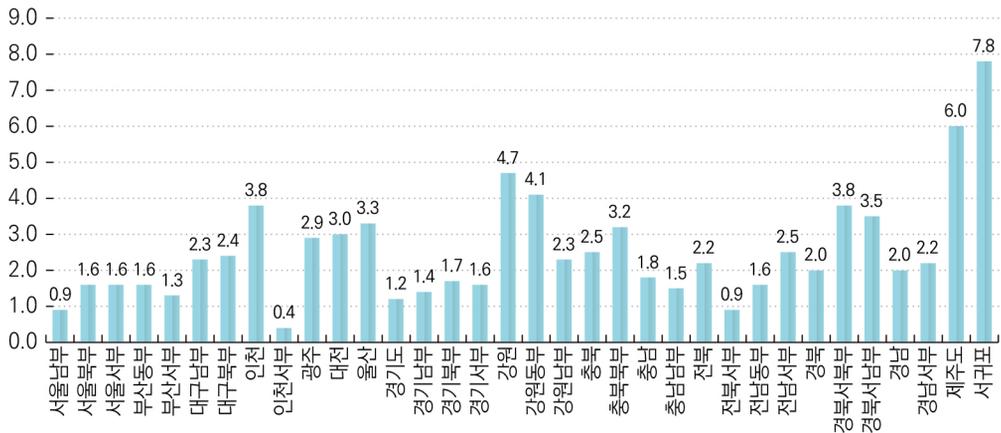
(단위: 명, 건, %)

지역 및 기관명		총인구수 (A)	65세 이상 인구수 (B)	총인구수대비 65세 이상 인구수 (C=B/A×100)	신고접수 건수 (D)	지역별신고 접수율 (노인인구 천명당) (E=D/B×1000)
서울	서울남부	3,813,238	547,735	14.4	495	0.9
	서울북부	3,018,319	486,403	16.1	756	1.6
	서울서부	2,897,550	444,526	15.3	711	1.6
	소계	9,729,107	1,478,664	15.2	1,962	1.3
부산	부산동부	1,589,291	294,367	18.5	482	1.6
	부산서부	1,824,550	325,756	17.9	413	1.3
	소계	3,413,841	620,123	18.2	895	1.4
대구	대구남부	1,402,154	202,794	14.5	467	2.3
	대구북부	1,035,877	176,483	17.0	423	2.4
	소계	2,438,031	379,277	15.6	890	2.3

지역 및 기관명		총인구수 (A)	65세 이상 인구수 (B)	총인구수대비 65세 이상 인구수 (C=B/A×100)	신고접수 건수 (D)	지역별신고 접수율 (노인인구 천명당) (E=D/B×1000)
인천	인천	1,528,244	204,363	13.4	774	3.8
	인천서부	1,428,782	180,185	12.6	66	0.4
	소계	2,957,026	384,548	13.0	840	2.2
광주		1,456,468	195,479	13.4	571	2.9
대전		1,474,870	198,691	13.5	591	3.0
울산		1,148,019	132,565	11.5	440	3.3
경기	경기도	3,583,590	372,415	10.4	448	1.2
	경기남부	3,310,675	449,233	13.6	625	1.4
	경기북부	3,445,054	485,157	14.1	833	1.7
	경기서부	2,900,347	344,536	11.9	539	1.6
	소계	13,239,666	1,651,341	12.5	2,445	1.5
강원	강원	475,378	90,654	19.1	422	4.7
	강원동부	507,964	106,875	21.0	441	4.1
	강원남부	558,160	105,357	18.9	246	2.3
	소계	1,541,502	302,886	19.6	1,109	3.7
충북	충북	1,090,752	165,585	15.2	414	2.5
	충북북부	509,255	107,840	21.2	350	3.2
	소계	1,600,007	273,425	17.1	764	2.8
충남	충남	1,891,364	265,474	14.0	483	1.8
	충남남부	572,920	153,149	26.7	223	1.5
	소계	2,464,284	418,623	17.0	706	1.7
전북	전북	957,780	178,599	18.6	396	2.2
	전북서부	861,137	192,077	22.3	181	0.9
	소계	1,818,917	370,676	20.4	577	1.6
전남	전남동부	1,074,491	229,596	21.4	373	1.6
	전남서부	794,254	192,952	24.3	482	2.5
	소계	1,868,745	422,548	22.6	855	2.0
경북	경북	1,029,515	218,143	21.2	443	2.0
	경북서북부	594,887	170,612	28.7	646	3.8
	경북서남부	1,041,434	160,660	15.4	558	3.5
	소계	2,665,836	549,415	20.6	1,647	3.0

지역 및 기관명		총인구수 (A)	65세 이상 인구수 (B)	총인구수대비 65세 이상 인구수 (C=B/A×100)	신고접수 건수 (D)	지역별신고 접수율 (노인인구 천명당) (E=D/B×1000)
경남	경남	2,603,493	369,007	14.2	722	2.0
	경남서부	759,060	179,250	23.6	391	2.2
	소계	3,362,553	548,257	16.3	1,113	2.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489,405	66,690	13.6	403	6.0
	제주시	181,584	33,707	18.6	263	7.8
	소계	670,989	100,397	15.0	666	6.6
계		51,849,861	8,026,915	15.5	16,071	2.0

주. 65세 이상 인구수 : 행정자치부 2019년 주민등록 인구통계(2019.12 기준)



[그림 2-5] 기관별 노인학대 신고접수율(노인인구 천명당)

### 3) 신고자 유형

노인학대 신고자의 유형은 크게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구분되며 신고의무자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의하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장애노인)관련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 관련 종사자,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구급대의 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등으로 분류된다.

[표 2-5]는 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로 판정된 전체 학대사례 5,243건에 대한 신고자 유형을 살펴 본 것이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877건으로, 전년 대비 14.3% 가량 증가하였다('18년 767건 → '19년 877건). 반면 비신고의무자는 4,366건으로 작년 대비 약 1.2%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년 4,421건 → '19년 4,366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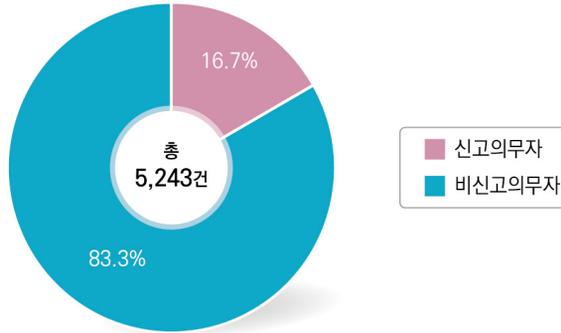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 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표 2-5] 신고자 유형 I

(단위: 건, %)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계
877	4,366	5,243
16.7	83.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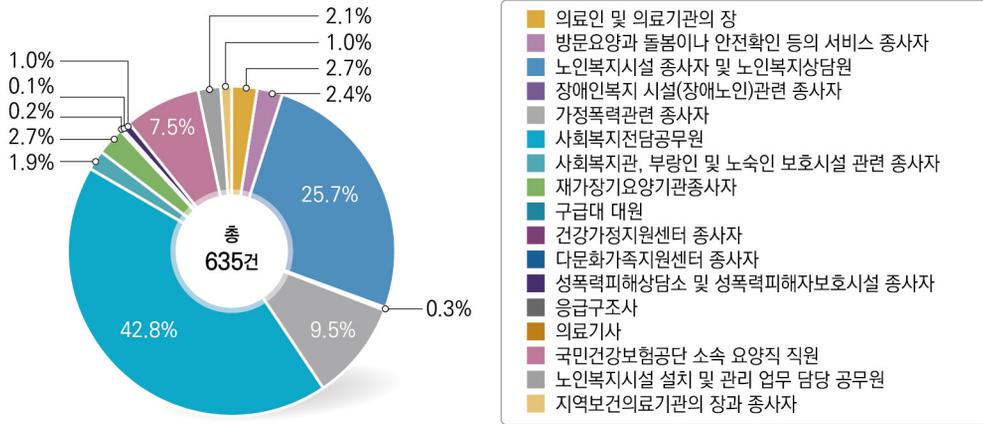
[그림 2-6] 신고자 유형 I

[표 2-6]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유형을 세분화한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전체 신고의무자의 각 직군별 신고건수와 비율을 나타낸 표이다. 전체 877건 중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375건(42.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이 225건(25.7%)으로 나타났다.

[표 2-6] 신고자 유형 II (신고의무자)

(단위: 건, %)

신고의무자														계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방문 요양과 돌봄,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 복지 시설 종사자 및 노인 복지 상담원	장애인 복지 시설 (장애 노인) 관련 종사자	가정 폭력 관련 종사자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사회 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 시설 관련 종사자	재가 장기 요양 기관 종사자	구급대 대원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종사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종사자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종사자	응급 구조사	의료 기사		국민 건강 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노인 복지 시설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지역 보건 의료 기관의 장과 종사자
24	21	225	3	83	375	17	24	2	-	1	9	-	-	66	18	9	877
2.7	2.4	25.7	0.3	9.5	42.8	1.9	2.7	0.2	-	0.1	1.0	-	-	7.5	2.1	1.0	100



[그림 2-7] 신고자 유형 II

비신고의무자의 세부 유형의 경우 전체 4,366건 중 관련기관<sup>13)</sup>이 3,358건(76.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친족 386건(8.8%), 학대피해노인 본인 358건(8.2%), 타인이 259건(5.9%) 순이었다. 타인은 동거인, 이웃, 익명, 친구 등이 해당된다.

[표 2-7] 신고자 유형 III (비신고의무자)

(단위: 건, %)

비신고의무자					계
학대피해노인 본인	학대행위자 본인	친족 <sup>14)</sup>	타인 <sup>15)</sup>	관련기관 <sup>16)</sup>	
358	5	386	259	3,358	4,366
8.2	0.1	8.8	5.9	76.9	100

13) 관련기관에는 어르신 지킴이단, 경찰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기타 관련기관 종사자 등이 해당됨.

14) 친족에는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등이 해당됨.

15) 타인에는 기타 타인, 동거인, 이웃, 익명, 친구 등이 해당됨.

16) 관련기관에는 어르신 지킴이단, 경찰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기타 관련기관 종사자 등이 해당됨.



#### 4) 신고접수 및 인지경로 유형

##### 가. 신고접수 경로

신고접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된 사례의 응급성 정도, 현재 학대피해노인의 안전 및 학대 지속성 여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대처 유형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신고접수 경로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 112 또는 119 신고에 의해 접수된다. 2016년 7월부터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으로 걸려온 노인학대 관련 문의를 콜센터 상담사가 접수한 후 각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연계하기로 추진되어 신고접수 경로에 포함되었다.

[표 2-8]을 살펴보면 112이관 2,529건(48.2%), 자체접수 2,231건(42.6%), 행정복지센터 185건(3.5%) 순으로 나타나 112이관과 자체접수가 전체 신고접수 경로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 외에 건강보험공단 61건(1.2%), 시청 55건(1.0%), 보건복지콜센터 129이관 52건(1.0%) 등으로 나타났다.

[표 2-8] 신고접수 경로

(단위: 건, %)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110 이관	보건 복지 콜센터 129 이관	112 이관	건강 보험 공단	경로당	노인 돌봄 서비스 생활 관리사	노인 일자리 사업	시청	의료 기관	자체 접수	정신 건강 복지 센터	타지역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이관	행정 복지 센터	희망 복지 지원단	계
6	52	2,529	61	1	10	-	55	26	2,231	19	18	185	50	5,243
0.1	1.0	48.2	1.2	0.0	0.2	-	1.0	0.5	42.6	0.4	0.3	3.5	1.0	100

##### 나. 신고접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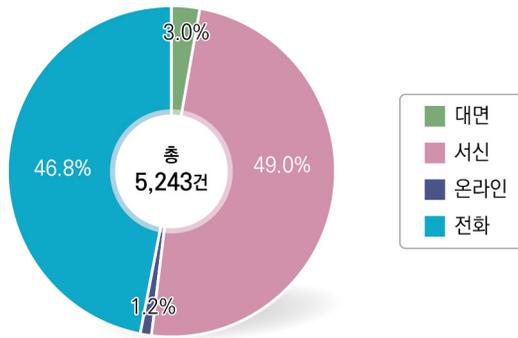
신고접수 유형은 신고접수 경로의 세부적인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를 통한 전화신고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신고, 신고자의 기관내방 또는 상담원 방문 등의 대면신고 및 서신에 의한 신고로 분류된다.

가장 높은 신고접수 유형은 서신으로, 총 2,569건이 신고되었으며 접수유형의 49.0%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전화 신고가 2,454건(46.8%), 상담원의 방문 및 신고자의 내방 등으로 인한 대면신고가 159건(3.0%), 온라인은 61건(1.2%)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과 비교해보면, 서신을 통한 신고접수가 7.4% 증가하였다('18년: 2,391건 → '19년: 2,569건).

[표 2-9] 신고접수 유형

(단위: 건, %)

대 면	서 신	온라인	전 화	계
159	2,569	61	2,454	5,243
3.0	49.0	1.2	46.8	100



[그림 2-8] 신고접수 유형

#### 다. 신고 인지경로 유형

신고 인지경로 유형은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577-1389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알게 된 경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표 2-10]과 같이 분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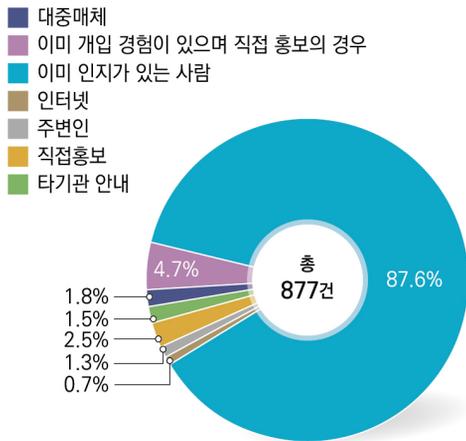
전체 신고 인지경로 유형을 살펴보면 ‘이미 인지가 있는 사람’에 의한 신고가 4,219건 (80.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미 개입 경험이 있으며 직접 홍보의 경우’ 278건(5.3%), ‘타기관 안내’ 243건(4.6%)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직접홍보’(2.9%), ‘대중매체’(2.7%), ‘주변인’(2.3%), ‘인터넷’(1.7%) 등을 통해서 신고경로를 인지한 경우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에 따른 신고 인지경로 유형을 살펴봐도 ‘이미 인지가 있는 사람’과 ‘이미 개입 경험이 있으며 직접 홍보의 경우’ 순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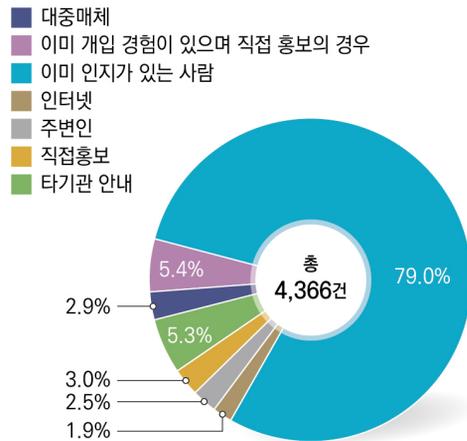
[표 2-10] 신고 인지경로 유형별 신고자 구분

(단위: 건, %)

구분	대중매체	이미 개입 경험이 있으며 직접 홍보의 경우	이미 인지가 있는 사람	인터넷	주변인	직접홍보	타기관 안내	계
신고 의무자	16	41	768	6	11	22	13	877
	1.8	4.7	87.6	0.7	1.3	2.5	1.5	100
비신고 의무자	125	237	3,451	82	110	131	230	4,366
	2.9	5.4	79.0	1.9	2.5	3.0	5.3	100
계	141	278	4,219	88	121	153	243	5,243
	2.7	5.3	80.5	1.7	2.3	2.9	4.6	100



[그림 2-9] 신고의무자의 신고 인지경로



[그림 2-10] 비신고의무자의 신고 인지경로

## 5) 발생장소별 노인학대 신고 건수

2019년 노인학대 전체 신고접수 건수 중 발생장소가 '가정내'는 4,450건(84.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노인의료복지시설 432건(8.2%), 재가노인복지시설 128건(2.4%) 등의 순이었다.

[표 2-11] 발생장소별 노인학대 신고건수

(단위: 건, %)

구 분	가정내	공공 장소	노인 여가 복지 시설	노인 의료 복지 시설	노인 주거 복지 시설	요양 병원	일반 병원	재가 노인 복지 시설	기타	계
응급	95	1	-	-	5	2	-	-	2	105
	90.5	1.0	-	-	4.8	1.9	-	-	1.9	100
비응급	2,840	35	-	310	37	32	2	43	50	3,349
	84.8	1.0	-	9.3	1.1	1.0	0.1	1.3	1.5	100
잠재적	1,515	24	3	122	12	7	2	85	19	1,789
	84.7	1.3	0.2	6.8	0.7	0.4	0.1	4.8	1.1	100
계	4,450	60	3	432	54	41	4	128	71	5,243
	84.9	1.1	0.1	8.2	1.0	0.8	0.1	2.4	1.4	100



## 2 노인학대 상담

### 1) 월별 상담횟수

2019년 노인학대 전체 신고접수 건수 16,071건에 대한 전체 상담횟수는 140,354회로, 학대상담 횟수가 110,226회(78.5%), 일반상담 횟수는 30,128회(21.5%)로 나타났다. 학대상담의 경우 접수상담, 진행상담, 종결상담, 사후관리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상담이 이루어진다. 반면, 일반상담은 단순 정보제공 등의 일반사례에 대한 상담으로 대부분 1~2회 상담이 이루어지며 보통 정보제공과 동시에 상담이 종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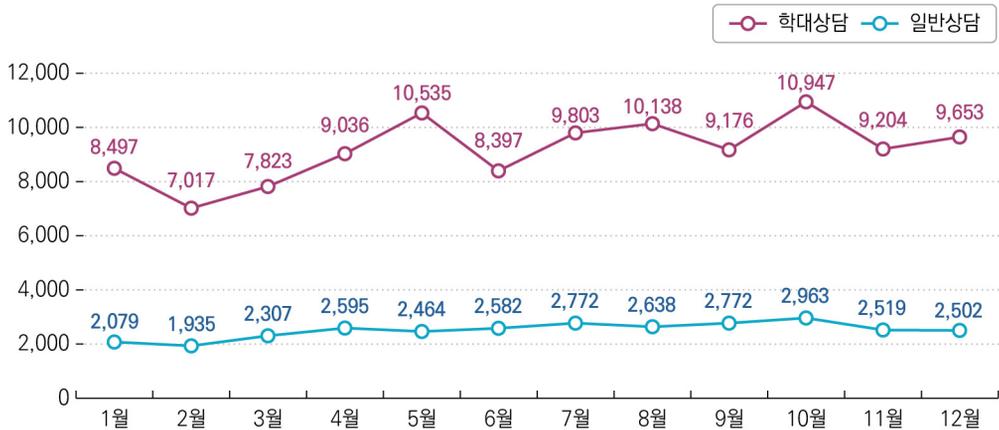
월별 상담횟수 현황을 살펴보면 학대상담의 경우 월평균 9,185.5회, 일반상담의 경우 월평균 2,510.7회 진행되었다. 월별 전체 상담횟수 추이는 10월이 13,910회(9.9%), 5월이 12,999회(9.3%), 8월이 12,776회(9.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12] 월별 상담횟수

(단위: 회, %)

구분	학대상담	일반상담	전체
1월	8,497	2,079	10,576
	7.7	6.9	7.5
2월	7,017	1,935	8,952
	6.4	6.4	6.4
3월	7,823	2,307	10,130
	7.1	7.7	7.2
4월	9,036	2,595	11,631
	8.2	8.6	8.3
5월	10,535	2,464	12,999
	9.6	8.2	9.3
6월	8,397	2,582	10,979
	7.6	8.6	7.8
7월	9,803	2,772	12,575
	8.9	9.2	9.0
8월	10,138	2,638	12,776
	9.2	8.8	9.1
9월	9,176	2,772	11,948
	8.3	9.2	8.5

구 분	학대상담	일반상담	전 체
10월	10,947	2,963	13,910
	9.9	9.8	9.9
11월	9,204	2,519	11,723
	8.4	8.4	8.4
12월	9,653	2,502	12,155
	8.8	8.3	8.7
계	110,226	30,128	140,354
	100	100	100



[그림 2-11] 월별 상담횟수

## 2) 지역 및 기관별 학대상담방법에 따른 상담 구분

학대상담방법은 전체 학대상담 횟수 110,226회에 대한 구체적 상담방법에 대한 분류로, 전체 상담 중 전화상담이 71,587회(6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이 진행된 방문상담이 30,110회(27.3%)로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상담의 92.2%가 전화상담과 방문상담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 외 상담방법으로는 서신 5,283회(4.8%), 내방 2,118회(1.9%), 기타 664회(0.6%), 온라인 464회(0.4%) 순으로 나타났다.

비율이 가장 높은 학대상담방법을 기준으로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전화상담의 경우 경기도가 13.0%로 가장 높았고, 서울특별시 11.6%, 경상북도 9.3%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방문상담의 경우 경상북도가 15.3%으로 가장 높고, 강원도 9.8%, 서울특별시 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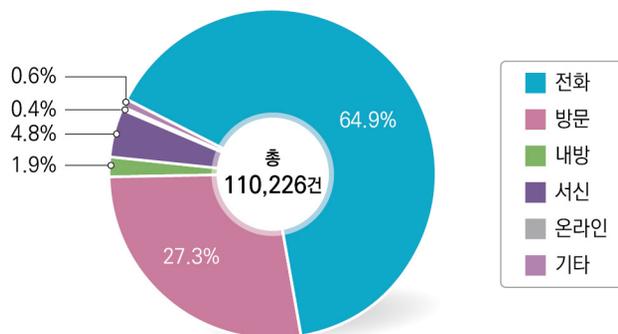
이를 다시 기관별로 보면, 전화상담의 경우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 6.0%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방문상담의 경우 경북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내방상담의 경우에도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 1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13] 지역 및 기관별 학대상담방법에 따른 상담 구분

(단위: 건, %)

지역	지역기관	전 화		방 문		내 방		서 신		온라인		기 타		계	
서울	서울남부	3,116	4.4	1,026	3.4	37	1.7	201	3.8	26	5.6	258	38.9	4,664	4.2
	서울북부	2,624	3.7	696	2.3	44	2.1	143	2.7	22	4.7	25	3.8	3,554	3.2
	서울서부	2,551	3.6	882	2.9	2	0.1	130	2.5	31	6.7	36	5.4	3,632	3.3
	소계	8,291	11.6	2,604	8.6	83	3.9	474	9.0	79	17.0	319	48.0	11,850	10.8
부산	부산동부	3,402	4.8	1,409	4.7	75	3.5	275	5.2	9	1.9	23	3.5	5,193	4.7
	부산서부	2,803	3.9	657	2.2	41	1.9	27	0.5	-	-	33	5.0	3,561	3.2
	소계	6,205	8.7	2,066	6.9	116	5.5	302	5.7	9	1.9	56	8.4	8,754	7.9
대구	대구남부	2,093	2.9	945	3.1	8	0.4	98	1.9	5	1.1	35	5.3	3,184	2.9
	대구북부	2,212	3.1	467	1.6	18	0.8	177	3.3	1	0.2	30	4.5	2,905	2.6
	소계	4,305	6.0	1,412	4.7	26	1.2	275	5.2	6	1.3	65	9.8	6,089	5.5
인천	인천	2,448	3.4	999	3.3	12	0.6	785	14.9	25	5.4	-	-	4,269	3.9
	인천서부	71	0.1	12	0.0	5	0.2	-	-	-	-	-	-	88	0.1
	소계	2,519	3.5	1,011	3.4	17	0.8	785	14.9	25	5.4	-	-	4,357	4.0
광주		3,414	4.8	1,225	4.1	109	5.1	155	2.9	9	1.9	2	0.3	4,914	4.5
대전		1,364	1.9	967	3.2	63	3.0	271	5.1	24	5.2	-	-	2,689	2.4
울산		1,978	2.8	810	2.7	19	0.9	100	1.9	1	0.2	2	0.3	2,910	2.6
경기	경기도	812	1.1	154	0.5	8	0.4	64	1.2	4	0.9	2	0.3	1,044	0.9
	경기남부	2,011	2.8	897	3.0	16	0.8	268	5.1	19	4.1	24	3.6	3,235	2.9
	경기북부	3,611	5.0	805	2.7	73	3.4	297	5.6	13	2.8	3	0.5	4,802	4.4
	경기서부	2,883	4.0	592	2.0	74	3.5	329	6.2	43	9.3	17	2.6	3,938	3.6
	소계	9,317	13.0	2,448	8.1	171	8.1	958	18.1	79	17.0	46	6.9	13,019	11.8
강원	강원	1,823	2.5	1,374	4.6	159	7.5	198	3.7	11	2.4	14	2.1	3,579	3.2
	강원동부	1,601	2.2	961	3.2	52	2.5	180	3.4	19	4.1	5	0.8	2,818	2.6
	강원남부	1,620	2.3	621	2.1	50	2.4	78	1.5	34	7.3	28	4.2	2,431	2.2
	소계	5,044	7.0	2,956	9.8	261	12.3	456	8.6	64	13.8	47	7.1	8,828	8.0
충북	충북	1,318	1.8	1,318	4.4	62	2.9	87	1.6	2	0.4	16	2.4	2,803	2.5
	충북북부	1,028	1.4	591	2.0	22	1.0	83	1.6	5	1.1	1	0.2	1,730	1.6
	소계	2,346	3.3	1,909	6.3	84	4.0	170	3.2	7	1.5	17	2.6	4,533	4.1

지역	지역기관	전 화		방 문		내 방		서 신		온라인		기 타		계	
충남	충남	2,918	4.1	1,670	5.5	152	7.2	173	3.3	66	14.2	29	4.4	5,008	4.5
	충남남부	1,390	1.9	720	2.4	20	0.9	85	1.6	1	0.2	2	0.3	2,218	2.0
	소계	4,308	6.0	2,390	7.9	172	8.1	258	4.9	67	14.4	31	4.7	7,226	6.6
전북	전북	1,948	2.7	674	2.2	104	4.9	62	1.2	3	0.6	4	0.6	2,795	2.5
	전북서부	930	1.3	658	2.2	24	1.1	66	1.2	1	0.2	7	1.1	1,686	1.5
	소계	2,878	4.0	1,332	4.4	128	6.0	128	2.4	4	0.8	11	1.7	4,481	4.1
전남	전남동부	2,463	3.4	483	1.6	92	4.3	116	2.2	2	0.4	7	1.1	3,163	2.9
	전남서부	2,903	4.1	1,665	5.5	18	0.8	110	2.1	3	0.6	-	-	4,699	4.3
	소계	5,366	7.5	2,148	7.1	110	5.2	226	4.3	5	1.0	7	1.1	7,862	7.1
경북	경북	1,890	2.6	1,183	3.9	372	17.6	132	2.5	1	0.2	3	0.5	3,581	3.2
	경북서북부	2,177	3.0	2,653	8.8	182	8.6	179	3.4	1	0.2	16	2.4	5,208	4.7
	경북서남부	2,556	3.6	756	2.5	7	0.3	125	2.4	25	5.4	18	2.7	3,487	3.2
	소계	6,623	9.3	4,592	15.3	561	26.5	436	8.3	27	5.8	37	5.6	12,276	11.1
경남	경남	4,303	6.0	720	2.4	27	1.3	80	1.5	32	6.9	13	2.0	5,175	4.7
	경남서부	1,726	2.4	895	3.0	9	0.4	53	1.0	22	4.7	4	0.6	2,709	2.5
	소계	6,029	8.4	1,615	5.4	36	1.7	133	2.5	54	11.6	17	2.6	7,884	7.2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1,133	1.6	428	1.4	157	7.4	105	2.0	1	0.2	4	0.6	1,828	1.7
	제주도서귀포시	467	0.7	197	0.7	5	0.2	51	1.0	3	0.6	3	0.5	726	0.7
	소계	1,600	2.2	625	2.1	162	7.6	156	3.0	4	0.9	7	1.1	2,554	2.3
계		71,587	100	30,110	100	2,118	100	5,283	100	464	100	664	100	110,226	100



[그림 2-12] 학대 상담구분



### 3) 지역 및 기관별 학대상담과정에 따른 상담 구분

학대상담은 접수상담, 진행상담, 종결상담, 사후관리로 분류된다. 접수상담은 신고접수 시 초기상담을 의미하고, 진행상담은 사례개입을 위해 진행되는 모든 상담을 의미하며,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상담, 학대행위자 및 가족상담, 관련자 상담, 현장조사 및 방문상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종결상담은 사례를 종결하기 위해 실시한 상담을 의미한다. 사후관리는 종결된 사례에 대해 학대피해노인이 안전한지, 학대 재발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재발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서비스를 의뢰한 연계기관과 협력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기도 하는데 시설보호의 경우 시설 측과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 사후관리가 어려운 사례에 대해서는 자체사례회의를 통하여 사후관리 여부를 판단한다.

[표 2-14]은 각 지역 및 기관별로 학대사례 상담과정에 따라 상담유형을 구분한 것으로, 전체 상담횟수 중 진행상담이 81,320회(7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관리가 18,135회(16.5%), 종결상담이 5,422회(4.9%), 접수상담이 5,348회(4.9%)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상담구분별 비율정도를 살펴보면 접수상담의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난 곳은 17.1%를 차지한 경기도였으며, 진행상담은 경상북도가 11.7%, 종결상담은 경기도가 15.8%, 사후관리는 대구광역시가 12.0%로 높게 나타났다.

기관별로 보면 접수상담의 경우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 6.6%, 진행상담은 경북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5.5%, 종결상담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 8.2%, 사후관리에서는 부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8.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2-14] 지역 및 기관별 학대상담과정에 따른 상담 구분

(단위: 건, %)

지역	기관명	접수상담		진행상담		종결상담		사후관리		계	
서울	서울남부	189	3.5	2,920	3.6	211	3.9	1,344	7.4	4,664	4.2
	서울북부	170	3.2	2,901	3.6	192	3.5	291	1.6	3,554	3.2
	서울서부	177	3.3	3,110	3.8	134	2.5	211	1.2	3,632	3.3
	소계	536	10.0	8,931	11.0	537	9.9	1,846	10.2	11,850	10.8
부산	부산동부	190	3.6	3,233	4.0	188	3.5	1,582	8.7	5,193	4.7
	부산서부	174	3.3	2,892	3.6	166	3.1	329	1.8	3,561	3.2
	소계	364	6.8	6,125	7.5	354	6.5	1,911	10.5	8,754	7.9
대구	대구남부	130	2.4	1,376	1.7	113	2.1	1,565	8.6	3,184	2.9
	대구북부	169	3.2	1,962	2.4	167	3.1	607	3.3	2,905	2.6
	소계	299	5.6	3,338	4.1	280	5.2	2,172	12.0	6,089	5.5

지역	기관명	접수상담		진행상담		종결상담		사후관리		계	
인천	인천	352	6.6	2,441	3.0	444	8.2	1,032	5.7	4,269	3.9
	인천서부	23	0.4	52	0.1	2	0.0	11	0.1	88	0.1
	소계	375	7.0	2,493	3.1	446	8.2	1,043	5.8	4,357	4.0
	광주	235	4.4	3,294	4.1	240	4.4	1,145	6.3	4,914	4.5
	대전	124	2.3	1,664	2.0	122	2.3	779	4.3	2,689	2.4
	울산	102	1.9	2,326	2.9	115	2.1	367	2.0	2,910	2.6
경기	경기도	89	1.7	865	1.1	70	1.3	20	0.1	1,044	0.9
	경기남부	228	4.3	2,444	3.0	195	3.6	368	2.0	3,235	2.9
	경기북부	332	6.2	3,168	3.9	322	5.9	980	5.4	4,802	4.4
	경기서부	267	5.0	2,898	3.6	272	5.0	501	2.8	3,938	3.6
	소계	916	17.1	9,375	11.5	859	15.8	1,869	10.3	13,019	11.8
강원	강원	141	2.6	2,944	3.6	125	2.3	369	2.0	3,579	3.2
	강원동부	103	1.9	2,470	3.0	107	2.0	138	0.8	2,818	2.6
	강원남부	121	2.3	1,824	2.2	129	2.4	357	2.0	2,431	2.2
	소계	365	6.8	7,238	8.9	361	6.7	864	4.8	8,828	8.0
충북	충북	106	2.0	2,315	2.8	95	1.8	287	1.6	2,803	2.5
	충북북부	69	1.3	1,371	1.7	55	1.0	235	1.3	1,730	1.6
	소계	175	3.3	3,686	4.5	150	2.8	522	2.9	4,533	4.1
충남	충남	159	3.0	4,207	5.2	163	3.0	479	2.6	5,008	4.5
	충남남부	99	1.9	1,528	1.9	149	2.7	442	2.4	2,218	2.0
	소계	258	4.8	5,735	7.1	312	5.8	921	5.1	7,226	6.6
전북	전북	144	2.7	2,250	2.8	122	2.3	279	1.5	2,795	2.5
	전북서부	122	2.3	1,360	1.7	93	1.7	111	0.6	1,686	1.5
	소계	266	5.0	3,610	4.4	215	4.0	390	2.2	4,481	4.1
전남	전남동부	151	2.8	2,433	3.0	159	2.9	420	2.3	3,163	2.9
	전남서부	197	3.7	3,513	4.3	182	3.4	807	4.4	4,699	4.3
	소계	348	6.5	5,946	7.3	341	6.3	1,227	6.8	7,862	7.1
경북	경북	170	3.2	2,366	2.9	268	4.9	777	4.3	3,581	3.2
	경북서북부	209	3.9	4,455	5.5	210	3.9	334	1.8	5,208	4.7
	경북서남부	119	2.2	2,734	3.4	122	2.3	512	2.8	3,487	3.2
	소계	498	9.3	9,555	11.7	600	11.1	1,623	8.9	12,276	11.1
경남	경남	244	4.6	3,787	4.7	242	4.5	902	5.0	5,175	4.7
	경남서부	98	1.8	2,291	2.8	121	2.2	199	1.1	2,709	2.5
	소계	342	6.4	6,078	7.5	363	6.7	1,101	6.1	7,884	7.2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115	2.2	1,447	1.8	91	1.7	175	1.0	1,828	1.7
	제주도 서귀포시	31	0.6	479	0.6	36	0.7	180	1.0	726	0.7
	소계	146	2.7	1,926	2.4	127	2.3	355	2.0	2,554	2.3
	계	5,348	100	81,320	100	5,422	100	18,135	100	110,226	100



#### 4) 지역 및 기관별 전체 상담횟수

전체 상담횟수 중에서 학대상담과 일반상담 횟수를 지역별로 비교하여 보면, 먼저 학대상담 횟수 비율은 경상남도가 86.8%로 가장 높고, 전라남도 86.6%, 부산광역시 85.6%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담횟수 중 학대상담 횟수 비율이 낮게 나타난 곳은 대전광역시(46.1%)이다. 그 외 대부분의 지역은 전체 상담횟수의 70~90%를 학대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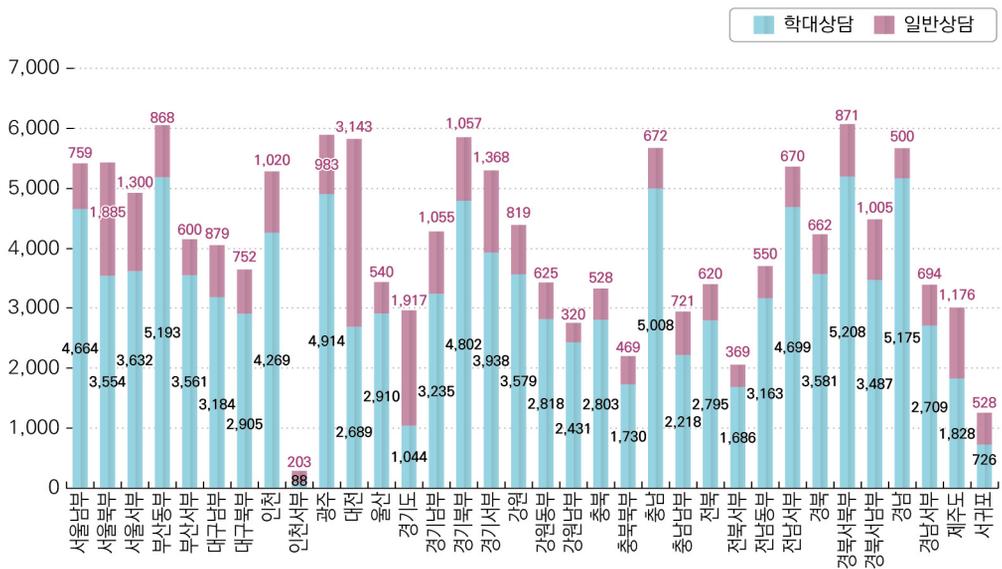
학대상담 비율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 9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원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88.4%,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88.2%로 그 뒤를 이었다. 대부분의 기관이 70~90%의 수준으로 학대상담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인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30.2%로 학대상담 비율이 다소 낮았다.

[표 2-15] 지역 및 기관별 전체 상담횟수

(단위: 건, %)

지역	기관명	학대상담		일반상담		계	
서울	서울남부	4,664	86.0	759	14.0	5,423	100
	서울북부	3,554	65.3	1,885	34.7	5,439	100
	서울서부	3,632	73.6	1,300	26.4	4,932	100
	소계	11,850	75.0	3,944	25.0	15,794	100
부산	부산동부	5,193	85.7	868	14.3	6,061	100
	부산서부	3,561	85.6	600	14.4	4,161	100
	소계	8,754	85.6	1,468	14.4	10,222	100
대구	대구남부	3,184	78.4	879	21.6	4,063	100
	대구북부	2,905	79.4	752	20.6	3,657	100
	소계	6,089	78.9	1,631	21.1	7,720	100
인천	인천	4,269	80.7	1,020	19.3	5,289	100
	인천서부	88	30.2	203	69.8	291	100
	소계	4,357	78.1	1,223	21.9	5,580	100
광주		4,914	83.3	983	16.7	5,897	100
대전		2,689	46.1	3,143	53.9	5,832	100
울산		2,910	84.3	540	15.7	3,450	100
경기	경기도	1,044	35.3	1,917	64.7	2,961	100
	경기남부	3,235	75.4	1,055	24.6	4,290	100
	경기북부	4,802	82.0	1,057	18.0	5,859	100
	경기서부	3,938	74.2	1,368	25.8	5,306	100
	소계	13,019	70.7	5,397	29.3	18,416	100
강원	강원	3,579	81.4	819	18.6	4,398	100
	강원동부	2,818	81.8	625	18.2	3,443	100
	강원남부	2,431	88.4	320	11.6	2,751	100
	소계	8,828	83.3	1,764	16.7	10,592	100

지역	기관명	학대상담		일반상담		계	
충북	충북	2,803	84.1	528	15.9	3,331	100
	충북북부	1,730	78.7	469	21.3	2,199	100
	소계	4,533	82.0	997	18.0	5,530	100
충남	충남	5,008	88.2	672	11.8	5,680	100
	충남남부	2,218	75.5	721	24.5	2,939	100
	소계	7,226	83.8	1,393	16.2	8,619	100
전북	전북	2,795	81.8	620	18.2	3,415	100
	전북서부	1,686	82.0	369	18.0	2,055	100
	소계	4,481	81.9	989	18.1	5,470	100
전남	전남동부	3,163	85.2	550	14.8	3,713	100
	전남서부	4,699	87.5	670	12.5	5,369	100
	소계	7,862	86.6	1,220	13.4	9,082	100
경북	경북	3,581	84.4	662	15.6	4,243	100
	경북서북부	5,208	85.7	871	14.3	6,079	100
	경북서남부	3,487	77.6	1,005	22.4	4,492	100
	소계	12,276	82.9	2,538	17.1	14,814	100
경남	경남	5,175	91.2	500	8.8	5,675	100
	경남서부	2,709	79.6	694	20.4	3,403	100
	소계	7,884	86.8	1,194	13.2	9,078	10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1,828	60.9	1,176	39.1	3,004	100
	제주도 서귀포시	726	57.9	528	42.1	1,254	100
	소계	2,554	60.0	1,704	40.0	4,258	100
계		110,226	78.5	30,128	21.5	140,354	100



[그림 2-13] 지역 및 기관별 전체 상담횟수



## 5) 지역 및 기관별 한 사례당 상담횟수

학대사례 및 일반사례를 기준으로 한 사례당 상담횟수를 살펴보면, 전체 학대사례 5,243건 중 학대상담 횟수는 110,226건으로 평균 21.0회의 상담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사례 경우 총 10,828건 중 일반상담 횟수는 30,128회로 평균 2.8회 이루어졌다.

지역별로 보면 울산광역시와 평균 28.5회로 가장 많은 학대상담이 이루어졌고, 충청남도가 28.0회, 대구광역시가 27.2회로 나타났다. 일반상담 횟수의 경우 대전광역시가 6.7회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도가 3.5회로 그 뒤를 이었다. 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이 일반상담의 경우 1~3회의 일회성 상담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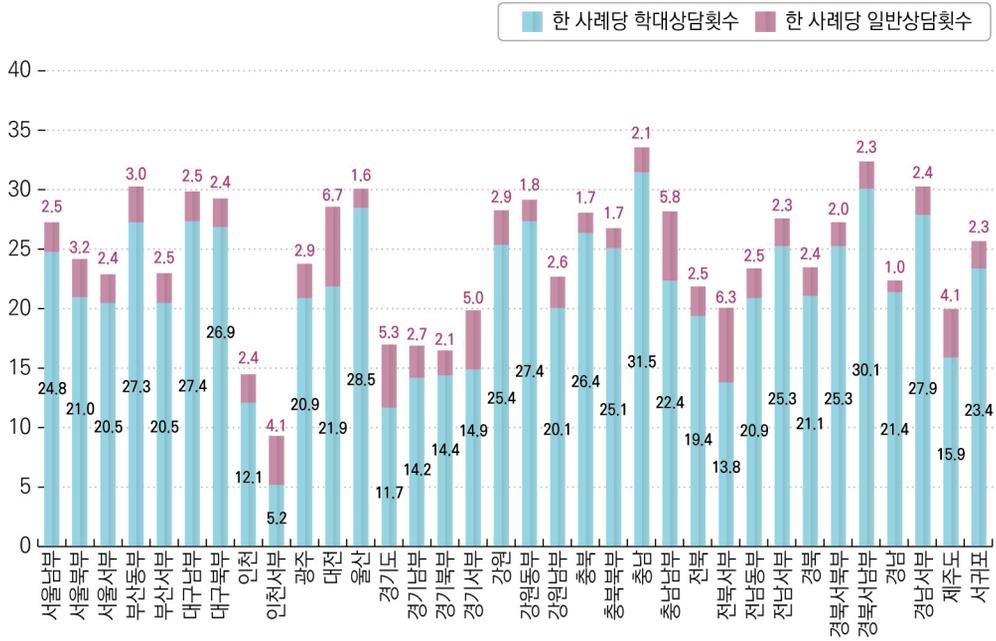
이를 기관별로 다시 살펴보면 학대상담의 한 사례당 상담횟수는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 31.5회, 경북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30.1회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상담의 한 사례당 상담횟수는 대전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 6.7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6.3회, 충청남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5.8회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표 2-16] 지역 및 기관별 한 사례당 평균 상담횟수

(단위: 건, %)

지역	기관명	학대상담 횟수	학대사례 건수	한 사례당 학대상담 횟수	일반상담 횟수	일반사례 건수	한 사례당 일반상담 횟수
서울	서울남부	4,664	188	24.8	759	307	2.5
	서울북부	3,554	169	21.0	1,885	587	3.2
	서울서부	3,632	177	20.5	1,300	534	2.4
	소계	11,850	534	22.2	3,944	1,428	2.8
부산	부산동부	5,193	190	27.3	868	292	3.0
	부산서부	3,561	174	20.5	600	239	2.5
	소계	8,754	364	24.0	1,468	531	2.8
대구	대구남부	3,184	116	27.4	879	351	2.5
	대구북부	2,905	108	26.9	752	315	2.4
	소계	6,089	224	27.2	1,631	666	2.4
인천	인천	4,269	352	12.1	1,020	422	2.4
	인천서부	88	17	5.2	203	49	4.1
	소계	4,357	369	11.8	1,223	471	2.6
광주		4,914	235	20.9	983	336	2.9
대전		2,689	123	21.9	3,143	471	6.7

지역	기관명	학대상담 횟수	학대사례 건수	한 사례당 학대상담 횟수	일반상담 횟수	일반사례 건수	한 사례당 일반상담 횟수
울산		2,910	102	28.5	540	338	1.6
경기	경기도	1,044	89	11.7	1,917	359	5.3
	경기남부	3,235	228	14.2	1,055	397	2.7
	경기북부	4,802	333	14.4	1,057	500	2.1
	경기서부	3,938	264	14.9	1,368	275	5.0
	소계	13,019	914	14.2	5,397	1,531	3.5
강원	강원	3,579	141	25.4	819	281	2.9
	강원동부	2,818	103	27.4	625	338	1.8
	강원남부	2,431	121	20.1	320	125	2.6
	소계	8,828	365	24.2	1,764	744	2.4
충북	충북	2,803	106	26.4	528	308	1.7
	충북북부	1,730	69	25.1	469	281	1.7
	소계	4,533	175	25.9	997	589	1.7
충남	충남	5,008	159	31.5	672	324	2.1
	충남남부	2,218	99	22.4	721	124	5.8
	소계	7,226	258	28.0	1,393	448	3.1
전북	전북	2,795	144	19.4	620	252	2.5
	전북서부	1,686	122	13.8	369	59	6.3
	소계	4,481	266	16.8	989	311	3.2
전남	전남동부	3,163	151	20.9	550	222	2.5
	전남서부	4,699	186	25.3	670	296	2.3
	소계	7,862	337	23.3	1,220	518	2.4
경북	경북	3,581	170	21.1	662	273	2.4
	경북서북부	5,208	206	25.3	871	440	2.0
	경북서남부	3,487	116	30.1	1,005	442	2.3
	소계	12,276	492	25.0	2,538	1,155	2.2
경남	경남	5,175	242	21.4	500	480	1.0
	경남서부	2,709	97	27.9	694	294	2.4
	소계	7,884	339	23.3	1,194	774	1.5
제주	제주특별 자치도	1,828	115	15.9	1,176	288	4.1
	제주도 서귀포시	726	31	23.4	528	232	2.3
	소계	2,554	146	17.5	1,704	520	3.3
계		110,226	5,243	21.0	30,128	10,831	2.8



[그림 2-14] 기관별 한 사례당 상담 횟수

## 6)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2019년 한 해 동안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업무량을 측정하기 위해, 각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수와 신고접수 건수, 상담 횟수, 현장조사 건수, 방문상담 횟수, 학대피해노인 제공서비스 횟수, 학대행위자 제공서비스 횟수 등을 비교하였다.

전국 34개 노인보호전문기관 272명의 상담원을 기준으로 한 수치로, 각 기관의 기관장은 상담원 수에서 제외하였다.

[표 2-17]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단위: 명, 건, 회)

구 분	전체 상담원 업무량	상담원 1인당 업무량
상담원 수	272	-
신고접수 건수	16,071	59.1
상담횟수	140,354	516.0
현장조사 횟수	5,084	18.7
방문상담 횟수	30,110	110.7
학대피해노인 제공서비스	141,442	520.0
학대행위자 제공서비스	29,729	109.3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일반사례가 10,828건, 학대사례가 5,243건으로 총 16,071건이며, 이에 대한 상담원 1인당 신고접수 건수는 59.1회로 나타났다.

접수된 사례 상담은 사례의 상황에 따라 1~2회에서 종결되기도 하며 수십 차례 이상의 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2019년 한 해 동안 실시된 총 상담횟수는 140,354회로 상담원 1인당 상담횟수는 516.0회로 나타났으며, 월 43.0회, 하루 1.4회 이상의 상담이 진행되었다.

신고접수된 사례 중 학대사례로 판정이 되면 응급 사례의 경우 12시간 이내, 비응급 및 잠재적 사례의 경우 7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2019년 실시된 현장조사 횟수는 5,084회이며 1인당 현장조사 횟수는 18.7회로 나타났고, 방문상담의 경우 30,110회 진행되었으며 1인당 110.7회의 방문상담이 이루어졌다.

학대피해노인에게 제공한 서비스는 141,442회, 학대행위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는 29,729회로 나타났으며, 1인당 제공서비스는 각각 520.0회, 109.3회였다.





2019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 제3장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1. 현장조사
2. 사례판정







# 제3장

##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 1 현장조사

현장조사는 신고접수된 학대의심사례의 학대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를 조사하기 위한 최초의 방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접수판정 시 노인학대의심사례로 분류된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현장조사 시에는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를 확인하고,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확인한다. 또한 학대의심사례로서 적합성 판정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 및 정보수집과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확인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해 정보를 수집한다.

단 한 번의 현장조사만으로는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어 여러 차례에 걸쳐 방문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2019년 한 해 동안 실시한 현장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학대사례 5,243건 중 현장조사를 실시한 사례는 5,084건으로 현장조사 비율은 97.0%이다. 학대사례의 경우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로부터 현장조사 거부 의사가 있다하더라도 현장조사를 미실시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로부터의 완강한 거부, 학대피해노인의 건강 악화로 인한 병원 및 시설입소, 학대피해노인의 이사 및 이주 또는 학대피해노인이 현장조사를 원하지 않고, 제3의 장소나 기관 내방 등을 원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표 3-1] 현장조사

(단위: 건, %)

학대사례	현장조사	실시비율
5,243	5,084	97.0



현장조사 및 방문상담 현황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서울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서울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대구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대구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광주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대전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강원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전라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경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현장조사 100% 비율을 보였다.

학대사례에 대한 방문상담 건수를 보면 전체 5,243건 중 30,110회의 방문상담이 이루어졌으며, 한 사례 당 평균 5.7회의 방문상담을 진행하였다. 지역별 방문상담 횟수의 경우 충청북도가 10.9회로 가장 높았고, 충청남도와 경상북도가 각각 9.3회로 그 뒤를 이었다.

이를 다시 기관별로 살펴보면 경북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12.9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12.4회,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10.5회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 지역 및 기관별 현장조사 및 방문상담

(단위: 회, %)

지역	기관명	학대사례 (A)	현장조사 (B)	실시비율 (C)=B/A×100	방문상담 (D)	방문상담횟수 (E)=D/A
서울	서울남부	188	187	99.5	1,026	5.5
	서울북부	169	169	100.0	696	4.1
	서울서부	177	177	100.0	882	5.0
	소계	534	533	99.8	2,604	4.9
부산	부산동부	190	188	98.9	1,409	7.4
	부산서부	174	173	99.4	657	3.8
	소계	364	361	99.2	2,066	5.7
대구	대구남부	116	116	100.0	945	8.1
	대구북부	108	108	100.0	467	4.3
	소계	224	224	100.0	1,412	6.3
인천	인천	352	320	90.9	999	2.8
	인천서부	17	16	94.1	12	0.7
	소계	369	336	91.1	1,011	2.7
광주		235	235	100.0	1,225	5.2
대전		123	123	100.0	967	7.9

지역	기관명	학대사례 (A)	현장조사 (B)	실시비율 (C)=B/A×100	방문상담 (D)	방문상담횟수 (E)=D/A
	울산	102	100	98.0	810	7.9
경기	경기도	89	85	95.5	154	1.7
	경기남부	228	228	100.0	897	3.9
	경기북부	333	333	100.0	805	2.4
	경기서부	264	207	78.4	592	2.2
	소계	914	853	93.3	2,448	2.7
강원	강원	141	136	96.5	1,374	9.7
	강원동부	103	98	95.1	961	9.3
	강원남부	121	121	100.0	621	5.1
	소계	365	355	97.3	2,956	8.1
충북	충북	106	102	96.2	1,318	12.4
	충북북부	69	67	97.1	591	8.6
	소계	175	169	96.6	1,909	10.9
충남	충남	159	157	98.7	1,670	10.5
	충남남부	99	96	97.0	720	7.3
	소계	258	253	98.1	2,390	9.3
전북	전북	144	144	100.0	674	4.7
	전북서부	122	116	95.1	658	5.4
	소계	266	260	97.7	1,332	5.0
전남	전남동부	151	151	100.0	483	3.2
	전남서부	186	179	96.2	1,665	9.0
	소계	337	330	97.9	2,148	6.4
경북	경북	170	170	100.0	1,183	7.0
	경북서북부	206	198	96.1	2,653	12.9
	경북서남부	116	115	99.1	756	6.5
	소계	492	483	98.2	4,592	9.3
경남	경남	242	242	100.0	720	3.0
	경남서부	97	97	100.0	895	9.2
	소계	339	339	100.0	1,615	4.8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115	105	91.3	428	3.7
	제주도서귀포시	31	26	83.9	197	6.4
	소계	146	131	89.7	625	4.3
계		5,243	5,085	97.0	30,110	5.7



## 2 사례판정

현장조사 실시 후에는 신고접수 당시 파악된 정보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중심으로 학대여부를 판정하는데 이를 사례판정이라고 한다. 사례판정은 상황의 위급성 정도, 학대피해노인의 상황, 가족 또는 학대행위자 상황 등 학대의 심각성 및 응급성 여부에 따라 응급 사례, 비응급 사례, 잠재 사례, 일반사례로 분류 된다. 사례판정 시에는 충분한 자료를 통하여 사례를 판정하되, 판정하기 어려운 사례의 경우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거나, 사례판정위원회를 소집하여 사례를 판정해 사례판정의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응급 사례는 노인학대가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학대로 인해 즉각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경우이다. 또한 학대행위자로부터 즉시 격리가 요구되며, 노인의 생명 혹은 안전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그 밖의 유기 및 장기간 방임으로 인하여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경우, 학대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응급 사례의 조치방법으로는 1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노인의 안전을 위한 응급조치를 우선으로 제공해야 할 경우 가능한 112 또는 119를 통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학대피해노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대피해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노인이 이를 판단할 지적·심리적 능력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구한 다음 처리한다. 응급상태가 해결되면 비응급 사례 조치방법에 준하여 학대피해노인, 학대행위자 및 가족에게 서비스를 지원한다.

비응급 사례는 노인학대가 발생하였으나 학대피해노인의 안전이 확보되어 응급이 아닌 경우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 등이 해당되며, 조치방법으로는 노인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며 정확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서비스 계획에 의하여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향후에는 노인학대 원인이 개선되었는지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잠재적 사례는 학대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노인부양, 노인과 가족 간의 의사소통기술 부족이나 갈등 등 학대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조치 방법으로 학대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학대 위험요인이 드러난 관계, 노인학대 유형, 학대발생 원인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아울러 이에 따른 정확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례이다.

일반사례는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실관계 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위험요인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이다. 또한 신고자 및 학대피해노인의 연락두절로 개입이 불가능한 경우, 학대피해노인 및 기타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 일반사례로 판정한다.

이처럼 노인학대 의심사례로 판정되지 않았으나 신고접수 된 일반사례에 대해서는 노인학대 예방 사업의 목적에 따라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아울러 노인문제 등 타 기관(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일반노인상담센터)에서 처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타 기관에 의뢰하여 처리한다.

2019년 전체사례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사례를 판정유형별로 살펴보면 [표 3-3]과 같다. 총 5,243건 중 비응급 사례가 3,322건(63.4%)으로 가장 높았으며 잠재적 사례가 1,817건(34.7%), 응급 사례가 104건(2.0%)으로 나타났다.

잠재적 사례의 경우 학대위험요인이 잠재하고 있어 응급 또는 비응급 사례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노인학대 예방차원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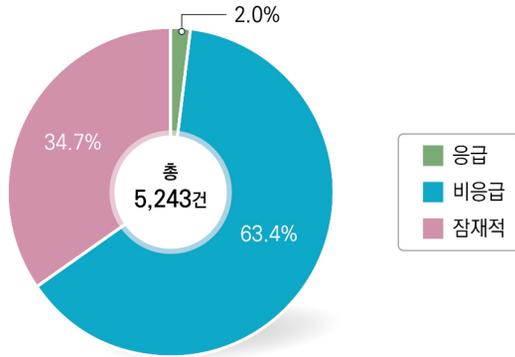
[표 3-3] 지역 및 기관별 사례판정 결과

(단위: 건, %)

지역	기관명	응 급		비응급		잠재적		계	
서울	서울남부	2	1.1	172	91.5	14	7.4	188	100
	서울북부	7	4.1	52	30.8	110	65.1	169	100
	서울서부	8	4.5	134	75.7	35	19.8	177	100
	소계	17	3.2	358	67.0	159	29.8	534	100
부산	부산동부	1	0.5	154	81.1	35	18.4	190	100
	부산서부	2	1.1	127	73.0	45	25.9	174	100
	소계	3	0.8	281	77.2	80	22.0	364	100
대구	대구남부	1	0.9	63	54.3	52	44.8	116	100
	대구북부	-	-	84	77.8	24	22.2	108	100
	소계	1	0.4	147	65.6	76	33.9	224	100
인천	인천	-	-	16	4.5	336	95.5	352	100
	인천서부	-	-	-	-	17	100.0	17	100
	소계	-	-	16	4.3	353	95.7	369	100
광주		17	7.2	216	91.9	2	0.9	235	100
대전		2	1.6	38	30.9	83	67.5	123	100
울산		3	2.9	93	91.2	6	5.9	102	100



지역	기관명	응 급		비응급		잠재적		계	
경기	경기도	7	7.9	1	1.1	81	91.0	89	100
	경기남부	1	0.4	190	83.3	37	16.2	228	100
	경기북부	6	1.8	240	72.1	87	26.1	333	100
	경기서부	2	0.8	97	36.7	165	62.5	264	100
	소계	16	1.8	528	57.8	370	40.5	914	100
강원	강원	-	-	131	92.9	10	7.1	141	100
	강원동부	-	-	29	28.2	74	71.8	103	100
	강원남부	5	4.1	109	90.1	7	5.8	121	100
	소계	5	1.4	269	73.7	91	24.9	365	100
충북	충북	8	7.5	93	87.7	5	4.7	106	100
	충북북부	3	4.3	28	40.6	38	55.1	69	100
	소계	11	6.3	121	69.1	43	24.6	175	100
충남	충남	3	1.9	128	80.5	28	17.6	159	100
	충남남부	6	6.1	52	52.5	41	41.4	99	100
	소계	9	3.5	180	69.8	69	26.7	258	100
전북	전북	1	0.7	105	72.9	38	26.4	144	100
	전북서부	1	0.8	56	45.9	65	53.3	122	100
	소계	2	0.8	161	60.5	103	38.7	266	100
전남	전남동부	3	2.0	148	98.0	-	-	151	100
	전남서부	1	0.5	145	78.0	40	21.5	186	100
	소계	4	1.2	293	86.9	40	11.9	337	100
경북	경북	4	2.4	25	14.7	141	82.9	170	100
	경북서북부	2	1.0	178	86.4	26	12.6	206	100
	경북서남부	-	-	99	85.3	17	14.7	116	100
	소계	6	1.2	302	61.4	184	37.4	492	100
경남	경남	8	3.3	162	66.9	72	29.8	242	100
	경남서부	-	-	66	68.0	31	32.0	97	100
	소계	8	2.4	228	67.3	103	30.4	339	10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	-	60	52.2	55	47.8	115	100
	제주도서귀포시	-	-	31	100.0	-	-	31	100
	소계	-	-	91	62.3	55	37.7	146	100
계		104	2.0	3,322	63.4	1,817	34.7	5,243	100



[그림 3-1] 지역별 사례판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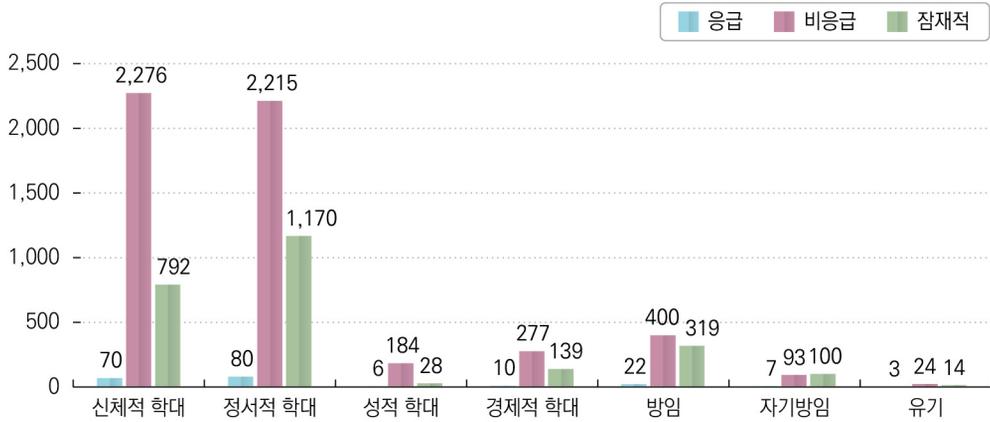
[표 3-4]는 사례판정별 노인학대 유형을 교차분석 한 것으로, 비응급 사례의 경우 신체적 학대 - 정서적 학대 - 방임의 순으로 나타나 신체적 학대의 비율이 다른 노인학대 유형보다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응급 사례와 잠재적 사례의 경우 정서적 학대 - 신체적 학대 - 방임의 순으로 나타나 비응급 사례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표 3-4] 사례판정 결과별 노인학대 유형

(단위: 건, %)

구분	응급		비응급		잠재적		계	
신체적 학대	70	35.4	2,276	41.6	792	30.9	3,138	38.1
정서적 학대	80	40.4	2,215	40.5	1,170	45.7	3,465	42.1
성적 학대	6	3.0	184	3.4	28	1.1	218	2.6
경제적 학대	10	5.1	277	5.1	139	5.4	426	5.2
방임	22	11.1	400	7.3	319	12.5	741	9.0
자기방임	7	3.5	93	1.7	100	3.9	200	2.4
유기	3	1.5	24	0.4	14	0.5	41	0.5
계	198	100	5,469	100	2,562	100	8,229	100

\* 중복



[그림 3-2] 사례판정 결과별 노인학대 유형

[표 3-5]는 사례판정별 신고자 유형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먼저 응급 사례로 판정된 사례의 신고자 유형을 살펴보면 관련기관 - 신고의무자 - 피해자 본인 - 타인 - 친족 순이며, 비응급 사례와 잠재적 사례는 모두 관련기관 - 신고의무자 - 친족 - 피해자 본인 - 타인 순으로 나타났다. 사례판정 결과 세 가지 유형 모두에서 관련기관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표 3-5] 사례판정 결과별 신고자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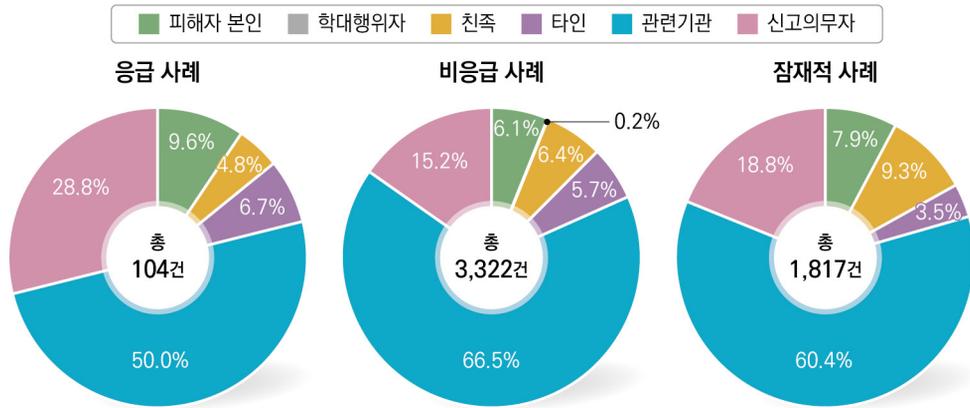
(단위: 건, %)

신고자유형	응 급		비응급		잠재적		계	
피해자 본인	10	9.6	204	6.1	144	7.9	358	6.8
학대행위자	-	-	5	0.2	-	-	5	0.1
친 족 <sup>17)</sup>	5	4.8	212	6.4	169	9.3	386	7.4
타 인 <sup>18)</sup>	7	6.7	188	5.7	64	3.5	259	4.9
관련기관 <sup>19)</sup>	52	50.0	2,208	66.5	1,098	60.4	3,358	64.0
신고의무자	30	28.8	505	15.2	342	18.8	877	16.7
계	104	100	3,322	100	1,817	100	5,243	100

17) 친족에는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이 해당됨.

18) 타인에는 기타타인, 동거인, 이웃, 익명, 친구가 해당됨.

19) 관련기관에는 어르신 지킴이단, 경찰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기타 관련기관 종사자 등이 해당됨.



[그림 3-3] 사례판정 결과별 신고자 유형





2019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 제4장 노인학대 사례 분석 결과

1. 학대피해노인 현황
2. 학대행위자 현황
3. 노인학대 유형 및 특성







# 제4장

## 노인학대 사례 분석 결과

### 1 학대피해노인 현황

#### 1) 65세 인구 수 대비 학대피해노인 성별

2019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사례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5,243건 중 남녀 성별 비율을 보면 여성노인이 3,973건(75.8%), 남성노인이 1,270건 (24.2%)으로 여성노인의 비율이 남성노인보다 약 3.1배 높게 나타났다.

[표 4-1] 65세 인구 수 대비 학대피해노인 성별 분포

(단위: 명, %)

구분	65세 이상 인구 수	비율	학대피해노인 수	비율
남	3,457,689	43.1	1,270	24.2
여	4,569,226	56.9	3,973	75.8
계	8,026,915	100.0	5,243	100

주. 65세 이상 인구수 : 행정자치부 2019년 주민등록 인구통계(2019.12 기준)

#### 2)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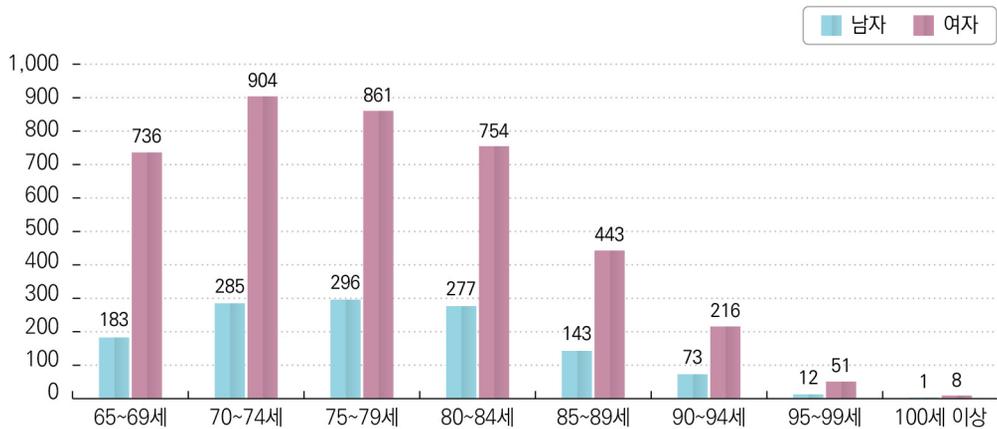
학대피해노인의 성별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70대를 기점으로 학대 발생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연령대별 학대피해노인 분포를 살펴보면 65~69세 919명(17.5%), 70대 2,346명(44.8%), 80대 1,617명(30.9%)으로 나타나, 70대를 기준으로 학대피해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4-2] 학대피해노인 성별 연령분포

(단위: 건, %)

피해자 성별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94세	95~99세	100세 이상	계
남성	183	285	296	277	143	73	12	1	1,270
	14.4	22.4	23.3	21.8	11.3	5.7	0.9	0.1	100
여성	736	904	861	754	443	216	51	8	3,973
	18.5	22.8	21.7	19	11.2	5.4	1.3	0.2	100
계	919	1,189	1,157	1,031	586	289	63	9	5,243
	17.5	22.7	22.1	19.7	11.2	5.5	1.2	0.2	100



[그림 4-1] 학대피해노인 성별 연령분포

### 3)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노인 성별

지역별 학대피해노인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노인의 경우 대전광역시 3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노인의 경우 제주도가 8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3]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노인 성별

(단위: 건, %)

지역	기관명	남 성		여 성		계	
서울	서울남부	37	19.7	151	80.3	188	100
	서울북부	29	17.2	140	82.8	169	100
	서울서부	33	18.6	144	81.4	177	100
	소계	99	18.5	435	81.5	534	100
부산	부산동부	43	22.6	147	77.4	190	100
	부산서부	47	27.0	127	73.0	174	100
	소계	90	24.7	274	75.3	364	100

지역	기관명	남 성		여 성		계	
대구	대구남부	24	20.7	92	79.3	116	100
	대구북부	20	18.5	88	81.5	108	100
	소계	44	19.6	180	80.4	224	100
인천	인천	75	21.3	277	78.7	352	100
	인천서부	3	17.6	14	82.4	17	100
	소계	78	21.1	291	78.9	369	100
	광주	61	26.0	174	74.0	235	100
	대전	37	30.1	86	69.9	123	100
	울산	24	23.5	78	76.5	102	100
경기	경기도	27	30.3	62	69.7	89	100
	경기남부	68	29.8	160	70.2	228	100
	경기북부	84	25.2	249	74.8	333	100
	경기서부	61	23.1	203	76.9	264	100
	소계	240	26.3	674	73.7	914	100
강원	강원	32	22.7	109	77.3	141	100
	강원동부	28	27.2	75	72.8	103	100
	강원남부	31	25.6	90	74.4	121	100
	소계	91	24.9	274	75.1	365	100
충북	충북	28	26.4	78	73.6	106	100
	충북북부	13	18.8	56	81.2	69	100
	소계	41	23.4	134	76.6	175	100
충남	충남	43	27.0	116	73.0	159	100
	충남남부	27	27.3	72	72.7	99	100
	소계	70	27.1	188	72.9	258	100
전북	전북	37	25.7	107	74.3	144	100
	전북서부	33	27.0	89	73.0	122	100
	소계	70	26.3	196	73.7	266	100
전남	전남동부	34	22.5	117	77.5	151	100
	전남서부	43	23.1	143	76.9	186	100
	소계	77	22.8	260	77.2	337	100
경북	경북	43	25.3	127	74.7	170	100
	경북서북부	69	33.5	137	66.5	206	100
	경북서남부	31	26.7	85	73.3	116	100
	소계	143	29.1	349	70.9	492	100
경남	경남	55	22.7	187	77.3	242	100
	경남서부	24	24.7	73	75.3	97	100
	소계	79	23.3	260	76.7	339	10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21	18.3	94	81.7	115	100
	제주도서귀포시	5	16.1	26	83.9	31	100
	소계	26	17.8	120	82.2	146	100
	계	1,270	24.2	3,973	75.8	5,24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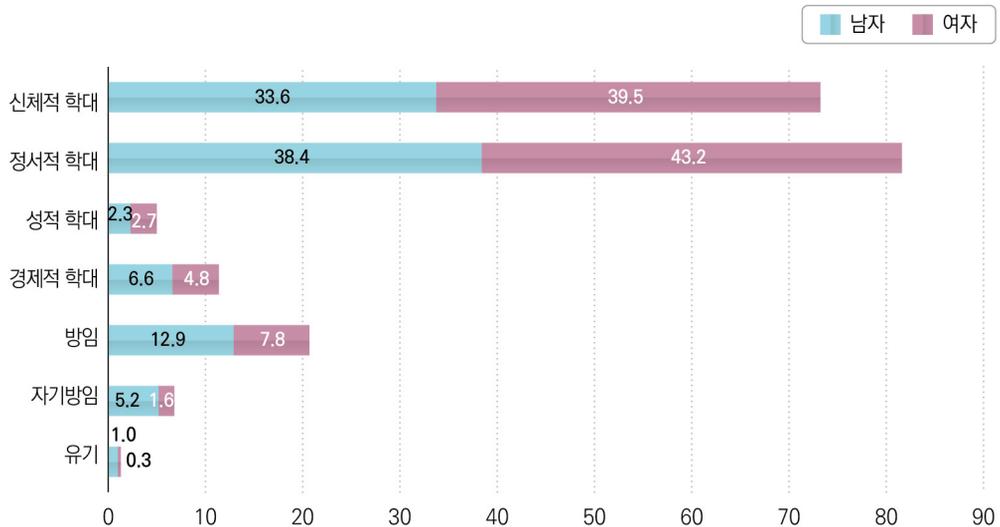
#### 4) 학대피해노인 성별 노인학대 유형

학대피해노인 성별에 따른 노인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모두 각각 728건(38.4%), 2,737건(43.2%)으로 정서적 학대 유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통적으로 정서적 학대 - 신체적 학대 - 방임의 순을 보였다.

[표 4-4] 학대피해노인 성별 노인학대 유형

(단위: 건, %)

피해자 성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 임	자기 방임	유 기	계
남성	637	728	44	125	245	99	19	1,897
	33.6	38.4	2.3	6.6	12.9	5.2	1.0	100
여성	2,501	2,737	174	301	496	101	22	6,332
	39.5	43.2	2.7	4.8	7.8	1.6	0.3	100
계	3,138	3,465	218	426	741	200	41	8,229
	38.1	42.1	2.6	5.2	9.0	2.4	0.5	100



[그림 4-2] 학대피해노인 성별 노인학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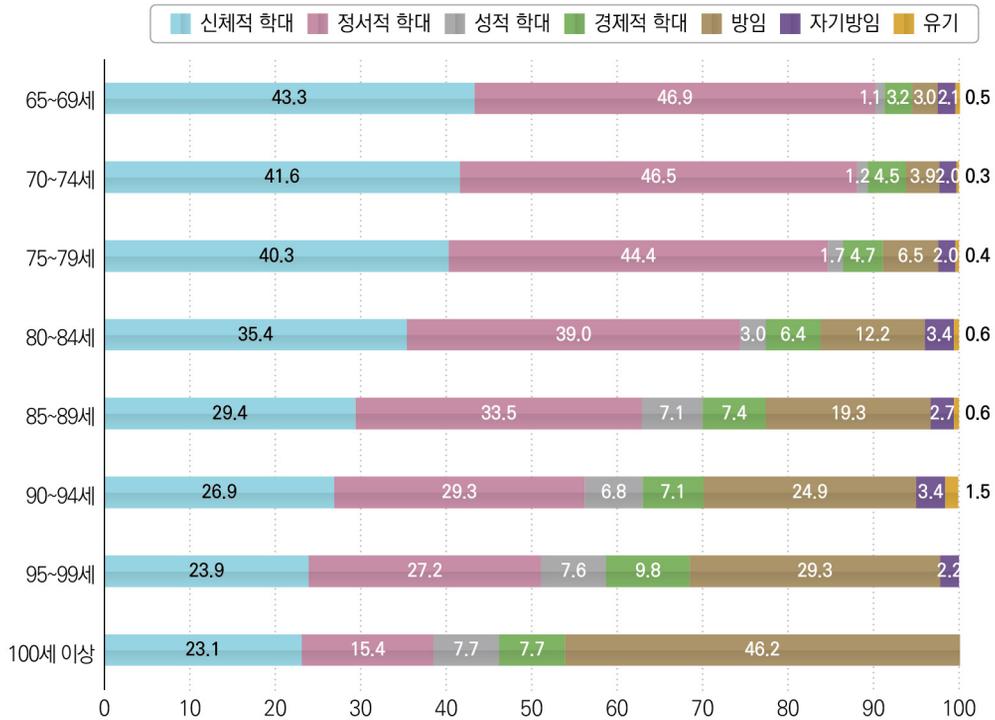
## 5) 학대피해노인 연령대별 노인학대 유형

학대피해노인의 연령대별 학대 유형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정서적 학대가 3,465건(42.1%)으로 가장 높았으며, 정서적 학대 - 신체적 학대 - 방임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방임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4-5] 학대피해노인 연령대별 노인학대 유형

(단위: 건, %)

피해자 연령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 임	자기 방임	유 기	계
65~69세	629	682	16	46	43	31	7	1,454
	43.3	46.9	1.1	3.2	3.0	2.1	0.5	100
70~74세	801	895	23	87	76	39	5	1,926
	41.6	46.5	1.2	4.5	3.9	2.0	0.3	100
75~79세	744	818	32	86	120	36	8	1,844
	40.3	44.4	1.7	4.7	6.5	2.0	0.4	100
80~84세	567	625	48	102	195	54	10	1,601
	35.4	39.0	3.0	6.4	12.2	3.4	0.6	100
85~89세	262	298	63	66	172	24	5	890
	29.4	33.5	7.1	7.4	19.3	2.7	0.6	100
90~94세	110	120	28	29	102	14	6	409
	26.9	29.3	6.8	7.1	24.9	3.4	1.5	100
95~99세	22	25	7	9	27	2	-	92
	23.9	27.2	7.6	9.8	29.3	2.2	-	100
100세 이상	3	2	1	1	6	-	-	13
	23.1	15.4	7.7	7.7	46.2	-	-	100
계	3,138	3,465	218	426	741	200	41	8,229
	38.1	42.1	2.6	5.2	9.0	2.4	0.5	100



[그림 4-3] 학대피해노인 연령대별 노인학대 유형

### 6) 학대피해노인 결혼 유형

학대피해노인의 결혼 유형을 살펴보면 학대피해노인의 개인사, 가족환경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배우자 있음과 배우자 없음으로 나눈 뒤, 배우자 있음의 세부 항목은 초혼, 재혼, 사실혼으로, 배우자 없음은 사별, 이혼, 별거, 가출, 미혼으로 분류하였다. 전체 학대피해노인 5,243명 중 배우자 있음의 경우 3,036명(57.9%), 배우자 없음이 2,207명(42.1%)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대피해노인 중 가장 많은 결혼 유형은 초혼 노인 2,716명으로 이는 전체 학대피해노인의 51.8%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표 4-6] 학대피해노인 결혼 유형

(단위: 명, %)

구분		명수	비율
배우자있음	초혼	2,716	51.8
	재혼	190	3.6
	사실혼	130	2.5
	소계	3,036	57.9

구 분		명 수	비 율
배우자없음	사별	1,853	35.3
	이혼	222	4.2
	별거	49	0.9
	가출	6	0.1
	미혼	77	1.5
	소계	2,207	42.1
계		5,243	100

### 7) 학대행위자와의 동거여부 및 동거자 유형

전체 학대피해노인의 68.4%(3,584명)가 학대행위자와 동거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경우 학대위험요인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따로 거주하더라도 부양의무자의 책임과 의무를 실행하지 않거나 비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학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으므로 동거, 비동거 어느 한쪽의 위험요인이 더 높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표 4-7] 학대행위자와의 동거여부

(단위: 명, %)

동거	비동거	계
3,584	1,659	5,243
68.4	31.6	100

학대피해노인 동거자 유형은 학대피해노인과 동거하는 가족 및 기타 타인 등의 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대피해노인의 환경 및 지지자원 활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19년 신고접수 된 노인학대 사례 중 학대피해노인의 동거자 유형을 살펴보면, 배우자가 2,317명으로 42.8%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동거자 유형으로는 아들 1,553명(28.7%), 손자녀 419명(7.7%) 순으로 나타났다.

[표 4-8] 학대피해노인 동거자 유형

(단위: 명, %)

구 분	명 수	비 율
배우자	2,317	42.8
아 들	1,553	28.7
손자녀	419	7.7
딸	398	7.4



구 분	명 수	비 율
시 설	341	6.3
며느리	164	3.0
병 원	59	1.1
기타 동거인	67	1.2
사 위	44	0.8
기타 친·인척	46	0.9
계	5,408	100

\* 중복

## 8)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학대피해노인의 가구형태는 학대피해노인과 동거가족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노인 혼자 거주하는 노인단독가구, 노부부만 거주하는 노인부부가구, 노인과 자녀만 동거하는 자녀동거가구, 노인과 손자녀만 거주하는 손자녀 동거가구, 자녀와 손자녀까지 함께 거주하는 자녀·손자녀 동거가구로 분류되며, 기타 가구형태로는 시설에 거주하거나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은 형태 등이 포함된다.

2019년 접수된 전체 학대사례 중 학대피해노인의 가구형태를 살펴보면 노인부부 가구형태가 1,669명(31.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녀동거가 1,588명(30.3%), 노인단독가구가 1,039명(19.8%)으로 그 뒤를 이었다.

[표 4-9]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단위: 명, %)

피해자가구형태	명 수	비 율
노인단독	1,039	19.8
노인부부	1,669	31.8
자녀동거	1,588	30.3
손자녀동거	182	3.5
자녀·손자녀동거	195	3.7
기 타	570	10.9
계	5,243	100

## 9) 학대피해노인 주거형태

학대피해노인의 주거형태란 학대피해노인의 거주지 종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대피해노인의 경제적 능력과 주거환경 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주거형태는 자택, 전세, 월세, 영구임대, 의료시설, 무상 등으로 분류된다.

학대피해노인의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본인명의로 된 집에서 사는 학대피해노인이 3,177명(60.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세가 489명(9.3%), 월세와 의료복지시설이 동일하게 407명(7.8%)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0] 학대피해노인 주거형태

(단위: 명, %)

자택	전세	월세	영구임대	의료시설	의료복지시설	무상	주거복지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기타	계
3,177	489	407	281	99	407	101	76	107	99	5,243
60.6	9.3	7.8	5.4	1.9	7.8	1.9	1.4	2	1.9	100

## 10)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은 생활이 어려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계급여 등을 제공받는 것을 의미한다. 학대피해노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810명(15.4%)으로 나타났다. 2018년 16.4%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7년 노인실태조사<sup>20)</sup>와 비교하면 여전히 학대피해노인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11]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단위: 명, %)

전체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243	810
	15.4

20) 2017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은 6.4%임



## 11) 학대피해노인 교육정도

학대피해노인의 교육정도를 살펴보면 초졸이 2,145명(40.9%)으로 가장 높았고, 무학이 1,564명(29.8%), 중졸이 853명(16.3%)으로 나타나 무학 및 초졸이 70.7%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2] 학대피해노인 교육정도

(단위: 명, %)

무 학	초 졸	중 졸	고 졸	전문대졸이상	계
1,564	2,145	853	545	136	5,243
29.8	40.9	16.3	10.4	2.6	100

## 12) 학대피해노인 직업유형

학대피해노인의 직업유형은 학대피해노인의 주 수입원인 직업의 유무와 직종을 의미한다. 따라서 직업유형은 학대피해노인의 생활수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대피해노인의 직업유형을 살펴보면, 무직이 4,534명(86.5%)으로 대부분의 학대피해노인이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이 있는 학대피해노인의 직종은 단순노무종사자가 229명(4.4%), 농·어·축산업 종사자가 179명(3.4%)의 순이었다.

[표 4-13] 학대피해노인 직업유형

(단위: 명, %)

구 분	명 수	비 율
무직	4,534	86.5
단순노무종사자	229	4.4
농·어·축산업 종사자	179	3.4
자영업자	135	2.6
서비스·판매종사자	102	1.9
전문직	24	0.5
기술공 및 준전문가	16	0.3
공무원·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9	0.2
종교인	9	0.2
기능업 및 관련기능종사자	3	0.1
사무종사자	3	0.1
계	5,243	100

### 13) 학대피해노인 건강상태

학대피해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항목은 질병 유형, 장애 수, 장애유형, 치매정도, 중독 유형 등이 해당된다. 학대피해노인의 건강상태는 사례개입 시 반드시 필요한 항목으로 상담 시 필수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항목이다.

#### 가. 학대피해노인 질병유형

학대피해노인의 질병 유형으로는 악성신생물(암), 관절염, 요통·좌골통, 디스크, 신경통, 골다공증, 소화성궤양, 만성간염·간병변, 당뇨병, 갑상선 질환, 고혈압, 저혈압, 중풍·뇌혈관 질환, 협심증·심근경색증, 폐결핵·결핵, 만성기관지염, 천식, 백내장, 녹내장, 만성중이염, 만성신장질환, 빈혈, 피부병, 골절·후유증, 기타 등으로 분류된다.

학대피해노인의 질병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이에 해당하는 질병 건수는 4,212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고혈압이 973건(23.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관절염이 644건(15.3%), 기타가 725건(17.2%), 당뇨병이 539건(12.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4] 학대피해노인 질병 유형

(단위: 건, %)

구 분	건 수	비 율
고혈압	973	23.1
관절염	644	15.3
당뇨병	539	12.8
디스크	222	5.3
골다공증	194	4.6
신경통	149	3.5
중풍, 뇌혈관 질환	132	3.1
협심증, 심근경색증	105	2.5
요통, 좌골통	100	2.4
골절, 후유증	83	2.0
악성신생물(암)	57	1.4
천식	56	1.3
갑상선 질환	36	0.9
피부병	31	0.7
백내장	29	0.7



구 분	건 수	비 율
만성신장질환	29	0.7
저혈압	24	0.6
소화성궤양	22	0.5
빈혈	19	0.5
만성기관지염	15	0.4
폐결핵, 결핵	8	0.2
만성간염, 간경변	8	0.2
녹내장	8	0.2
만성중이염	4	0.1
기타	725	17.2
계	4,212	100

\* 중복

#### 나. 학대피해노인 장애 수 및 장애유형

하나 이상의 장애가 있는 학대피해노인은 전체 학대피해노인 5,243명 중 528명(10.1%)으로 집계되었으며, 장애가 있는 학대피해노인 중 460명(87.1%)은 2개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 학대피해노인 장애 수

(단위: 명, %)

장애 수	건 수	비 율
1개	68	12.9
2개 이상	460	87.1
계	528	100

\* 중복

학대피해노인 장애유형은 크게 신체장애와 정신장애로 분류되는데, 신체장애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 요루, 간질 등이 해당되고, 정신장애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정신분열, 정동장애, 우울장애 등이 해당된다.

2019년 학대피해노인의 장애 유형을 보면 신체장애는 378건(71.6%)이며 정신장애는 150건(28.4%)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학대피해노인 중 가장 많은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로 148건(28.0%)이며, 그 다음으로는 우울장애 116건(22.0%), 청각장애 84건(15.9%)으로 나타났다.

[표 4-16] 학대피해노인 장애유형

(단위: 건, %)

구 분		건 수	비 율
신체 장애	지체장애	148	28.0
	청각장애	84	15.9
	시각장애	53	10.0
	뇌병변장애	39	7.4
	언어장애	16	3.0
	지적장애	16	3.0
	신장장애	9	1.7
	장루요루장애	5	0.9
	심장장애	3	0.6
	호흡기장애	3	0.6
	간장애	1	0.2
	간질장애	1	0.2
	소계	378	71.6
정신 장애	우울장애	116	22.0
	정신분열	27	5.1
	정동장애	6	1.1
	반사회적 인격장애	1	0.2
	소계	150	28.4
계	528	100	

\* 중복

\*\* 학대 결과로서 장애 판정 유무는 확인이 어려우며, 장애인 등급판정을 받거나 현장조사 시 장애가 의심되는 대상자도 포함.

#### 다.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는 병원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경우와 병원진단 없이 상담원이 임의로 간이정신상태검사지표나 학대피해노인의 상황에 따라 치매로 의심하는 치매의심으로 분류한다.

2019년 발생한 학대사례의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가 의심되거나 치매로 진단받은 사례는 총 1,381건으로 전체 학대사례의 26.3%로 집계되었다. 이 중 550건(10.5%)은 치매의심이며,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진단은 831건(15.8%)으로 나타났다.



[표 4-17]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단위: 건, %)

전체학대사례	치매의심(치매가 의심됨)	치매진단(치매로 진단받음)	계
5,243	550	831	1,381
	10.5	15.8	26.3

#### 라. 학대피해노인 중독 유형

학대피해노인의 중독 유형은 중독성을 지닌 항목의 중독여부 및 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코올 사용 장애, 도박중독 등이 해당된다.

알코올 사용 장애는 알코올 중독 진단을 받았거나, 알코올 의존비율이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전체 학대사례 5,243건 중 64건(1.2%)이 중독 유형을 보였으며, 이 중 알코올 사용 장애가 62건으로 중독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표 4-18] 학대피해노인 중독 유형

(단위: 건, %)

전체학대사례	알코올 사용 장애	도박중독	계
5,243	62	2	64
	1.2	0.0	1.2

### 14) 학대피해노인 일상생활 정도

학대피해노인 일상생활정도는 학대피해노인의 기능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일상생활수행능력(ADL)과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을 의미한다.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은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체위 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타기, 방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등을 통해 파악한다.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은 몸단장하기, 집안일 하기, 식사 준비하기, 빨래하기, 근거리 외출하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물건 사러 가기, 금전 관리하기, 전화 사용하기, 약 챙겨 먹기 등을 통해 파악한다.

2019년 접수된 학대사례에 대한 학대피해노인의 일상생활 정도를 살펴보면,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의 경우 각각의 항목은 71~73% 수준에서 완전자립이 가능한 상태이며,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은 각각의 항목은 66~71% 수준에서 완전자립이 가능한 상태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의 완전도움의 경우 각각의 항목은 8~11% 수준이었으며,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의 각각의 항목은 9~12% 수준으로 나타나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에서 조금 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9] 학대피해노인 일상생활 정도

(단위: 명, %)

구 분		부분도움	완전도움	완전자립	계
일상생활 수행능력 (ADL)	옷 벗고 입기	1,004	478	3,761	5,243
		19.1	9.1	71.7	100
	세수하기	981	468	3,794	5,243
		18.7	8.9	72.4	100
	양치질하기	981	464	3,798	5,243
		18.7	8.8	72.4	100
	목욕하기	1,023	553	3,667	5,243
		19.5	10.5	69.9	100
	식사하기	1,051	433	3,759	5,243
		20.0	8.3	71.7	100
	체위변경하기	1,001	430	3,812	5,243
		19.1	8.2	72.7	100
	일어나 앉기	1,033	447	3,763	5,243
		19.7	8.5	71.8	100
	움켜 타기	1,018	480	3,745	5,243
		19.4	9.2	71.4	100
	방밖으로 나오기	993	466	3,784	5,243
		18.9	8.9	72.2	100
	화장실 사용하기	980	477	3,786	5,243
		18.7	9.1	72.2	100
대변조절하기	960	476	3,807	5,243	
	18.3	9.1	72.6	100	
소변조절하기	962	476	3,805	5,243	
	18.3	9.1	72.6	100	



구 분		부분도움	완전도움	완전자립	계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IADL)	몸단장하기	1,018	502	3,723	5,243
		19.4	9.6	71.0	100
	집안일 하기	1,074	615	3,554	5,243
		20.5	11.7	67.8	100
	식사준비하기	1,048	620	3,575	5,243
		20.0	11.8	68.2	100
	빨래하기	1,044	631	3,568	5,243
		19.9	12.0	68.1	100
	근거리 외출하기	1,115	607	3,521	5,243
		21.3	11.6	67.2	100
	교통수단 이용하기	1,118	653	3,472	5,243
		21.3	12.5	66.2	100
	물건 사러가기	1,052	615	3,576	5,243
		20.1	11.7	68.2	100
	금전관리하기	1,048	590	3,605	5,243
		20.0	11.3	68.8	100
	전화 사용하기	1,014	534	3,695	5,243
		19.3	10.2	70.5	100
	약 챙겨 먹기	1,021	550	3,672	5,243
		19.5	10.5	70.0	100

### 15) 학대피해노인 제공서비스 현황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상담서비스, 복지서비스,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보호서비스, 정보제공서비스 등으로 분류된다. 이를 다시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상담서비스는 학대피해노인 개별상담, 학대피해노인 집단상담, 가족상담, 관련자상담, 심리 및 기타검사로 구분할 수 있다. 복지서비스는 국민기초수급권 연결, 긴급복지지원 연결, 가족지원서비스 연결, 재가서비스 연결, 사회복지서비스 연결, 기타지원 연결, 후원 연결, 직접 후원 등이 해당된다.

법률서비스는 법률상담 연결, 법률소송 지원,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등이며, 의료서비스는 연계(이송), 연계(의료기관 서비스 제공), 연계(방문간호), 지원(이송 및 동행), 지원(의료비 지급)으로 분류된다. 보호서비스는 지킴이 연결, 시설보호, 일시보호 등이 해당되며 정보제공

서비스는 정보제공, 재학대 예방교육 등으로 분류된다.

2019년 접수된 학대사례 중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제공서비스는 총 141,442회이며 이 중 상담서비스가 78,232회(55.3%)로 가장 높았고, 정보제공서비스가 52,629회(37.2%), 복지서비스 제공이 7,779회(5.5%)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상담서비스의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학대피해노인 개별상담이 35,611회(25.2%), 관련자 상담이 31,944회(22.6%), 가족상담 10,006회(7.1%)의 순으로 나타났다. 관련자 상담이란 학대피해노인의 관련자로서 이웃, 회사동료, 동사무소 등의 상담을 의미한다. 상담서비스의 주된 기능은 객관적인 상황판단 및 가족 간 변화를 파악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개입을 위한 노력, 일방적이고 시혜적인 서비스가 아닌 가족의 기능을 지원하면서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표 4-20] 학대피해노인 제공서비스 현황

(단위: 회, %)

구분		횟수	비율
상담서비스	학대피해노인 개별상담	35,611	25.2
	학대피해노인 집단상담	148	0.1
	가족상담	10,006	7.1
	관련자 상담	31,944	22.6
	심리 및 기타검사	523	0.4
	소계	78,232	55.3
복지서비스	국민기초수급권 연결	105	0.1
	긴급복지지원연결	55	0.0
	가족지원서비스 연결	138	0.1
	재가 서비스 연결	260	0.2
	사회복지 서비스 연결	2,556	1.8
	기타자원 연결	3,007	2.1
	후원 연결	239	0.2
	직접 후원	1,419	1.0
소계	7,779	5.5	
법률서비스	법률상담연결	357	0.3
	법률소송지원	115	0.1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46	0.0
	소계	518	0.4



구 분		횟 수	비 율
의료서비스	연계(이송)	84	0.1
	연계(의료기관 서비스 제공)	196	0.1
	연계(방문간호)	114	0.1
	지원(이송 및 동행)	469	0.3
	지원(의료비 지급)	130	0.1
	소계	993	0.7
보호서비스	시설보호(기타)	10	0.0
	시설보호(노인의료복지시설)	39	0.0
	시설보호(노인주거복지시설)	35	0.0
	일시보호(기타)	151	0.1
	일시보호(노인보호쉼터)	617	0.4
	일시보호(노인의료복지시설)	13	0.0
	일시보호(노인재가복지시설)	4	0.0
	일시보호(노인전문병원)	10	0.0
	일시보호(노인주거복지시설)	36	0.0
	지킴이연결	376	0.3
소계	1,291	0.9	
정보제공 서비스	정보제공	5,189	3.7
	재학대 예방교육	47,440	33.5
	소계	52,629	37.2
계		141,442	100.0

\*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각 비율의 소계가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2 학대행위자 현황

### 1)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2019년 학대피해노인 5,243명에 대한 학대행위자는 5,777명으로 한 명의 학대피해노인에 대해 두 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존재할 수 있어 학대피해노인의 수보다 행위자가 더 많게 나타날 수 있다. 전체 학대행위자 5,777명 중 남성은 4,004명(69.3%)이며 여성은 1,773명(30.7%)으로 나타나 학대행위자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2.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의 연령은 70세 이상이 1,759명(30.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50대(1,465명, 25.4%), 40대(1,184명, 20.5%) 등의 순을 나타냈다. 이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 학대행위자의 경우 70세 이상이 1,507건(37.6%)으로 가장 높았으나, 여성 학대행위자의 경우에는 50대가 596건(33.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21] 학대행위자 성별 연령분포

(단위: 명, %)

구분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계
남성	32	53	239	810	869	494	1,507	4,004
	0.8	1.3	6.0	20.2	21.7	12.3	37.6	100
여성	10	28	67	374	596	446	252	1,773
	0.6	1.6	3.8	21.1	33.6	25.2	14.2	100
계	42	81	306	1,184	1,465	940	1,759	5,777
	0.7	1.4	5.3	20.5	25.4	16.3	30.4	100



[그림 4-4] 학대행위자 연령분포



## 2) 지역 및 기관별 학대행위자 성별

학대행위자의 지역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학대행위자 5,777명 중 경기도가 970명(16.8%)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가 616명(10.7%), 서울특별시가 542명(9.4%)으로 뒤를 이었다.

기관별 학대행위자 분포는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369명(6.4%)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 360명(6.2%)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다음으로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 357명(6.2%)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18명(0.3%)으로 학대행위자 분포가 가장 적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 33명(0.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 학대행위자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 학대행위자는 703명(72.5%)으로 경기도에 가장 많이 분포하였으며, 여성 학대행위자는 348명(56.5%)으로 강원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표 4-22] 지역 및 기관별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명, %)

시도	시설명	남 성		여 성		계	
서울	서울남부	153	81.0	36	19.0	189	100
	서울북부	126	73.7	45	26.3	171	100
	서울서부	146	80.2	36	19.8	182	100
	소계	425	78.4	117	21.6	542	100
부산	부산동부	165	81.7	37	18.3	202	100
	부산서부	133	74.3	46	25.7	179	100
	소계	298	78.2	83	21.8	381	100
대구	대구남부	101	87.1	15	12.9	116	100
	대구북부	92	84.4	17	15.6	109	100
	소계	193	85.8	32	14.2	225	100
인천	인천	280	77.8	80	22.2	360	100
	인천서부	15	83.3	3	16.7	18	100
	소계	295	78.0	83	22.0	378	100
	광주	186	77.5	54	22.5	240	100
	대전	82	55.0	67	45.0	149	100
	울산	80	74.8	27	25.2	107	100

시도	시설명	남 성		여 성		계	
경기	경기도	68	72.3	26	27.7	94	100
	경기남부	169	71.3	68	28.7	237	100
	경기북부	248	67.2	121	32.8	369	100
	경기서부	218	80.7	52	19.3	270	100
	소계	703	72.5	267	27.5	970	100
강원	강원	107	30.0	250	70.0	357	100
	강원동부	90	66.7	45	33.3	135	100
	강원남부	71	57.3	53	42.7	124	100
	소계	268	43.5	348	56.5	616	100
충북	충북	94	70.1	40	29.9	134	100
	충북북부	57	72.2	22	27.8	79	100
	소계	151	70.9	62	29.1	213	100
충남	충남	131	80.4	32	19.6	163	100
	충남남부	84	77.8	24	22.2	108	100
	소계	215	79.3	56	20.7	271	100
전북	전북	113	68.5	52	31.5	165	100
	전북서부	99	79.8	25	20.2	124	100
	소계	212	73.4	77	26.6	289	100
전남	전남동부	125	82.2	27	17.8	152	100
	전남서부	133	66.2	68	33.8	201	100
	소계	258	73.1	95	26.9	353	100
경북	경북	125	73.1	46	26.9	171	100
	경북서북부	89	39.6	136	60.4	225	100
	경북서남부	94	74.6	32	25.4	126	100
	소계	308	59.0	214	41.0	522	100
경남	경남	184	74.8	62	25.2	246	100
	경남서부	60	48.0	65	52.0	125	100
	소계	244	65.8	127	34.2	371	10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66	56.4	51	43.6	117	100
	제주도서귀포시	20	60.6	13	39.4	33	100
	소계	86	57.3	64	42.7	150	100
계		4,004	69.3	1,773	30.7	5,777	100

### 3)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크게 피해자 본인, 친족, 타인, 기관으로 분류된다. 친족은 다시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의 세부항목으로 분류되며, 타인은 동거인, 이웃, 친구, 기타 타인으로, 기관은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종사자, 기타기관 관련 종사자로 분류된다.

2019년 접수된 학대사례의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친족 관계인 경우가 4,288명(74.2%)으로 가장 많았다. 친족을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아들이 1,803명(42.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뒤를 이어 배우자 1,749명(40.8%), 딸 438명(10.2%)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들의 경우는 전체 세부항목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31.2%)을 보였으며, 배우자의 경우도 전체 세부항목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30.3%)을 보였다. 아들과 딸을 합친 자녀의 경우는 2,241명(38.8%)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친족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기관 1,067명(18.5%), 타인 222명(3.9%)이었다. 학대행위자가 피해자 본인인 경우는 200명(3.5%)으로 이는 노인이 스스로를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자기방임 사례에 해당한다.

[표 4-23]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단위: 명, %)

피해자 본인	친족							타인				기관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기타 타인	동거인	이웃	친구	기타 기관	노인 복지 시설	의료 시설	
200	1,749	1,803	109	438	27	112	50	85	48	85	4	44	1,008	15	5,777
3.5	30.3	31.2	1.9	7.6	0.5	1.9	0.9	1.5	0.8	1.5	0.1	0.8	17.4	0.3	100.0



[그림 4-5]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학대행위자의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70대 이상에서는 배우자가 1,434명(24.8%)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대피해노인 본인 169명(2.9%), 타인 91명(1.6%)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노(老) - 노(老)학대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노(老) - 노(老)학대란 65세 이상 고령의 학대행위자가 노인을 학대하는 것을 의미하며, 고령의 부부 간의 배우자 학대, 고령의 자녀 및 며느리 등에 의한 학대, 고령의 노인이 본인 스스로를 돌보지 않은 자기방임 유형의 학대를 의미한다. 2019년 한 해 동안 신고접수 된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는 총 2,137명이며, 전체 학대행위자 5,777명 중 40.0%에 해당한다.

그 다음으로 학대행위자의 연령 분포가 높게 나타난 50대(1,465명, 25.4%)와 40대(1,184명, 20.5%)에서는 아들이 학대행위자인 경우가 각각 697명(12.1%), 179명(12.4%)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주 부양층인 40-50대 중 부양부담을 주로 안고 있는 아들에 의해 노인학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4] 학대행위자 연령별 학대행위자 유형 분포

(단위: 명, %)

구분	피해자 본인	친족							타인				기관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기타 타인	동거인	이웃	친구	기타 기관 종사자	노인 복지 시설 종사자	의료인	
10~19세	-	-	4	-	-	-	37	1	-	-	-	-	-	-	-	42
	-	-	0.1	-	-	-	0.6	0.0	-	-	-	-	-	-	-	0.7
20~29세	-	-	12	3	6	1	49	-	1	-	-	-	1	8	-	81
	-	-	0.2	0.1	0.1	0.0	0.8	-	0.0	-	-	-	0.0	0.1	-	1.4
30~39세	-	1	167	6	41	-	19	1	-	1	2	-	-	67	1	306
	-	0.0	2.9	0.1	0.7	-	0.3	0.0	-	0.0	0.0	-	-	1.2	0.0	5.3
40~49세	-	3	719	37	183	12	7	4	11	3	5	-	14	181	5	1,184
	-	0.1	12.4	0.6	3.2	0.2	0.1	0.1	0.2	0.1	0.1	-	0.2	3.1	0.1	20.5
50~59세	-	34	697	40	152	13	-	10	16	6	17	-	25	448	7	1,465
	-	0.6	12.1	0.7	2.6	0.2	-	0.2	0.3	0.1	0.3	-	0.4	7.8	0.1	25.4
60~69세	31	277	179	21	55	1	-	14	22	20	26	1	4	287	2	940
	0.5	4.8	3.1	0.4	1.0	0.0	-	0.2	0.4	0.3	0.5	0.0	0.1	5.0	0.0	16.3
70세이상	169	1,434	25	2	1	-	-	20	35	18	35	3	-	17	-	1,759
	2.9	24.8	0.4	0.0	0.0	-	-	0.3	0.6	0.3	0.6	0.1	-	0.3	-	30.4
계	200	1,749	1,803	109	438	27	112	50	85	48	85	4	44	1,008	15	5,777
	3.5	30.3	31.2	1.9	7.6	0.5	1.9	0.9	1.5	0.8	1.5	0.1	0.8	17.4	0.3	100



학대피해노인의 가구형태별 학대행위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학대행위자가 아들인 경우가 자녀동거가구(1,120명, 67.9%), 노인단독가구(346명, 29.8%), 자녀·손자녀가구(92명, 44.4%) 형태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9년도 학대피해노인의 가구유형은 노인부부가구가 가장 많았는데, 노인부부가구의 학대행위자는 배우자가 1,406명(82.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손자녀 동거가구에서는 손자녀가 71명(37.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기타의 경우 주 학대행위자는 기관(720명, 83.0%)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기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대행위자는 친족이며, 학대피해노인의 가구형태 구성에 따라 학대행위자 유형도 대체로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5]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별 학대행위자 유형**

(단위: 명, %)

구분	피해자 본인	친족							타인				기관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기타 타인	동거인	이웃	친구	기타 기관 종사자	노인 복지 시설 종사자	의료인	
노인 단독	157	91	346	25	142	6	11	20	47	9	70	3	4	227	2	1,160
	13.5	7.8	29.8	2.2	12.2	0.5	0.9	1.7	4.1	0.8	6.0	0.3	0.3	19.6	0.2	100
노인 부부	17	1,406	153	10	29	4	2	5	14	14	11	1	5	31	1	1,703
	1.0	82.6	9.0	0.6	1.7	0.2	0.1	0.3	0.8	0.8	0.6	0.1	0.3	1.8	0.1	100
손자녀 동거	3	34	57	7	11	2	71	-	1	-	2	-	-	1	-	189
	1.6	18.0	30.2	3.7	5.8	1.1	37.6	-	0.5	-	1.1	-	-	0.5	-	100
자녀·손자녀 동거	2	24	92	26	31	6	21	-	-	-	-	-	1	4	-	207
	1.0	11.6	44.4	12.6	15.0	2.9	10.1	-	-	-	-	-	0.5	1.9	-	100
자녀 동거	14	179	1,120	39	206	7	5	2	3	3	1	-	8	62	1	1,650
	0.8	10.8	67.9	2.4	12.5	0.4	0.3	0.1	0.2	0.2	0.1	-	0.5	3.8	0.1	100
기타	7	15	35	2	19	2	2	23	20	22	1	-	26	683	11	868
	0.8	1.7	4.0	0.2	2.2	0.2	0.2	2.6	2.3	2.5	0.1	-	3.0	78.7	1.3	100
소계	200	1,749	1,803	109	438	27	112	50	85	48	85	4	44	1,008	15	5,777
	3.5	30.3	31.2	1.9	7.6	0.5	1.9	0.9	1.5	0.8	1.5	0.1	0.8	17.4	0.3	100

학대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가정 내에서는 70세 이상이 1,689명(36.8%)으로 가장 높았으며 생활시설은 50대가 334명(43.2%), 이용시설도 50대가 121명(5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병원에서는 40대(45명, 60.8%)의 학대행위자가, 공공장소에서는 70세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28명(45.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장소에서는 60대의 학대행위자가 24명(32.9%), 70대가 23명(31.5%)으로 유사하게 가장 많이 나타났다.

[표 4-26] 학대피해노인 학대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단위: 명, %)

구분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계
가정내	42	72	227	974	967	621	1,689	4,592
	0.9	1.6	4.9	21.2	21.1	13.5	36.8	100
생활시설	-	9	48	119	334	246	18	774
	-	1.2	6.2	15.4	43.2	31.8	2.3	100
이용시설	-	-	19	35	121	27	-	202
	-	-	9.4	17.3	59.9	13.4	-	100
병원	-	-	1	45	20	7	1	74
	-	-	1.4	60.8	27.0	9.5	1.4	100
공공장소	-	-	8	3	8	15	28	62
	-	-	12.9	4.8	12.9	24.2	45.2	100
기타	-	-	3	8	15	24	23	73
	-	-	4.1	11.0	20.5	32.9	31.5	100
계	42	81	306	1,184	1,465	940	1,759	5,777
	0.7	1.4	5.3	20.5	25.4	16.3	30.4	100

학대피해노인의 학대발생장소별 전체적인 학대행위자 유형을 살펴보면 가정 내의 경우 아들이 1,777명(38.7%), 배우자 1,729명(37.7%), 딸 424명(9.2%) 순이었으며, 아들과 배우자가 주 학대행위자로 나타났다.

생활시설의 경우 기타기관 관련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의료인 등의 기관에 의한 학대행위자가 771명(99.5%)이었고, 학대행위자의 대부분이 노인복지시설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장소의 주 학대행위자는 이웃으로, 18명(29.0%)이었으며, 기타의 경우 기타타인과 노인복지시설종사자가 동일하게 15명(20.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전체적인 학대행위자 유형은 아들-배우자-기관 순으로 나타나지만, 학대발생장소에 따라 학대행위자 유형도 달라짐을 의미한다.

[표 4-27] 학대피해노인 학대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유형

(단위: 건, %)

구분	가정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계
피해자 본인	192	-	-	-	6	2	200
	4.2	-	-	-	9.7	2.7	3.5
배우자	1,729	-	-	-	12	8	1,749
	37.7	-	-	-	19.4	11.0	30.3
아들	1,777	1	-	3	9	13	1,803
	38.7	0.1	-	4.1	14.5	17.8	31.2
며느리	109	-	-	-	-	-	109
	2.4	-	-	-	-	-	1.9
딸	424	1	1	1	6	5	438
	9.2	0.1	0.5	1.4	9.7	6.8	7.6
사위	27	-	-	-	-	-	27
	0.6	-	-	-	-	-	0.5
손자녀	111	-	-	-	-	1	112
	2.4	-	-	-	-	1.4	1.9
친척	48	-	-	-	-	2	50
	1.0	-	-	-	-	2.7	0.9
기타타인	56	1	-	3	10	15	85
	1.2	0.1	-	4.1	16.1	20.5	1.5
동거인	48	-	-	-	-	-	48
	1.0	-	-	-	-	-	0.8
이웃	55	-	1	-	18	11	85
	1.2	-	0.5	-	29.0	15.1	1.5
친구	4	-	-	-	-	-	4
	0.1	-	-	-	-	-	0.1
기타기관 종사자	1	18	8	15	1	1	44
	0.0	2.3	4.0	20.3	1.6	1.4	0.8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11	748	192	42	-	15	1,008
	0.2	96.6	95.0	56.8	-	20.5	17.4
의료인	-	5	-	10	-	-	15
	-	0.6	-	13.5	-	-	0.3
계	4,592	774	202	74	62	73	5,77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생활시설-딸: 학대행위자 중 딸이 포함되어 있으나 주학대행위자가 시설종사자이므로 시설학대로 분류함  
 생활시설-아들: 학대행위자 중 아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주학대행위자가 시설종사자이므로 시설학대로 분류함  
 생활시설-기타타인: 학대행위자 중 기타타인이 포함되어 있으나 주학대행위자가 시설종사자이므로 시설학대로 분류함  
 이용시설-딸: 학대행위자 중 딸이 포함되어 있으나 주학대행위자가 시설종사자이므로 시설학대로 분류함  
 이용시설-이웃: 학대행위자 중 딸이 포함되어 있으나 주학대행위자가 시설종사자이므로 시설학대로 분류함

#### 4) 학대행위자 결혼유형

학대행위자의 결혼여부 및 그 유형을 크게 배우자 있음과 배우자 없음으로 분류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배우자 있음은 초혼, 재혼, 사실혼으로, 배우자 없음은 미혼, 사별, 이혼, 별거, 가출로 다시 분류하였다. 학대행위자의 결혼여부를 살펴보면 배우자 있음은 3,591명(62.2%), 배우자 없음은 2,186명(37.8%)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초혼인 경우가 3,245명(56.2%)으로 가장 많았고, 미혼이 1,328명(23.0%)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이혼 592명(10.2%), 재혼 205명(3.5%), 사별 172명(3.0%)으로 나타났다.

[표 4-28] 학대행위자 결혼유형

(단위: 명, %)

구분		명수	비율
배우자 있음	초혼	3,245	56.2
	재혼	205	3.5
	사실혼	141	2.4
	소계	3,591	62.2
배우자 없음	미혼	1,328	23.0
	사별	172	3.0
	이혼	592	10.2
	별거	84	1.5
	가출	10	0.2
	소계	2,186	37.8
계		5,777	100

#### 5)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은 생활이 어려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계급여 등을 제공받는 것을 의미한다. 학대행위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544명(9.4%)으로 나타났다.

[표 4-29]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단위: 명, %)

전체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777	544
	9.4



학대행위자 연령대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학대행위자 544명 중 70대 이상이 173명(31.8%)로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140명(25.7%), 40대가 111명(20.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0] 학대행위자 연령대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단위: 명, %)

구 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0~19세	6
	1.1
20~29세	9
	1.7
30~39세	26
	4.8
40~49세	111
	20.4
50~59세	140
	25.7
60~69세	79
	14.5
70세 이상	173
	31.8
계	544
	100

## 6) 학대행위자 교육정도

학대행위자의 교육정도를 살펴보면 고졸이 2,181명(37.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대졸 이상이 1,351명으로 23.4%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초1~고1) 미이수에 해당하는 중졸 이하가 2,245명(38.9%)으로 나타났다.

[표 4-31] 학대행위자 교육정도

(단위: 명, %)

무 학	초 졸	중 졸	고 졸	전문대졸 이상	계
398	919	928	2,181	1,351	5,777
6.9	15.9	16.1	37.8	23.4	100

## 7)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학대행위자의 직업유형은 학대행위자의 주 수입원인 직업의 유무와 종류를 의미한다. 따라서 직업유형은 학대행위자의 생활수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학대피해노인의 경제적 부양부담과도 연결된다.

학대행위자의 직업유형은 무직이 3,385명(58.6%)으로 가장 높았고, 전문직이 650명(11.3%), 서비스·판매종사자가 627명(10.9%), 단순노무종사자가 425명(7.4%)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2]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단위: 명, %)

구분	명수	비율
무직	3,385	58.6
전문직	650	11.3
서비스·판매종사자	627	10.9
단순 노무 종사자	425	7.4
자영업자	212	3.7
농·어·축산업 종사자	152	2.6
사무종사자	128	2.2
기술공 및 준전문가	79	1.4
공무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51	0.9
기능업 및 관련기능종사자	28	0.5
종교인	21	0.4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19	0.3
총합계	5,777	100

## 8) 학대행위자 건강상태

### 가. 학대행위자 질병유형

학대행위자 중 장애를 가진 경우는 전체 5,777명 중 744명으로 12.9%에 해당된다. 장애유형은 크게 신체장애와 정신장애로 분류된다. 신체장애는 지체, 지적, 청각, 시각, 뇌병변, 간질, 신장, 언어, 자폐성, 심장, 장루요루, 호흡기, 안면장애 등이 해당된다. 정신장애로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정신분열, 우울장애, 정동장애가 해당된다.

학대행위자의 신체장애는 272명으로 전체 장애유형 중 36.6%에 해당되며, 정신장애는



472명으로 전체 장애유형 중 6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대행위자의 장애유형은 신체장애보다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특히 정신장애 중에서도 정신분열이 247명(33.2%)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울장애가 163명(21.9%)으로 그 뒤를 이었다.

[표 4-33] 학대행위자 장애유형

(단위: 건, %)

구 분		건 수	비 율
신체 장애	지체장애	88	11.8
	지적장애	57	7.7
	청각장애	40	5.4
	시각장애	31	4.2
	뇌병변장애	26	3.5
	간질장애	10	1.3
	신장장애	6	0.8
	언어장애	4	0.5
	자폐성장애	3	0.4
	심장장애	2	0.3
	장루요루장애	2	0.3
	호흡기장애	2	0.3
	안면장애	1	0.1
	소계	272	36.6
정신 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	31	4.2
	정신분열	247	33.2
	우울장애	163	21.9
	정동장애	31	4.2
	소계	472	63.4
계	744	100	

\* 중복

\*\* 학대 결과로서 장애 판정 유무는 확인이 어려우며, 장애인 등급판정을 받거나 현장조사 시 장애가 의심되는 대상자도 포함.

### 나. 학대행위자 중독유형

학대행위자의 중독 유형은 중독성을 지닌 항목의 중독여부와 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코올 사용 장애, 약물 사용 장애, 도박중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알코올 사용 장애는 알코올 중독 진단을 받았거나, 알코올 의존비율이 높은 경우를 의미하고, 약물 사용 장애도 마찬가지로 약물 중독 진단을 받았거나, 약물 의존비율이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전체 학대행위자 5,777명 중 974명(16.9%)이 중독 유형에 해당되었으며, 이 중 알코올 사용 장애가 925명(16.0%)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도박중독은 30명(0.5%), 약물 사용 장애 19명(0.3%)으로 나타났다.

[표 4-34] 학대행위자 중독유형

(단위: 명, %)

전체 학대행위자	도박중독	알코올 사용 장애	약물 사용 장애	계
5,777	30	925	19	974
	0.5	16.0	0.3	16.9

## 9) 학대행위자 제공서비스 현황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행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상담서비스, 복지서비스,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정보제공서비스 등으로 분류된다. 학대행위자 제공서비스는 처벌보단 상담·치료적 접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9년 학대행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총 29,729회로 나타났다. 특히 상담서비스의 경우 총 15,964회(53.7%)를 제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재학대 예방교육 및 기타 정보제공에 관한 정보제공서비스가 12,238회(41.2%)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사회복지서비스 연결 등의 복지서비스가 1,360회(4.6%), 의료서비스가 146회(0.5%), 법률서비스가 21회(0.1%)의 순으로 나타나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주로 상담서비스와 정보제공서비스임을 알 수 있다.



[표 4-35] 학대행위자 제공서비스 현황

(단위: 회, %)

구분		횟수	비율
상담서비스	가족상담	1,009	3.4
	관련자 상담	3,332	11.2
	심리 및 기타검사	125	0.4
	학대행위자 개별상담	11,387	38.3
	학대행위자 집단상담	111	0.4
	소계	15,964	53.7
복지서비스	국민기초 수급권 연결	20	0.1
	긴급복지지원연결	11	0.0
	가족지원서비스 연결	233	0.8
	재가 서비스 연결	8	0.0
	사회복지 서비스 연결	389	1.3
	기타자원 연결	377	1.3
	직접후원	322	1.1
	소계	1,360	4.6
법률서비스	법률상담 연결	19	0.1
	법률소송 지원	2	0.0
	소계	21	0.1
의료서비스	연계(이송)	26	0.1
	연계(의료기관서비스제공)	36	0.1
	연계(방문간호)	4	0.0
	지원(이송및동행)	69	0.2
	지원(의료비지급)	11	0.0
	소계	146	0.5
정보제공서비스	재학대예방교육	3,016	10.1
	정보제공	9,222	31.0
	소계	12,238	41.2
보호서비스	시설입소	-	-
	소계	-	-
계		29,729	100

### 3 노인학대 유형 및 특성

#### 1) 노인학대 유형 I (학대피해노인 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에 근거하여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등으로 분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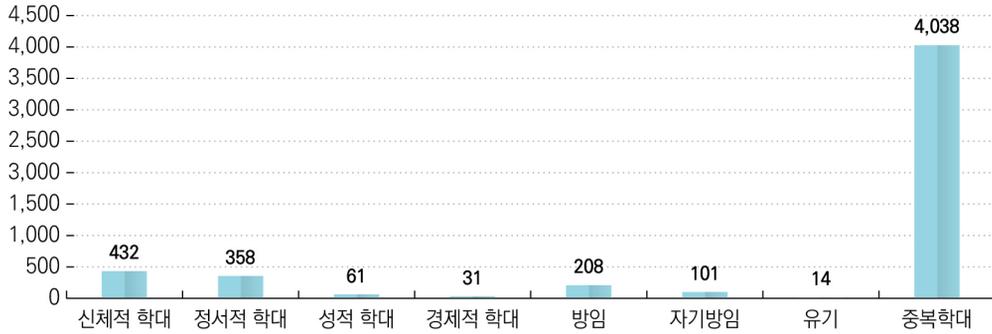
유형	정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경제적 학대 (착취)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 유형은 학대피해노인 수와 학대 유형 건수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먼저 학대피해노인 수를 기준으로 한 가지 학대 유형만 발생한 단일학대와 두 가지 이상의 학대 유형이 발생한 중복학대를 포함하여 분류한 분석결과를 보면, 전체 학대사례 5,243건 중 중복학대가 4,038건(77.0%)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학대가 다양한 유형으로 중복되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일학대 건수의 경우 신체적 학대 432건(8.2%), 정서적 학대 358건(6.8%), 방임 208건(4.0%), 자기방임 101건(1.9%) 순으로 나타나 전년도와 동일 양상을 보였다.

[표 4-36] 노인학대 유형 I (학대피해노인 수)

(단위: 건,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중복학대	계
432	358	61	31	208	101	14	4,038	5,243
8.2	6.8	1.2	0.6	4.0	1.9	0.3	77.0	100



[그림 4-6] 노인학대 유형 I (학대피해노인 수)

## 2) 노인학대 유형II(학대 유형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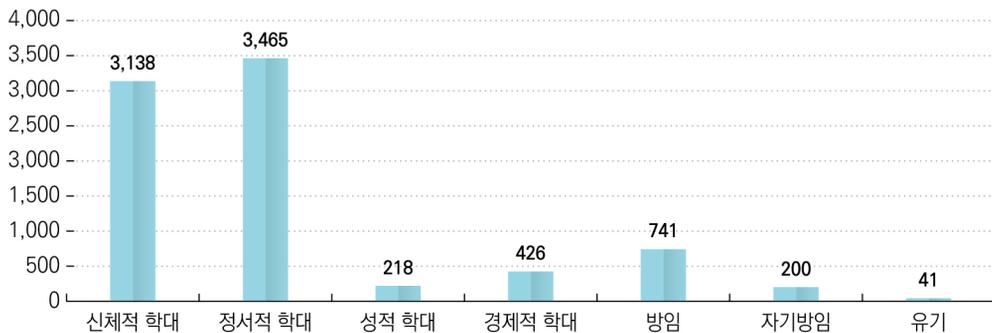
노인학대 유형II는 학대피해노인이 경험한 학대 유형을 기준으로 중복 집계하여 학대 유형을 분류한 것으로, 전체 노인학대사례의 노인학대 유형 건수는 8,229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정서적 학대가 3,465건(42.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 3,138건(38.1%), 방임 741건(9.0%)을 차지하였다. 이 세 유형의 학대건수는 전체 학대건수의 89.2%에 해당하는 수치로 노인학대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 경제적 학대 426건(5.2%), 성적 학대 218건(2.6%), 자기방임 200건(2.4%), 유기 41건(0.5%)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7] 노인학대 유형II(학대 유형 건수)

(단위: 건,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계
3,138	3,465	218	426	741	200	41	8,229
38.1	42.1	2.6	5.2	9.0	2.4	0.5	100

\* 중복



[그림 4-7] 노인학대 유형II(학대 유형 건수)

노인학대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의 경우 '노인을 위협·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가 2,852건으로 정서적 학대의 구체적 행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전체 노인학대 유형 건수 중 34.7%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정서적 학대행위는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였으며 277건(3.4%)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가 187건(2.3%), '노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언행을 한다'가 89건(1.1%), '노인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한다'가 31건(0.4%)으로 뒤를 이었다.

신체적 학대의 경우, '노인을 폭행한다'가 2,292건(27.9%)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가 635건(7.7%)으로 두 번째를 차지하였다. 이 외에 '노인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제한된 공간에 가둔다'가 91건(1.1%),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제한한다'가 86건(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방임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가 250건(3.0%)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방임 행위였으며, '노인의 일상생활 관련 보호 및 서비스를 방치한다'가 152건(1.8%)으로 두 번째를 차지하였다.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가 308건(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가 92건(1.1%)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자기방임의 경우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에 위협을 받는다'의 행위가 200건(2.4%)으로 나타났다.

성적 학대의 구체적 행위로는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가 159건(1.9%),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가 59건(0.7%)으로 나타났다.

유기는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가 41건(0.5%)으로 보고되었다.



[표 4-38] 노인학대 유형별 구체적 행위

(단위: 건, %)

구분	학대 유형별 구체적 행위	건 수	비율
신체적 학대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제한한다.	86	1.0
	노인을 폭행한다.	2,292	27.9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2	0.0
	노인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제한된 공간에 가둔다.	91	1.1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21	0.3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9	0.1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635	7.7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생명을 저해한다.	2	0.0
	소계	3,138	38.1
정서적 학대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 시킨다.	8	0.1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277	3.4
	노인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한다.	31	0.4
	노인을 무시하거나 기피한다.	14	0.2
	노인을 위협 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2,852	34.7
	노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언행을 한다.	89	1.1
	노인의 사생활과 입·퇴소와 관련한 의사결정권을 제한한다.	7	0.1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187	2.3
	소계	3,465	42.1
성적 학대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159	1.9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	59	0.7
	소계	218	2.6
경제적 학대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308	3.7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92	1.1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26	0.3
	소계	426	5.2
방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250	3.0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59	0.7
	노인에게 의료적 처치 및 보호를 소홀히 한다.	66	0.8
	노인을 부적절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방치한다.	110	1.3
	노인의 일상생활 관련 보호 및 서비스를 방치한다.	152	1.8
	의료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70	0.9
	학대사례를 방치하거나 신고하지 않는다.	34	0.4
	소계	741	9.0
자기 방임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에 위협을 받는다.	200	2.4
	소계	200	2.4
유기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41	0.5
	소계	41	0.5
	계	8,229	100

\*중복

### 3)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성별

학대피해노인 성별에 따른 전체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남성노인 1,897건(23.1%), 여성노인 6,332건(76.9%)으로 성별 간 큰 차이를 보였다. 학대유형 별로 보면 대부분의 학대 유형이 성별에 따른 전체 건수 비율과 비슷하였으나 성적 학대의 경우 여성노인(174건, 79.8%)이 남성노인(44건, 20.2%)에 비해 발생 건수가 약 4.0배 정도 많았다. 다른 학대유형과 달리 자기방임과 유기는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학대 발생 비율이 비교적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4-39]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성별

(단위: 건, %)

구분	남성	여성	계
신체적 학대	637	2,501	3,138
	20.3	79.7	100
정서적 학대	728	2,737	3,465
	21.0	79.0	100
성적 학대	44	174	218
	20.2	79.8	100
경제적 학대	125	301	426
	29.3	70.7	100
방임	245	496	741
	33.1	66.9	100
자기방임	99	101	200
	49.5	50.5	100
유기	19	22	41
	46.3	53.7	100
계	1,897	6,332	8,229
	23.1	76.9	100

\* 중복

### 4)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연령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의 연령을 살펴보면 70대 및 80대가 6,261건(76.1%)으로 많았으며, 세부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학대는 70대에서, 방임과 성적학대는 80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방임과 유기의 경우 70대와 80대 모두 비슷한 비율로 발생하였다.



[표 4-40]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연령

(단위: 건, %)

구 분	65~ 69세	70~ 74세	75~ 79세	80~ 84세	85~ 89세	90~ 94세	95~ 99세	100세 이상	계
신체적 학대	629	801	744	567	262	110	22	3	3,138
	20.0	25.5	23.7	18.1	8.3	3.5	0.7	0.1	100
정서적 학대	682	895	818	625	298	120	25	2	3,465
	19.7	25.8	23.6	18.0	8.6	3.5	0.7	0.1	100
성적 학대	16	23	32	48	63	28	7	1	218
	7.3	10.6	14.7	22.0	28.9	12.8	3.2	0.5	100
경제적 학대	46	87	86	102	66	29	9	1	426
	10.8	20.4	20.2	23.9	15.5	6.8	2.1	0.2	100
방 입	43	76	120	195	172	102	27	6	741
	5.8	10.3	16.2	26.3	23.2	13.8	3.6	0.8	100
자기방임	31	39	36	54	24	14	2	-	200
	15.5	19.5	18.0	27.0	12.0	7.0	1.0	-	100
유 기	7	5	8	10	5	6	-	-	41
	17.1	12.2	19.5	24.4	12.2	14.6	-	-	100
계	1,454	1,926	1,844	1,601	890	409	92	13	8,229
	17.7	23.4	22.4	19.5	10.8	5.0	1.1	0.2	100

## 5)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의 관계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는 배우자 - 아들 - 기관이었고, 정서적 학대는 배우자 - 아들 - 딸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방입의 경우 기관 - 아들 - 딸 순이었다. 신체적·정서적 학대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에 의한 학대가 주를 이루었으며 방입의 경우는 주로 자녀 혹은 노인복지시설 등의 기관에 의해 발생하였다.

경제적 학대의 경우 아들 - 기관 - 배우자 순으로 발생하였고, 성적 학대의 경우 기관 - 배우자 - 타인, 유기의 경우 아들, 딸에 의한 학대가 38건(92.6%)으로 주로 자녀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41]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단위: 건, %)

구 분	피해자 본인	친족							타인	기관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신체적 학대	-	1,353	1,107	51	201	14	78	27	103	204	3,138
	-	43.1	35.3	1.6	6.4	0.4	2.5	0.9	3.3	6.5	100
정서적 학대	1	1,405	1,299	73	262	21	82	32	140	150	3,465
	0.0	40.5	37.5	2.1	7.6	0.6	2.4	0.9	4.0	4.3	100
성적 학대	1	36	2	-	-	1	-	1	26	151	218
	0.5	16.5	0.9	-	-	0.5	-	0.5	11.9	69.3	100
경제적 학대	1	49	178	13	47	1	19	12	35	71	426
	0.2	11.5	41.8	3.1	11.0	0.2	4.5	2.8	8.2	16.7	100
방임	1	41	197	17	79	1	5	7	11	374	733
	0.1	5.6	26.9	2.3	10.8	0.1	0.7	1.0	1.5	51.0	100
자기방임	177	4	12	-	3	-	-	1	3	-	200
	88.5	2.0	6.0	-	1.5	-	-	0.5	1.5	-	100
유기	1	1	24	-	14	-	-	1	-	-	41
	2.4	2.4	58.5	-	34.1	-	-	2.4	-	-	100
계	190	2,889	2,819	154	606	38	184	81	318	950	8,229
	2.3	35.1	34.3	1.9	7.4	0.5	2.2	1.0	3.9	11.5	100

## 6)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를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1,245건, 39.7%), 정서적 학대(1,296건, 37.4%)는 노인부부가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반면 방임(278건, 37.5%)과 자기방임(157건, 78.5%) 및 유기(19건, 46.3%)는 노인단독가구에서, 성적 학대는 기타(135건, 61.9%)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대피해노인의 가구형태에 따라 학대유형 또한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42]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계
노인 단독	326	496	39	113	278	157	19	1,428
	10.4	14.3	17.9	26.5	37.5	78.5	46.3	17.4
노인 부부	1,245	1,296	31	68	72	17	3	2,732
	39.7	37.4	14.2	16.0	9.7	8.5	7.3	33.2
손자녀 동거	1,090	1,242	9	132	133	14	5	2,625
	34.7	35.8	4.1	31.0	17.9	7.0	12.2	31.9
자녀·손자녀동거	128	142	3	21	10	3	-	307
	4.1	4.1	1.4	4.9	1.3	1.5	-	3.7
자녀 동거	125	158	1	13	16	2	-	315
	4.0	4.6	0.5	3.1	2.2	1.0	-	3.8
기타	224	131	135	79	232	7	14	822
	7.1	3.8	61.9	18.5	31.3	3.5	34.1	10.0
계	3,138	3,465	218	426	741	200	41	8,229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7) 학대발생장소

노인학대의 유형을 학대발생 공간에 따라 분류하면 가정 내, 생활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용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병원(요양병원, 일반병원), 공공장소, 기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정 내 학대는 학대피해노인과 동일 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한 학대를 말한다. 생활시설 학대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등의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학대를 말하고 이용시설 학대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및 노인교실 등 노인여가복지시설과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및 기타 재가서비스 등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학대를 말한다.

2019년 접수된 노인학대사례의 학대발생장소를 살펴보면, 가정 내에서 발생한 학대건수는 4,450건으로 총 학대건수 5,243건 중 84.9%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생활시설의 경우 총 486건(9.2%)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이 432건(8.2%), 노인주거복지시설이

54건(1.0%)을 차지하였다. 이용시설의 경우 총 131건(2.5%)의 노인학대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재가노인복지시설이 128건(2.4%), 노인여가복지시설이 3건(0.3%)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기타가 71건(1.4%), 공공장소가 60건(1.1%), 병원이 45건(0.9%)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3] 학대발생장소

(단위: 건, %)

가정 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계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요양 병원	일반 병원			
4,450	432	54	3	128	41	4	60	71	5,243
84.9	8.2	1.0	0.1	2.4	0.8	0.1	1.1	1.4	100



[그림 4-8] 학대발생장소

학대발생장소별 노인학대 유형은 학대가 발생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어떠한 노인학대 유형이 발생하는지를 파악한 것이다. 가정 내에서는 정서적 학대 - 신체적 학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6,131건(86.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생활시설에서는 방임 - 신체적 학대 - 정서적 학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시설은 방임 - 정서적 학대 - 신체적 학대 순으로 시설 내에서는 방임이 주로 발생하였다. 병원은 신체적 학대 - 성적학대 - 방임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공장소는 정서적 학대 - 신체적 학대 순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64건(78.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학대발생 장소에 따라 학대유형 또한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44] 학대발생장소별에 따른 학대유형

(단위: 건, %)

구 분	가정 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 장소	기타	계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요양 병원	일반 병원			
신체적 학대	2,881	24	126	1	12	27	2	25	40	3,138
	40.4	32.4	21.2	33.3	6.7	45.0	40.0	30.5	38.1	38.1
정서적 학대	3,250	11	61	1	63	7	2	39	31	3,465
	45.6	14.9	10.3	33.3	35.0	11.7	40.0	47.6	29.5	42.1
성적 학대	65	8	124	-	1	17	-	-	3	218
	0.9	10.8	20.8	-	0.6	28.3	-	-	2.9	2.6
경제적 학대	351	-	67	-	1	-	-	2	5	426
	4.9	-	11.3	-	0.6	-	-	2.4	4.8	5.2
방임	351	31	217	1	103	9	1	7	21	741
	4.9	41.9	36.5	33.3	57.2	15.0	20.0	8.5	20.0	9.0
자기 방임	192	-	-	-	-	-	-	6	2	200
	2.7	-	-	-	-	-	-	7.3	1.9	2.4
유기	35	-	-	-	-	-	-	3	3	41
	0.5	-	-	-	-	-	-	3.7	2.9	0.5
계	7,125	74	595	3	180	60	5	82	105	8,229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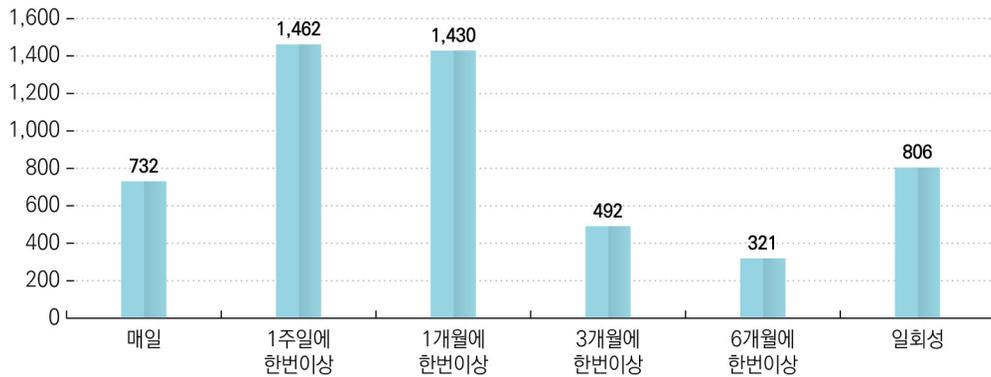
## 8) 학대발생빈도

전체 노인학대사례 중 학대발생빈도 현황을 살펴보면, 1주일에 한번 이상 학대가 발생한 경우가 1,462건(27.9%), 1개월에 한번 이상 학대가 발생한 경우는 1,430건(27.3%)으로 유사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뒤를 이어 일회성인 경우가 806건(15.4%)이었으며, 매일 학대를 당한다는 응답이 732건(14.0%), 3개월에 한번 이상이 492건(9.4%), 6개월에 한번 이상이 321건(6.1%)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노인학대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함을 의미한다.

[표 4-45] 학대발생빈도

(단위: 건, %)

매일	1주일에 한번 이상	1개월에 한번 이상	3개월에 한번 이상	6개월에 한번 이상	일회성	계
732	1,462	1,430	492	321	806	5,243
14.0	27.9	27.3	9.4	6.1	15.4	100



[그림 4-9] 학대발생빈도

학대발생빈도별 노인학대 유형은 학대가 발생하는 빈도를 기준으로 어떠한 노인학대 유형이 발생하는지를 파악한 것이다. 노인학대 유형을 중복 집계하여 발생빈도를 살펴본 결과, 1주일에 한번 이상인 경우가 2,410건(29.3%)으로 가장 많았다.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 1,148건(47.6%), 신체적 학대 918건(38.1%), 방임 145건(6.0%)으로 나타났다. 1개월에 한번 이상의 경우도 정서적 학대 - 신체적 학대 - 방임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6개월에 한번 이상 혹은 일회성의 경우 신체적 학대 - 정서적 학대 - 방임 학대의 순으로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양상을 보였다.

[표 4-46] 학대발생빈도별 노인학대 유형

(단위: 건, %)

구 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유기	계
매일	240	263	101	113	273	109	26	1,125
	21.3	23.4	9.0	10.0	24.3	9.7	2.3	100
1주일에 한번 이상	918	1,148	43	117	145	38	1	2,410
	38.1	47.6	1.8	4.9	6.0	1.6	0.0	100



구 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유기	계
1개월에 한번 이상	939	1,134	32	113	126	27	4	2,375
	39.5	47.7	1.3	4.8	5.3	1.1	0.2	100
3개월에 한번 이상	346	372	10	34	17	10	3	792
	43.7	47.0	1.3	4.3	2.1	1.3	0.4	100
6개월에 한번 이상	240	223	1	15	19	6	-	504
	47.6	44.2	0.2	3.0	3.8	1.2	-	100
일회성	455	325	31	34	161	10	7	1,023
	44.5	31.8	3.0	3.3	15.7	1.0	0.7	100
계	3,138	3,465	218	426	741	200	41	8,229
	38.1	42.1	2.6	5.2	9.0	2.4	0.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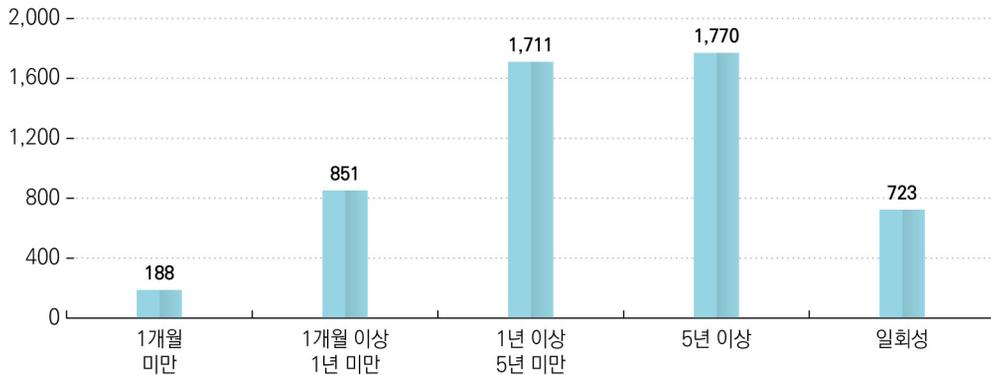
### 9) 학대지속기간

학대지속기간은 최초 학대가 발생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지속기간을 의미하며 [표 4-47]와 같이 분류된다. 전체 학대사례 중 5년 이상이 1,770건(33.8%)이 가장 높았고, 1년 이상 5년 미만이 1,711건(32.6%)로 그 뒤를 이었다.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851건(16.2%), 일회성은 723건(13.8%), 1개월 미만은 188건(3.6%)으로 나타났다. 학대지속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 되는 경우는 전체의 66.4%로 매우 높은 비율로 학대피해노인이 장기간 학대에 노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1개월 미만 및 일회성은 전체의 1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7] 학대지속기간

(단위: 건, %)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일회성	계
188	851	1,711	1,770	723	5,243
3.6	16.2	32.6	33.8	13.8	100



[그림 4-10] 학대지속기간

## 10) 학대발생원인(학대행위자 원인)

학대발생원인은 크게 학대행위자 원인과 가족-환경 원인, 피해자 원인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학대행위자 원인이란 노인학대 발생원인 중 학대행위자 측면에서의 발생원인을 의미한다. 학대행위자 원인으로는 개인의 내·외적 문제, 경제적 의존성, 과거 학대 받은 경험, 신체적 의존성, 알코올 및 약물 사용 장애, 정신적 의존성, 피해자 부양부담 등이 해당된다.

각각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의 내적인 문제는 성격문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노, 고집스런 성격, 자신감 결여, 지나친 경계, 사회적 반응의 결핍, 적대적 행위, 충동적 성격, 폭력적 성격, 사회적 고립, 정서적 욕구불만 등이 포함된다. 개인의 외적 문제는 학대행위자의 이혼, 재혼, 부부갈등, 스트레스(부양부담 스트레스 외) 실직 등이 해당된다. 경제적 의존성으로는 학대행위자가 고정적인 수입이 없거나 소득이 낮아 학대피해노인에게 금전적인 부분에 의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학대받은 경험은 과거 학대행위자가 아동이었을 때 부모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한 것을 의미하며, 신체적 의존성은 학대행위자의 신체적 질환, 장애 등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학대피해노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알코올 및 약물 사용 장애는 알코올 및 약물의 중독이나 의존하는 것을 말하며 정신적 의존성은 학대행위자의 정신적 문제로 인해 학대피해노인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예로는 정신질환 및 우울증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학대피해노인 부양부담은 학대피해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의무감 및 책임감으로 인한 정신적 또는 경제적인 부담감을 의미한다.

학대행위자 원인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9,300건 중 개인의 내적문제가 3,260건(35.1%), 개인의 외적문제가 1,594건(17.1%)으로 나타나 학대행위자 개인의 내적·외적 특성으로 인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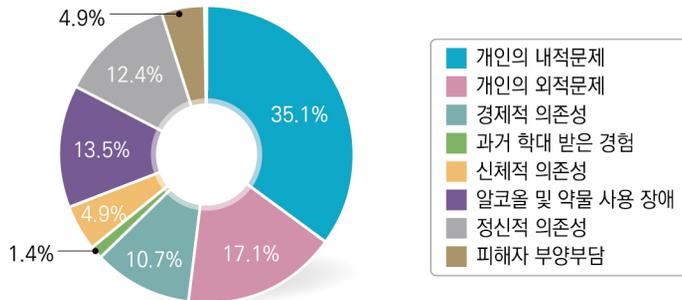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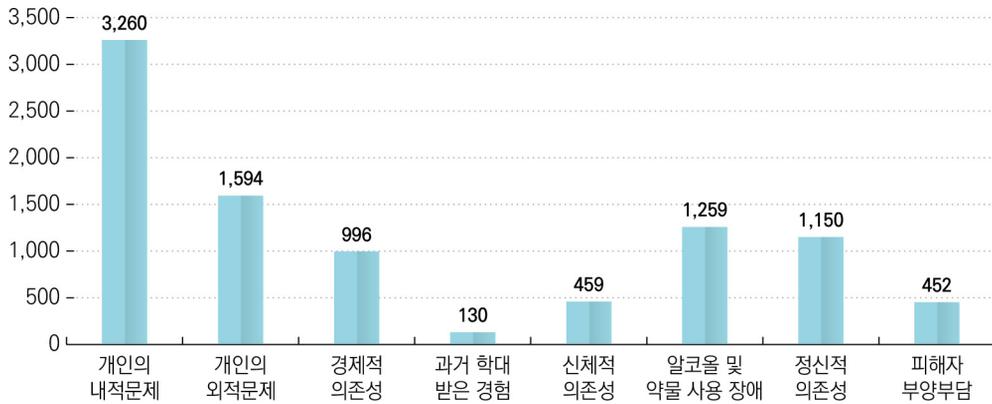


원인이 52.2%로 과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알코올 및 약물 사용장애가 1,259건(13.5%), 정신적 의존성 1,150건(12.4%)으로 나타났다.

[표 4-48] 학대행위자 원인

(단위: 건, %)

학대행위자 원인	건 수	비 율
개인의 내적문제	3,260	35.1
개인의 외적문제	1,594	17.1
경제적 의존성	996	10.7
과거 학대 받은 경험	130	1.4
신체적 의존성	459	4.9
알코올 및 약물 사용 장애	1,259	13.5
정신적 의존성	1,150	12.4
피해자 부양부담	452	4.9
계	9,300	100



[그림 4-11] 학대행위자 원인 건수 및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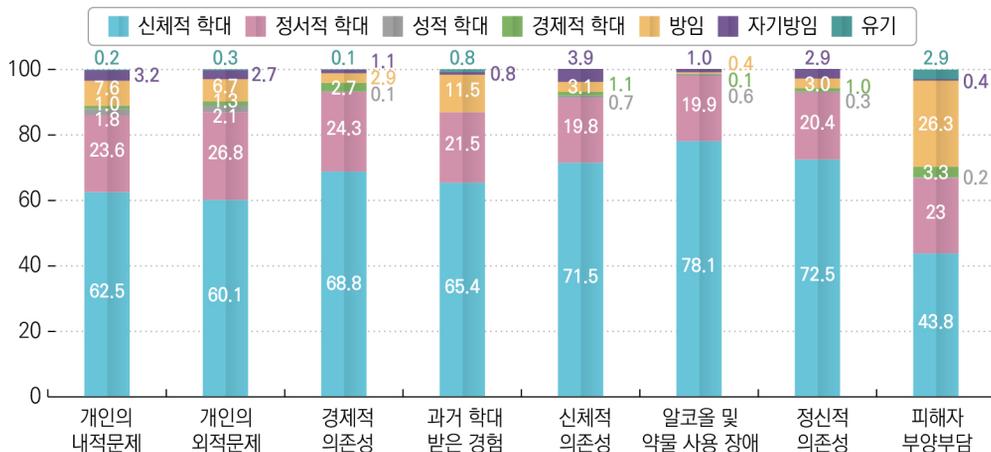
학대행위자 원인별 노인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모든 원인에서 신체적, 정서적 학대 유형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만 방임의 경우, 피해자 부양부담이 26.3%로 나타나 다른 학대발생원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4-49] 학대행위자 원인별 노인학대 유형

(단위: 건, %)

학대발생원인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 임	자기방임	유 기	계
개인의 내적문제	2,037	770	59	32	249	105	8	3,260
	62.5	23.6	1.8	1.0	7.6	3.2	0.2	100
개인의 외적문제	958	427	34	21	107	43	4	1,594
	60.1	26.8	2.1	1.3	6.7	2.7	0.3	100
경제적 의존성	685	242	1	27	29	11	1	996
	68.8	24.3	0.1	2.7	2.9	1.1	0.1	100
과거 학대 받은 경험	85	28	-	-	15	1	1	130
	65.4	21.5	-	-	11.5	0.8	0.8	100
신체적 의존성	328	91	3	5	14	18	-	459
	71.5	19.8	0.7	1.1	3.1	3.9	-	100
알코올 및 약물 사용장애	983	251	7	1	5	12	-	1,259
	78.1	19.9	0.6	0.1	0.4	1.0	-	100
정신적 의존성	834	235	3	11	34	33	-	1,150
	72.5	20.4	0.3	1.0	3.0	2.9	-	100
피해자 부양부담	198	104	1	15	119	2	-	452
	43.8	23.0	0.2	3.3	26.3	0.4	2.9	100
계	6,108	2,148	108	112	572	225	27	9,300
	65.7	23.1	1.2	1.2	6.2	2.4	0.3	100



[그림 4-12] 학대행위자 원인별 노인학대 주요유형

### 11) 학대발생원인(가족 - 환경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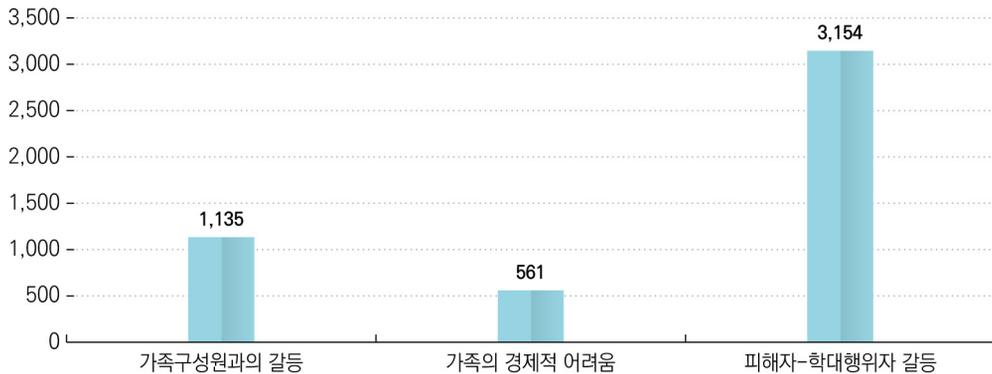
가족 - 환경적 측면에서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학대피해노인 - 학대행위자 갈등, 가족구성원간의 갈등(자녀 간, 형제 간, 친족 간),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등이 해당된다. 학대피해노인 - 학대행위자 갈등은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의미하며, 가족구성원간의 갈등은 부모 부양문제, 재산문제 등으로 학대피해노인 자녀 간, 형제 간, 친족 간의 갈등 등 여러 사람 간 갈등을 의미한다.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학대피해노인의 부양문제로 인한 부양가족들의 경제적 어움을 의미한다.

가족 - 환경 원인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학대발생 4,850건 중 피해자 - 학대행위자 갈등이 3,154건(65.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가족구성원과의 갈등이 1,135건(23.4%)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가족 내 갈등이 학대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561건(11.6%)으로 나타났다.

[표 4-50] 가족 - 환경 원인

(단위: 건, %)

가족구성원과의 갈등 (자녀간, 형제간, 친족간)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피해자-학대행위자 갈등	계
1,135	561	3,154	4,850
23.4	11.6	65.0	100



[그림 4-13] 가족 - 환경 원인



2019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 제5장 특성별 노인학대 사례 분석 결과

1. 경제적학대 현황
2.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학대현황
3. 시설학대 현황
4. 재학대 현황







# 제5장

## 특성별 노인학대 사례 분석 결과

### 1 경제적학대 현황

#### 1) 지역 및 기관별 경제적학대 현황

경제적 학대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2019년 전체 학대유형 건수 8,229건 중 경제적 학대는 426건(5.2%)으로 나타났으며, 기관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북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17.6%,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8.2%,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 7.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1] 지역 및 기관별 경제적학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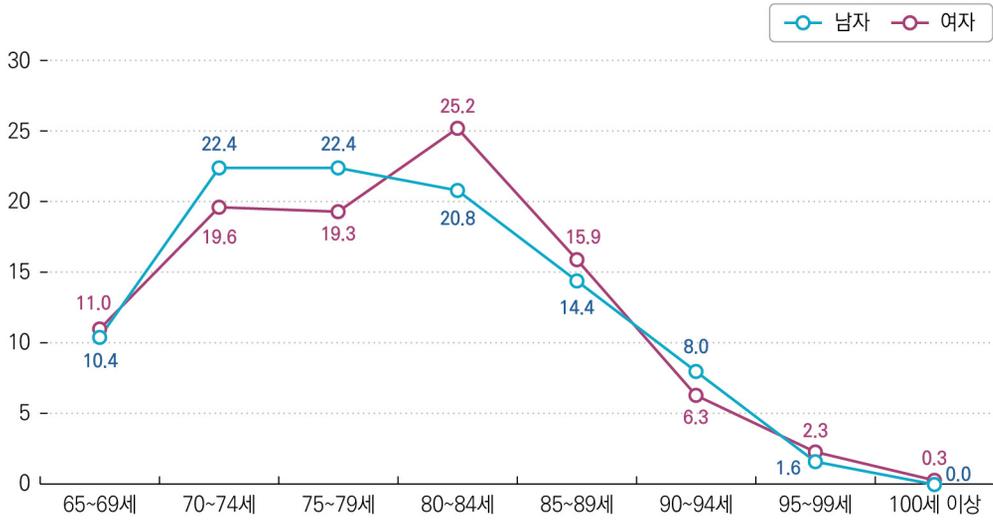
(단위: 건, %)

지역	기관명	경제적학대		전체 학대유형 건수
		건수	비율	
서울	서울남부	14	3.3	356
	서울북부	20	4.7	298
	서울서부	3	0.7	305
	소계	37	8.7	959
부산	부산동부	12	2.8	333
	부산서부	20	4.7	276
	소계	32	7.5	609
대구	대구남부	21	4.9	193
	대구북부	3	0.7	194
	소계	24	5.6	387
인천	인천	31	7.3	526
	인천서부	2	0.5	21
	소계	33	7.7	547



지 역	기관명	경제적학대		전체 학대유형 건수
		건 수	비 율	
	광주	7	1.6	299
	대전	9	2.1	170
	울산	10	2.3	165
경기	경기도	1	0.2	142
	경기남부	-	-	319
	경기북부	13	3.1	433
	경기서부	12	2.8	420
	소계	26	6.1	1,314
강원	강원	3	0.7	231
	강원동부	8	1.9	183
	강원남부	9	2.1	183
	소계	20	4.7	597
충북	충북	5	1.2	192
	충북북부	6	1.4	114
	소계	11	2.6	306
충남	충남	15	3.5	259
	충남남부	8	1.9	155
	소계	23	5.4	414
전북	전북	15	3.5	256
	전북서부	12	2.8	178
	소계	27	6.3	434
전남	전남동부	1	0.2	229
	전남서부	14	3.3	243
	소계	15	3.5	472
경북	경북	15	3.5	254
	경북서북부	75	17.6	337
	경북서남부	10	2.3	203
	소계	100	23.5	794
경남	경남	35	8.2	385
	경남서부	5	1.2	144
	소계	40	9.4	529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4	0.9	170
	제주도서귀포시	8	1.9	63
	소계	12	2.8	233
계		426	100	8,229





[그림 5-2] 경제적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 3) 경제적학대 학대행위자 유형

경제적 학대 행위자 유형을 살펴보면, 경제적 학대 유형 총 426건 중 아들이 178건(41.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관\*이 71건(16.7%), 배우자 49건(11.5%), 딸 47건(11.0%)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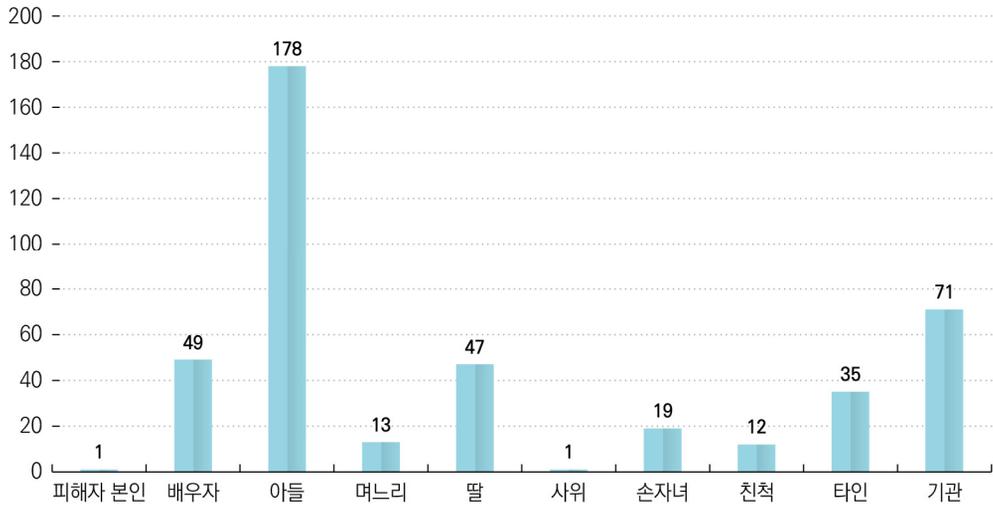
학대피해노인의 전체 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아들-배우자-기관”으로 경제적 학대행위자 유형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경제적 학대의 경우 학대행위자가 주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인 “기관”에서 더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3] 경제적학대 행위자 유형

(단위: 건, %)

피해자 본인	친 족								타인	기관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소계			
1	49	178	13	47	1	19	12	319	35	71	426
0.2	11.5	41.8	3.1	11.0	0.2	4.5	2.8	74.9	8.2	16.7	100.0

\* 기관: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기타 관련기관 종사자



[그림 5-3] 경제적학대 행위자 유형

#### 4) 경제적학대 학대행위자 연령대

경제적 학대 행위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40~49세 이하가 171명(28.1%)으로 가장 높고, 50~59세 이하 163명(26.8%), 60~69세 이하 146명(24.0%)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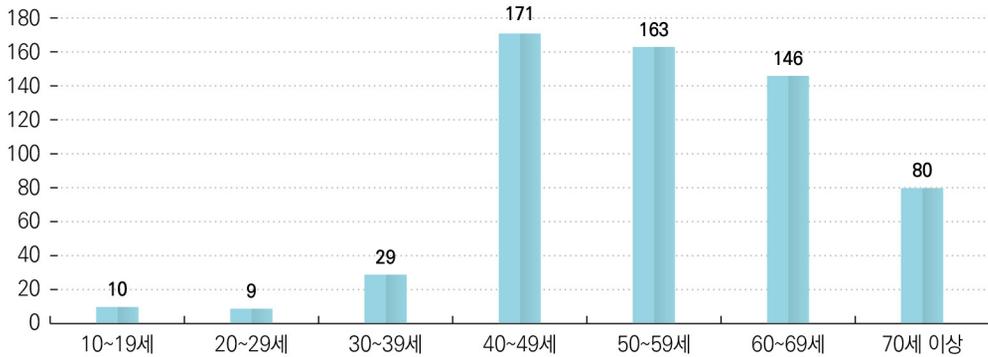
주로 40대, 50대, 60대에서 경제적 학대 행위자의 연령대가 분포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전체 학대피해노인의 학대유형과 비교하여 보면 40~49세 20.5%, 50~59세 25.4%, 60~69세 16.3%, 70세 이상 30.4%로 전체 학대피해노인의 경우 70세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4] 경제적학대 행위자 연령대

(단위: 명, %)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계
10	9	29	171	163	146	80	608
1.6	1.5	4.8	28.1	26.8	24.0	13.2	100.0

\* 중복



[그림 5-4] 경제적학대 행위자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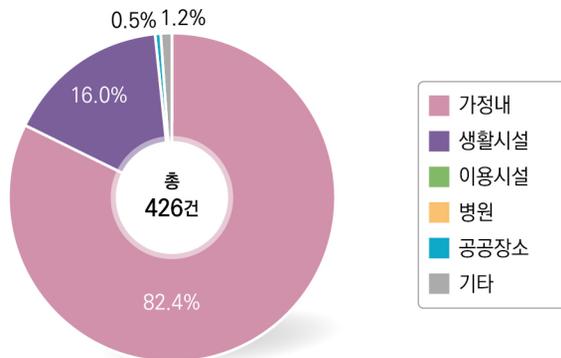
### 5) 경제적학대 학대발생장소

경제적 학대 유형의 학대 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가정내가 351건(82.4%)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는 생활시설이 68건(16.0%)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 학대유형 8,229건 중 학대발생 장소와 비교해 보면 가정내가 89.6%, 생활시설이 8.1%의 순으로 생활시설의 경우 약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 할 수있다. 이는 생활시설의 경우 경제적 학대가 더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5] 경제적학대 학대발생장소

(단위: 건, %)

가정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계
351	68	-	-	2	5	426
82.4	16.0	-	-	0.5	1.2	100.0



[그림 5-5] 경제적학대 학대발생장소

## 6) 경제적학대 학대발생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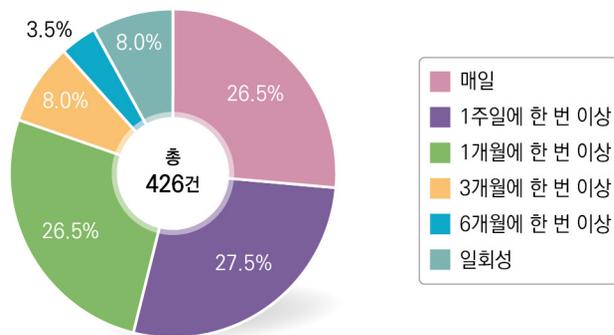
경제적 학대 발생 빈도를 보면 1주일에 한번 이상이 117건(27.5%), 매일 과 1개월에 한번 이상이 각각 113건(26.5%)으로 약 80.5%가 한 달 이내에 비교적 짧은 시간내에 경제적 학대 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를 전체 학대피해노인의 발생빈도와 비교하여 보면, 전체 학대피해노인의 경우 1주일에 한번이상 27.9%, 1달에 한번이상 27.3%, 일회성이 15.4%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학대의 발생빈도의 경우 1주일에 한번 이상, 매일, 1주일에 한번 이상이 각각 26.5%~27.5%로 경제적 학대 유형의 학대 발생 빈도가 더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6] 경제적학대 학대발생빈도

(단위: 명, %)

매일	1주일에 한번 이상	1개월에 한번 이상	3개월에 한번 이상	6개월에 한번 이상	일회성	계
113	117	113	34	15	34	426
26.5	27.5	26.5	8.0	3.5	8.0	100.0



[그림 5-6] 경제적학대 학대발생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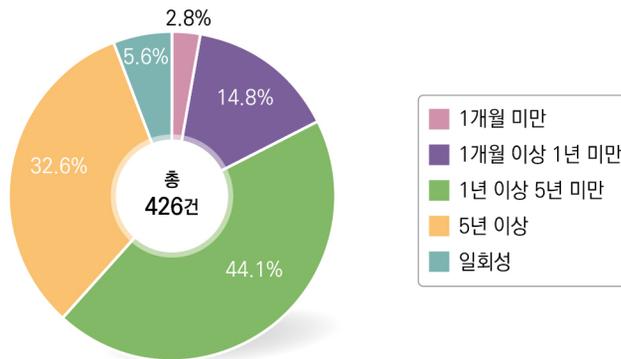
### 7) 경제적학대 학대지속기간

경제적 학대의 지속시간을 살펴보면 1년 이상 5년 미만이 188건(44.1%), 5년이상이 139건(32.6%)으로 장기간 동안 경제적학대가 지속되어 온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전체 학대피해노인의 학대 지속기간과 비교하여 보면 1년 이상 5년 미만이 32.6%로 경제적 학대 지속기간 보다 11.5% 낮게 나타났다.

[표 5-7] 경제적학대 학대지속기간

(단위: 건, %)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일회성	계
12	63	188	139	24	426
2.8	14.8	44.1	32.6	5.6	100.0



[그림 5-7] 경제적학대 학대지속기간

### 8) 경제적학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경제적 학대 피해노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경제적 학대 426건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25건(29.3%)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학대피해노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5.4%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경제적 학대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8] 경제적학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단위: 명, %)

경제적학대 현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26	125
	29.3

## 2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학대현황

### 1)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현황

학대피해노인의 치매정도는 병원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경우와 병원진단 없이 상담원이 임의로 간이정신상태검사지표나 학대피해노인의 상황에 따라 치매로 의심하는 치매의심으로 분류한다.

2019년 한해동안 치매노인 현황을 살펴 보면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가 의심되거나 치매로 진단받은 사례는 총 1,381건으로 전체 학대사례의 26.3%로 집계되었다.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별로 살펴보면, 각 기관에서 학대사례로 판정된 사례중에서 치매노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강원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59.6%, 경북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54.9%, 대전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 51.2%으로 나타났다.

반면 치매노인 비율이 낮은 기관은 인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11.8%, 전남노인보호전문기관이 11.9%, 부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대구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12.1%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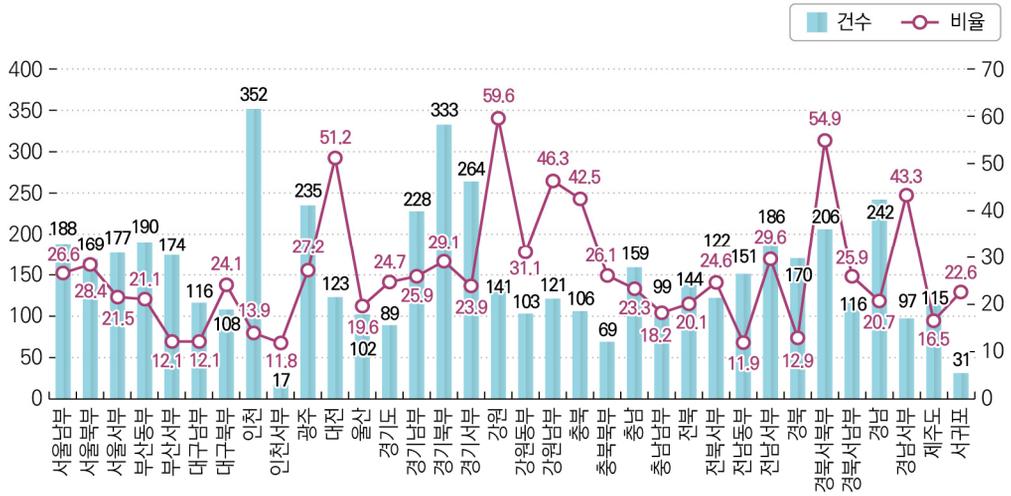
[표 5-9]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현황

(단위: 건, %)

지역	기관명	치매노인학대 현황				전체 학대사례 건수
		치매의증	치매진단	총합계	비율	
서울	서울남부	26	24	50	26.6	188
	서울북부	27	21	48	28.4	169
	서울서부	23	15	38	21.5	177
	소계	76	60	136	25.5	534
부산	부산동부	13	27	40	21.1	190
	부산서부	15	6	21	12.1	174
	소계	28	33	61	16.8	364
대구	대구남부	8	6	14	12.1	116
	대구북부	12	14	26	24.1	108
	소계	20	20	40	17.9	224
인천	인천	25	24	49	13.9	352
	인천서부	2	-	2	11.8	17
	소계	27	24	51	13.8	369
광주		32	32	64	27.2	235
대전		10	53	63	51.2	123
울산		10	10	20	19.6	102



지역	기관명	치매노인학대 현황				전체 학대사례 건수
		치매의증	치매진단	총합계	비율	
경기	경기도	14	8	22	24.7	89
	경기남부	24	35	59	25.9	228
	경기북부	38	59	97	29.1	333
	경기서부	43	20	63	23.9	264
	소계	119	122	241	26.4	914
강원	강원	20	64	84	59.6	141
	강원동부	7	25	32	31.1	103
	강원남부	15	41	56	46.3	121
	소계	42	130	172	47.1	365
충북	충북	7	38	45	42.5	106
	충북북부	5	13	18	26.1	69
	소계	12	51	63	36.0	175
충남	충남	18	19	37	23.3	159
	충남남부	10	8	18	18.2	99
	소계	28	27	55	21.3	258
전북	전북	11	18	29	20.1	144
	전북서부	15	15	30	24.6	122
	소계	26	33	59	22.2	266
전남	전남동부	6	12	18	11.9	151
	전남서부	9	46	55	29.6	186
	소계	15	58	73	21.7	337
경북	경북	8	14	22	12.9	170
	경북서북부	44	69	113	54.9	206
	경북서남부	13	17	30	25.9	116
	소계	65	100	165	33.5	492
경남	경남	23	27	50	20.7	242
	경남서부	5	37	42	43.3	97
	소계	28	64	92	27.1	339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9	10	19	16.5	115
	제주도서귀포시	3	4	7	22.6	31
	소계	12	14	26	17.8	146
계		550	831	1,381	26.3	5,243



[그림 5-8]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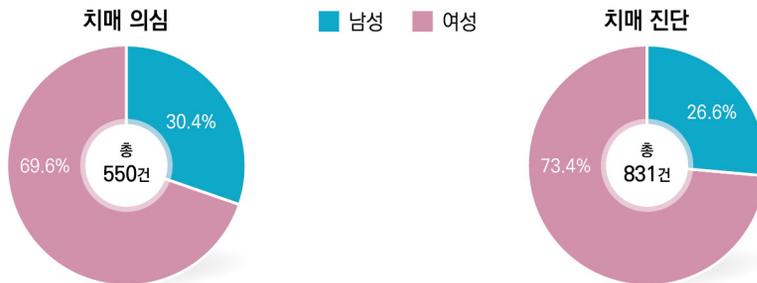
## 2)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성별 및 연령대

2019년 전체 노인학대 5,243건 중 치매노인은 1,381명으로 26.3%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여성은 993명(71.9%)이고, 남성은 388명(28.1%)으로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5-10]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성별

(단위: 명, %)

전체학대사례	치매의심(치매가 의심됨)	치매진단(치매로 진단받음)	계
남성	167	221	388
	30.4	26.6	28.1
여성	383	610	993
	69.6	73.4	71.9
계	550	831	1,381
	100	100	100



[그림 5-9]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성별

성별에 이어 치매노인을 연령대로 구분해 보면, 80대가 662명(4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70대가 419명(30.3%)으로 두 번째로 높다. 치매노인의 연령대를 전기노인(65세-74세)과 후기노인(75세 이상)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전기노인은 253명(18.3%)이고 후기노인은 1,128명(81.7%)로 나타나 치매노인 중 후기노인의 학대피해노인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11]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연령대

(단위: 명, %)

성별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94세	95~99세	100세 이상	계
치매의심 (치매가 의심됨)	51	92	108	144	96	48	8	3	550
	9.3	16.7	19.6	26.2	17.5	8.7	1.5	0.5	100.0
치매진단 (치매로 진단받음)	35	75	144	217	205	116	36	3	831
	4.2	9.0	17.3	26.1	24.7	14.0	4.3	0.4	100.0
계	86	167	252	361	301	164	44	6	1,381
	6.2	12.1	18.2	26.1	21.8	11.9	3.2	0.4	100.0



[그림 5-10]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연령대

### 3)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학대행위자 유형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의 학대행위자 유형을 보면, 기관 898건(50.0%)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친족 767건(42.7%)순으로 나타났다. 친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들 375건(20.9%)으로 가장 높고, 배우자 183건(10.2%), 딸 141건(7.9%) 순이다. 즉, 학대행위자 중 친족의 경우 아들 - 배우자 - 딸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친족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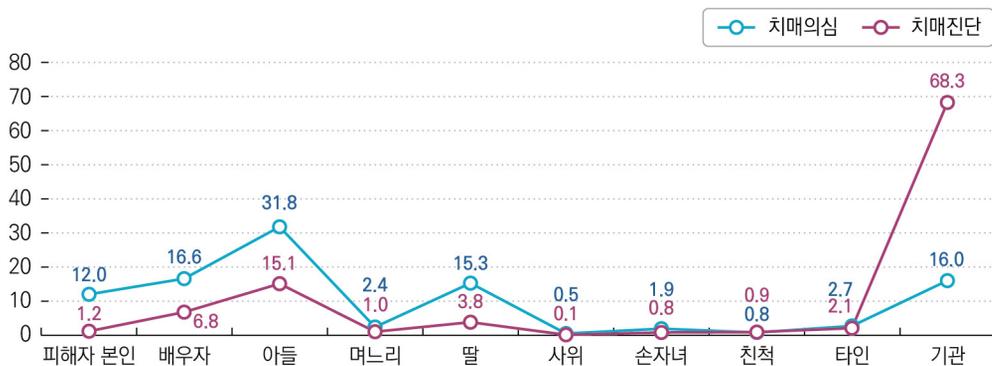
치매를 세부적으로 구분해보면 치매의심은 친족이 434건(69.3%)으로 가장 높았지만 치매진단의 경우 기관이 798건(68.3%)으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 부양자가 누구인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표 5-12]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과 학대행위자 유형

(단위: 건, %)

구 분	피해자 본인	친 족								타인	기관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소계			
치매의심 (치매가 의심됨)	75	104	199	15	96	3	12	5	434	17	100	626
	12.0	16.6	31.8	2.4	15.3	0.5	1.9	0.8	69.3	2.7	16.0	100
치매진단 (치매로 진단받음)	14	79	176	12	45	1	9	11	333	24	798	1,169
	1.2	6.8	15.1	1.0	3.8	0.1	0.8	0.9	28.5	2.1	68.3	100
계	89	183	375	27	141	4	21	16	767	41	898	1,795
	5.0	10.2	20.9	1.5	7.9	0.2	1.2	0.9	42.7	2.3	50.0	100.0

\*중복



[그림 5-11]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과 학대행위자 유형

#### 4)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학대유형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의 학대발생 유형을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가 563건(28.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가 529건(26.4%), 방임 학대 525건(26.2%) 순으로 나타났다. 치매노인 대상 학대유형은 전체 학대피해노인 대상 학대유형과 다소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전체 학대피해노인 대상 학대유형에서는 정서적 학대(3,465건, 42.1%)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치매노인의 경우 신체적 학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18년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학대유형과도 다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2018년에는 방임(449건, 26.5%),신체적 학대(448건, 26.4%), 정서적 학대(445건, 26.2%) 순이었으나 2019년에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13]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학대유형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유기	계
치매의심 (치매가 의심됨)	222	246	19	78	172	75	10	822
	27.0	29.9	2.3	9.5	20.9	9.1	1.2	100
치매진단 (치매로 진단받음)	341	283	116	63	353	14	14	1,184
	28.8	23.9	9.8	5.3	29.8	1.2	1.2	100
계	563	529	135	141	525	89	24	2,006
	28.1	26.4	6.7	7.0	26.2	4.4	1.2	100

\* 중복



[그림 5-12]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학대유형

## 5)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학대발생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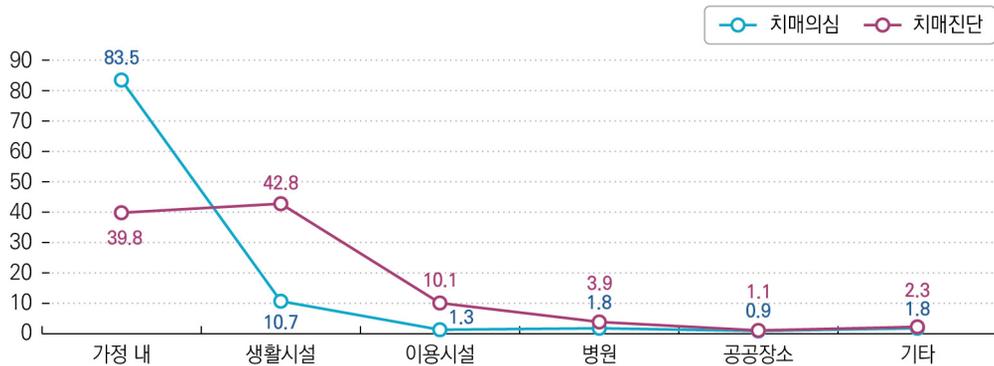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의 학대발생장소를 보면, 가정 내가 790건(57.2%)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생활시설 415건(30.1%)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와 생활시설의 건수를 합하면 총 1,205건(87.3%)으로 학대발생장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치매의심의 경우는 가정 내 비율이 459건(83.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치매진단의 경우 생활시설 비율이 356건(42.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치매의심의 경우 주로 가정에서, 치매진단의 경우 주로 시설에서 학대 발생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14]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학대발생장소

(단위: 명, %)

구분	가정 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계
치매의심 (치매가 의심됨)	459	59	7	10	5	10	550
	83.5	10.7	1.3	1.8	0.9	1.8	100
치매진단 (치매로 진단받음)	331	356	84	32	9	19	831
	39.8	42.8	10.1	3.9	1.1	2.3	100
계	790	415	91	42	14	29	1,381
	57.2	30.1	6.6	3.0	1.0	2.1	100



[그림 5-13]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학대발생장소

### 6)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학대발생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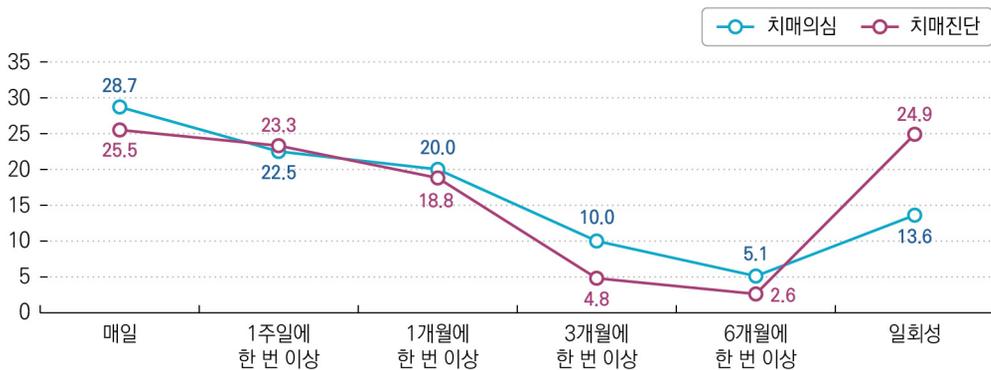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의 학대발생빈도를 보면, 매일이 370명(26.8%)로 가장 높고 1주일에 한번이상이 318명(23.0%), 1개월에 한번 이상 266명(19.3%)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대피해노인 대상 학대피해빈도의 경우 1주일에 한번 이상이 1,462(27.9%)으로 가장 높고, 1개월에 한번 이상이 1,430명(27.3%), 일회성 806명(15.4%) 순으로 나타나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의 학대발생빈도와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매일 학대가 발생하는 비율(26.8%)이 전체 학대피해노인이 매일 학대를 경험하는 비율(14.0%)보다 약 12.8%p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은 더욱 잦은 빈도로 학대받을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5-15]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학대발생빈도

(단위: 명, %)

구 분	매일	1주일에 한번 이상	1개월에 한번 이상	3개월에 한번 이상	6개월에 한번 이상	일회성	계
치매의심 (치매가 의심됨)	158	124	110	55	28	75	550
	28.7	22.5	20.0	10.0	5.1	13.6	100
치매진단 (치매로 진단받음)	212	194	156	40	22	207	831
	25.5	23.3	18.8	4.8	2.6	24.9	100
계	370	318	266	95	50	282	1,381
	26.8	23.0	19.3	6.9	3.6	20.4	100



[그림 5-14]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학대발생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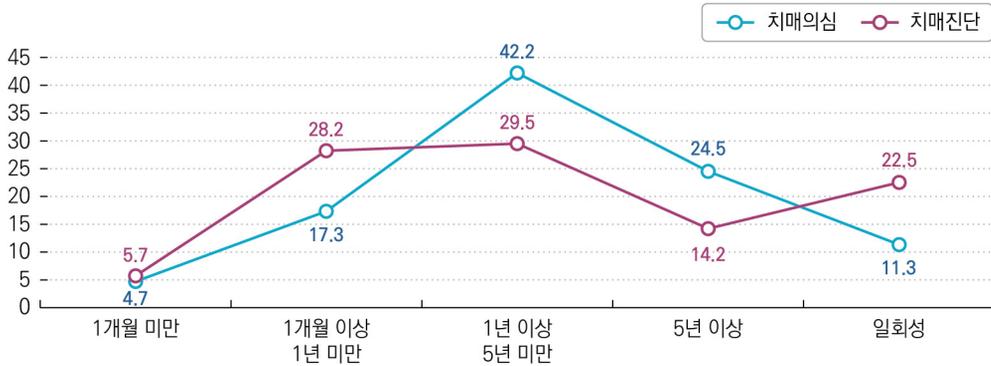
## 7)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학대지속기간

치매노인 대상 학대지속기간을 보면, 1년 이상 5년 미만이 477건(34.5%)으로 가장 높았고,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 329건(23.8%), 5년 이상이 253건(18.3%)으로 나타났다. 학대지속기간 중 1년 이상인 경우가 730건(52.8%)으로 과반을 차지한다는 결과는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이 장기간 학대에 더 노출되어 있음을 뒷받침한다.

[표 5-16]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학대지속기간

(단위: 건, %)

구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일회성	계
치매의심 (치매가 의심됨)	26	95	232	135	62	550
	4.7	17.3	42.2	24.5	11.3	100
치매진단 (치매로 진단받음)	47	234	245	118	187	831
	5.7	28.2	29.5	14.2	22.5	100
계	73	329	477	253	249	1,381
	5.3	23.8	34.5	18.3	18.0	100



[그림 5-15]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학대지속기간

### 8)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가구형태

치매노인 가구형태를 보면 기타 424건(30.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노인단독가구가 363건(26.3%), 자녀동거가 320건(23.2%)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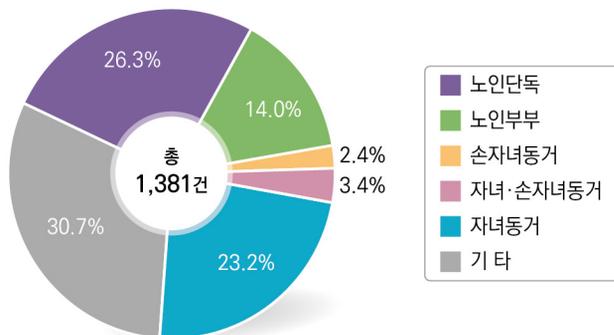
기타 유형이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는 가구 형태가 가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으로 노인요양시설 이나 요양병원 등 시설에 입소해 있는 치매노인의 경우는 주로 기타 항목에 체크 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 학대피해노인의 가구형태와 비교해 보면 치매노인의 가구형태의 경우 “기타”-“노인단독”-“자녀동거”의 순이며, 전체 학대피해노인의 가구형태는 “노인부부”-“자녀동거”-“노인단독”의 순으로 차이가 있다.

[표 5-17]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가구형태

(단위: 건, %)

구 분	노인단독	노인부부	손자녀 동거	자녀·손자녀 동거	자녀동거	기 타	계
치매의심 (치매가 의심됨)	163	101	17	26	169	74	550
	29.6	18.4	3.1	4.7	30.7	13.5	100
치매진단 (치매로 진단받음)	200	93	16	21	151	350	831
	24.1	11.2	1.9	2.5	18.2	42.1	100
계	363	194	33	47	320	424	1,381
	26.3	14.0	2.4	3.4	23.2	30.7	100



[그림 5-16]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가구형태

### 3 시설학대 현황

#### 1) 지역 및 기관별 시설학대 현황

지역 및 기관별 시설학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17개 시·도와 34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시설학대 현황을 살펴보았다. 경북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101건(49.0%)으로 가장 높았고, 대전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 73건(59.3%),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 64건(45.4%)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인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전남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경우 시설학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8] 지역 및 기관별 시설학대 현황

(단위: 건, %)

지역	기관명	전체 학대사례 건수	생활시설		이용시설		계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서울	서울남부	188	-	9	-	5	14
			-	4.8	-	2.7	7.4
	서울북부	169	-	12	1	-	13
			-	7.1	0.6	-	7.7
	서울서부	177	-	4	-	1	5
			-	2.3	-	0.6	2.8
소계	534	-	25	1	6	32	
			-	4.7	0.2	1.1	6.0
부산	부산동부	190	-	4	-	-	4
			-	2.1	-	-	2.1
	부산서부	174	1	3	-	-	4
			0.6	1.7	-	-	2.3
	소계	364	1	7	-	-	8
			0.3	1.9	-	-	2.2
대구	대구남부	116	2	1	-	-	3
			1.7	0.9	-	-	2.6
	대구북부	108	-	-	-	-	-
			-	-	-	-	-
	소계	224	2	1	-	-	3
			0.9	0.4	-	-	1.3



지역	기관명	전체 학대사례 건수	생활시설		이용시설		계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인천	인천	352	-	26	1	1	28
			-	7.4	0.3	0.3	8.0
	인천서부	17	-	-	-	-	-
			-	-	-	-	-
	소계	369	-	26	1	1	28
			-	7.0	0.3	0.3	7.6
광주		235	-	3	-	-	3
			-	1.3	-	-	1.3
대전		123	-	10	-	63	73
			-	8.1	-	51.2	59.3
울산		102	-	5	-	-	5
			-	4.9	-	-	4.9
경기	경기도	89	1	1	-	1	3
			1.1	1.1	-	1.1	3.4
	경기남부	228	-	19	-	-	19
			-	8.3	-	-	8.3
	경기북부	333	3	54	-	3	60
			0.9	16.2	-	0.9	18.0
	경기서부	264	3	5	-	-	8
1.1			1.9	-	-	3.0	
소계	914	7	79	-	4	90	
			0.8	8.6	-	0.4	9.8
강원	강원	141	5	58	-	1	64
			3.5	41.1	-	0.7	45.4
	강원동부	103	2	5	-	30	37
			1.9	4.9	-	29.1	35.9
	강원남부	121	1	47	-	-	48
0.8			38.8	-	-	39.7	
소계	365	8	110	-	31	149	
			2.2	30.1	-	8.5	40.8
충북	충북	106	-	17	-	17	34
			-	16.0	-	16.0	32.1
	충북북부	69	-	5	-	-	5
			-	7.2	-	-	7.2
소계	175	-	22	-	17	39	
			-	12.6	-	9.7	22.3
충남	충남	159	-	6	-	-	6
			-	3.8	-	-	3.8
	충남남부	99	-	2	-	-	2
			-	2.0	-	-	2.0
	소계	258	-	8	-	-	8
			-	3.1	-	-	3.1

지역	기관명	전체 학대사례 건수	생활시설		이용시설		계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전북	전북	144	-	4	-	-	4
			-	2.8	-	-	2.8
	전북서부	122	-	-	-	-	-
			-	-	-	-	-
	소계	266	-	4	-	-	4
-	-	-	1.5	-	-	1.5	
전남	전남동부	151	-	-	-	-	-
			-	-	-	-	-
	전남서부	186	25	-	-	-	25
			13.4	-	-	-	13.4
	소계	337	25	-	-	-	25
-	-	7.4	-	-	-	7.4	
경북	경북	170	-	1	-	-	1
			-	0.6	-	-	0.6
	경북서북부	206	1	96	1	3	101
			0.5	46.6	0.5	1.5	49.0
	경북서남부	116	-	9	-	-	9
-			7.8	-	-	7.8	
소계	492	1	106	1	3	111	
-	-	0.2	21.5	0.2	0.6	22.6	
경남	경남	242	9	5	-	-	14
			3.7	2.1	-	-	5.8
	경남서부	97	1	12	-	2	15
			1.0	12.4	-	2.1	15.5
	소계	339	10	17	-	2	29
-	-	2.9	5.0	-	0.6	8.6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115	-	4	-	-	4
			-	3.5	-	-	3.5
	제주도서귀포시	31	-	5	-	1	6
			-	16.1	-	3.2	19.4
	소계	146	-	9	-	1	10
-	-	-	6.2	-	0.7	6.8	
계	5,243	54	432	3	128	617	
		1.0	8.2	0.1	2.4	11.8	

주. 각 시설학대 건수 비율은 기관별 학대사례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 2) 시설학대 신고자 유형

시설학대 총 617건을 신고자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이 140건(22.7%), 사회복지전담공무원 65건(10.5%) 등으로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비율은 264건(42.8%)으로 나타났다. 비신고의무자 중에서는 타인이 132건(21.4%), 관련기관 121건(19.6%), 친족 94건(15.2%)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19] 시설학대 신고자 유형

(단위: 건, %)

구 분	생활시설		이용시설		계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신고 의무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	-	-	-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	-	-	-	-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3	86	-	51	140
		0.5	13.9	-	8.3	22.7
	장애인복지시설(장애노인)관련종사자	-	-	-	-	-
	가정폭력관련종사자	-	-	-	-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	36	1	23	65
		0.8	5.8	0.2	3.7	10.5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관련 종사자	-	-	-	-	-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	1	-	-	1
		-	0.2	-	-	0.2
	구급대의 대원	-	-	-	-	-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	-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	-	-	-	-

구 분		생활시설		이용시설		계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신고 의무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	-	-	-	-
		-	-	-	-	-
	응급구조사	-	-	-	-	-
		-	-	-	-	-
	의료기사	-	-	-	-	-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요양직직원	1	17	-	25	43
		0.2	2.8	-	4.1	7.0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6	9	-	1	16
		1.0	1.5	-	0.2	2.6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	-	-	-	-	
	-	-	-	-	-	
소계	15	148	1	100	264	
	2.4	24.0	0.2	16.2	42.8	
비신고 의무자	학대피해노인본인	-	4	1	1	6
		-	0.6	0.2	0.2	1.0
	학대행위자본인	-	-	-	-	-
		-	-	-	-	-
	친족	6	80	-	8	94
		1.0	13.0	-	1.3	15.2
	타인	12	104	-	16	132
		1.9	16.9	-	2.6	21.4
	관련기관 <sup>21)</sup>	21	96	1	3	121
		3.4	15.6	0.2	0.5	19.6
소계	39	284	2	28	353	
	6.3	46.0	0.3	4.5	57.2	
계	54	432	3	128	617	
	8.8	70.0	0.5	20.7	100.0	

21) 관련기관에는 어르신 지킴이단, 경찰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이 해당됨.

### 3)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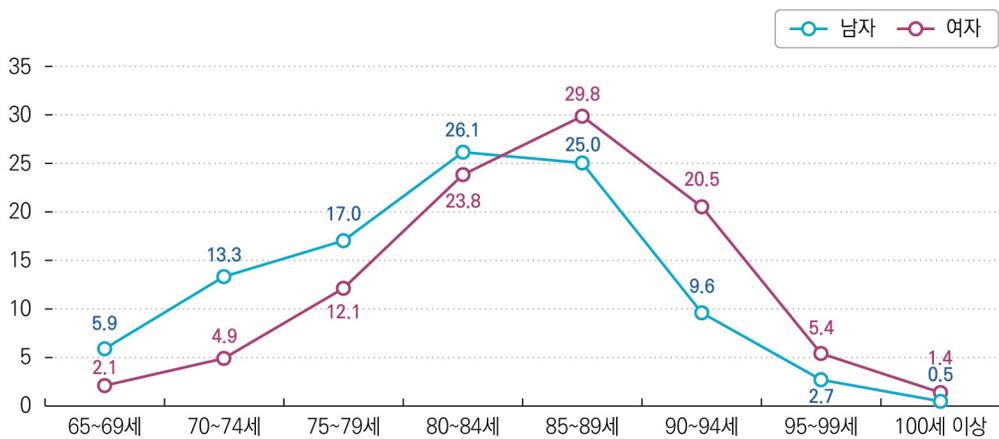
시설학대 617건 중 학대피해노인의 성별 비율은 여성노인은 429명(69.5%), 남성노인은 188명(30.5%)으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시설학대 피해노인의 성별 및 연령대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80대가 51.1%, 70대가 30.3%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또한 80대가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90대 25.9%, 70대 17.0% 순으로 나타났다.

[표 5-20]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단위: 건, %)

구 분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94세	95~99세	100세 이상	계
남성	11	25	32	49	47	18	5	1	188
	5.9	13.3	17.0	26.1	25.0	9.6	2.7	0.5	100
여성	9	21	52	102	128	88	23	6	429
	2.1	4.9	12.1	23.8	29.8	20.5	5.4	1.4	100
계	20	46	84	151	175	106	28	7	617
	3.2	7.5	13.6	24.5	28.4	17.2	4.5	1.1	100



[그림 5-17]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 4) 시설학대 학대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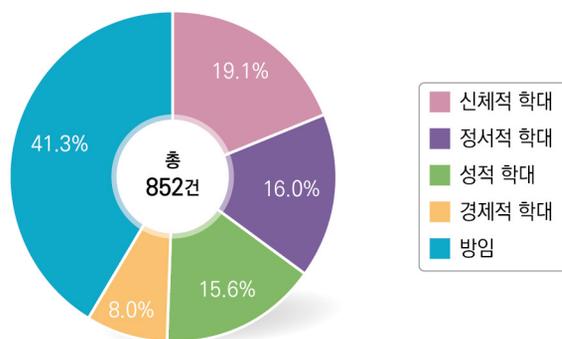
시설학대 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총 852건 중 방임이 352건(41.3%), 신체적학대가 163건(19.1%), 정서적 학대가 136건(16.0%), 성적 학대가 133건(15.6%) 등으로 나타났다.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방임이 217건(36.5%)으로 가장 높았고, 신체적 학대 126건(21.2%), 성적 학대 124건(20.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방임이 31건(41.9%)로 가장 높았고, 신체적 학대 24건(32.4%), 정서적학대 11건(14.9%) 순으로 나타났다.

[표 5-21] 시설학대 학대 유형

(단위: 건, %)

구 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계
생활 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126	61	124	67	217	-	-	595
		21.2	10.3	20.8	11.3	36.5	-	-	100.0
	노인주거 복지시설	24	11	8	-	31	-	-	74
		32.4	14.9	10.8	-	41.9	-	-	100.0
이용 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1	1	-	-	1	-	-	3
		33.3	33.3	-	-	33.3	-	-	100.0
	재가노인 복지시설	12	63	1	1	103	-	-	180
		6.7	35.0	0.6	0.6	57.2	-	-	100
계		163	136	133	68	352	-	-	852
		19.1	16.0	15.6	8.0	41.3	-	-	100.0

\* 중복



[그림 5-18] 시설학대 학대 유형



### 5) 시설학대 학대발생장소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결혼유형

학대피해노인의 결혼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학대피해노인 중 57.9%는 배우자가 있고, 44.8%는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발생장소 중 시설학대를 중심으로 학대피해노인의 결혼유형을 살펴보면, 생활시설의 경우 배우자 없음(59.3%)비율이 높았으며, 이용시설의 배우자 있음(64.9%)이 높게 나타났다.

[표 5-22] 시설학대 학대발생장소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결혼유형

(단위: 건, %)

구 분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계
	초혼	재혼	사실혼	소계	미혼	사별	이혼	별거	가출	소계	
가정 내	2,374	180	125	2,679	61	1,447	211	47	5	1,771	4,450
	53.3	4.0	2.8	60.2	1.4	32.5	4.7	1.1	0.1	39.8	100
생활 시설	6	-	-	6	2	45	1	-	-	48	54
	11.1	-	-	11.1	3.7	83.3	1.9	-	-	88.9	100
	187	3	2	192	7	231	2	-	-	240	432
	43.3	0.7	0.5	44.4	1.6	53.5	0.5	-	-	55.6	100
이용 시설	2	-	-	2	-	1	-	-	-	1	3
	66.7	-	-	66.7	-	33.3	-	-	-	33.3	100
	83	-	-	83	-	43	2	-	-	45	128
	64.8	-	-	64.8	-	33.6	1.6	-	-	35.2	100
병원	8	1	-	9	-	36	-	-	-	36	45
	17.8	2.2	-	20.0	-	80.0	-	-	-	80.0	100
공공 장소	32	2	2	36	2	19	3	-	-	24	60
	53.3	3.3	3.3	60.0	3.3	31.7	5.0	-	-	40.0	100
기타	24	4	1	29	5	31	3	2	1	42	71
	33.8	5.6	1.4	40.8	7.0	43.7	4.2	2.8	1.4	59.2	100
계	2,716	190	130	,036	77	1,853	222	49	6	2,207	5,243
	51.8	3.6	2.5	57.9	1.5	35.3	4.2	0.9	0.1	42.1	100

## 6) 시설학대 학대발생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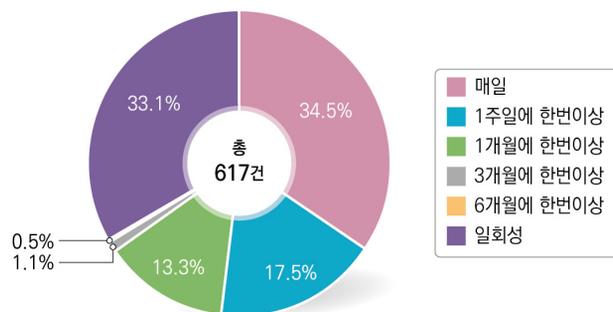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의 학대발생빈도를 살펴보면 전체 시설학대 중 34.5%가 매일, 일회성이 33.1%, 1주일에 한번이상이 17.5%, 1개월에 한번 이상 13.3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시설 중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매일 및 1주일에 한번 이상 발생하는 사례의 비율을 합하면 59.5%로 생활시설학대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전체 시설학대 617건 중 41.7%를 차지하여 타 시설에 비해 학대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23] 시설학대 학대발생빈도

(단위: 건, %)

구 분		매일	1주일에 한번 이상	1개월에 한번 이상	3개월에 한번 이상	6개월에 한번 이상	일회성	계
생활 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184	73	43	6	3	123	432
		42.6	16.9	10.0	1.4	0.7	28.5	100
	노인주거 복지시설	14	17	8	-	-	15	54
		25.9	31.5	14.8	-	-	27.8	100
이용 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	-	-	-	-	3	3
		-	-	-	-	-	100	100
	재가노인 복지시설	15	18	31	1	-	63	128
		11.7	14.1	24.2	0.8	-	49.2	100
계		213	108	82	7	3	204	617
		34.5	17.5	13.3	1.1	0.5	33.1	100



[그림 5-19] 시설학대 학대발생빈도

### 7) 시설학대 학대지속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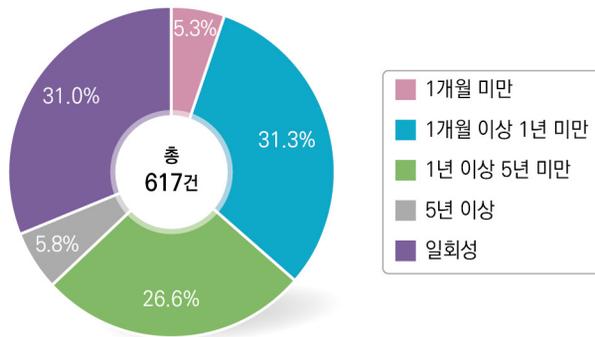
전체 시설학대 사례의 학대지속기간을 살펴보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 193건(31.3%)으로 가장 높았으며, 일회성 191건(31.0%), 1년 이상 5년 미만 164건(26.6%), 으로 나타났다.

생활시설 학대 중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1년 이상 5년 미만이 140건(32.4%), 1개월 이상 1년 미만 124건(28.7%), 일회성이 114건(26.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24] 시설학대 학대지속기간

(단위: 건, %)

구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일회성	계	
생활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27	124	140	27	114	432
		6.3	28.7	32.4	6.3	26.4	100.0
	노인주거복지시설	2	16	15	8	13	54
		3.7	29.6	27.8	14.8	24.1	100.0
이용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	-	-	-	3	3
		-	-	-	-	100.0	100.0
	재가노인복지시설	4	53	9	1	61	128
	3.1	41.4	7.0	0.8	47.7	100.0	
계		33	193	164	36	191	617
		5.3	31.3	26.6	5.8	31.0	100.0



[그림 5-20] 시설학대 학대지속기간

다음은 시설학대의 학대발생빈도별 학대지속기간을 살펴보았다. 학대발생빈도를 기준으로 보면, 1개월에 한번 이상 발생하며 지속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는 7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개월에 한번 이상 발생하며 지속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 경우가 71.4%로 나타났다. 이를 볼때 시설학대의 학대발생 빈도는 1개월에서 3개월 사이, 학대지속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미만 구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5-25] 시설학대 학대발생빈도별 학대지속기간

(단위: 건, %)

구 분		학대지속기간					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일회성	
학 대 발 생 빈 도	매일	5	65	132	11	-	213
		2.3	30.5	62.0	5.2	-	100.0
	1주일에 한번 이상	12	55	17	23	1	108
		11.1	50.9	15.7	21.3	0.9	100.0
	1개월에 한번 이상	5	63	12	2	-	82
		6.1	76.8	14.6	2.4	-	100.0
	3개월에 한번 이상	-	5	2	-	-	7
		-	71.4	28.6	-	-	100.0
	6개월에 한번 이상	-	1	1	-	1	3
		-	33.3	33.3	-	33.3	100.0
	일회성	11	4	-	-	189	204
		5.4	2.0	-	-	92.6	100.0
	계	33	193	164	36	191	617
		5.3	31.3	26.6	5.8	31.0	100.0

## 8)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시설학대를 시설 유형별로 구분해 학대피해노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생활시설의 경우, 생활시설 학대피해노인 486명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78명(16.0%)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학대피해노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 15.4%와 비교하여 0.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6]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단위: 명, %)

구 분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432	66 15.3
	노인주거 복지시설	54	12 22.2
	소계	486	78 16.0
이용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3	- -
	재가노인 복지시설	128	11 8.6
	소계	131	11 8.4
계		617	89 14.4

### 9)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시설학대 617건 중 치매로 의심되거나 진단을 받은 사례는 506건(82.0%)이다. 치매노인 506명을 대상으로 시설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생활시설이 415건(82.0%)으로 이용시설 91건(18.0%)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5-27]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단위: 명, %)

시설학대	구 분		치매의심 (치매가 의심됨)	치매진단 (치매로 진단받음)	계
617	생활 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55 8.9	315 51.1	370 60.0
		노인주거 복지시설	4 0.6	41 6.6	45 7.3
	이용 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 -	1 0.2	1 0.2
		재가노인 복지시설	7 1.1	83 13.5	90 14.6
		계	66 10.7	440 71.3	506 82.0

## 10) 시설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시설학대 학대행위자는 총 976이며 그 중 여성이 738명(75.6%), 남성이 238명(24.4%)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연령대 비율을 보면 남성과 여성의 경우 50대가 101명(42.4%), 354명(48.0%)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28] 시설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단위: 명, %)

구분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계
남성	-	1	51	58	101	25	2	238
	-	0.4	21.4	24.4	42.4	10.5	0.8	100
여성	-	8	16	96	354	248	16	738
	-	1.1	2.2	13.0	48.0	33.6	2.2	100
계	-	9	67	154	455	273	18	976
	-	0.9	6.9	15.8	46.6	28.0	1.8	100



[그림 5-21] 시설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 4 재학대 현황

### 1) 지역 및 기관별 재학대 현황

재학대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되어 종결되었던 사례 중 다시 학대가 발생하여 신고 된 사례를 의미한다. 재학대 사례에는 2019년 처음으로 노인학대가 발생하여 신고접수 된 사례와 2019년 이전에 신고 된 적이 있는 사례가 2019년에 다시 신고 된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

2019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재학대 건수는 500건으로 전체 학대사례 5,234건 중 9.5%에 해당되며, 전국 34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별로 재학대율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재학대가 가장 많이(학대사례 대비 재학대 비율) 신고된 기관은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21.2%,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1%,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 18.8%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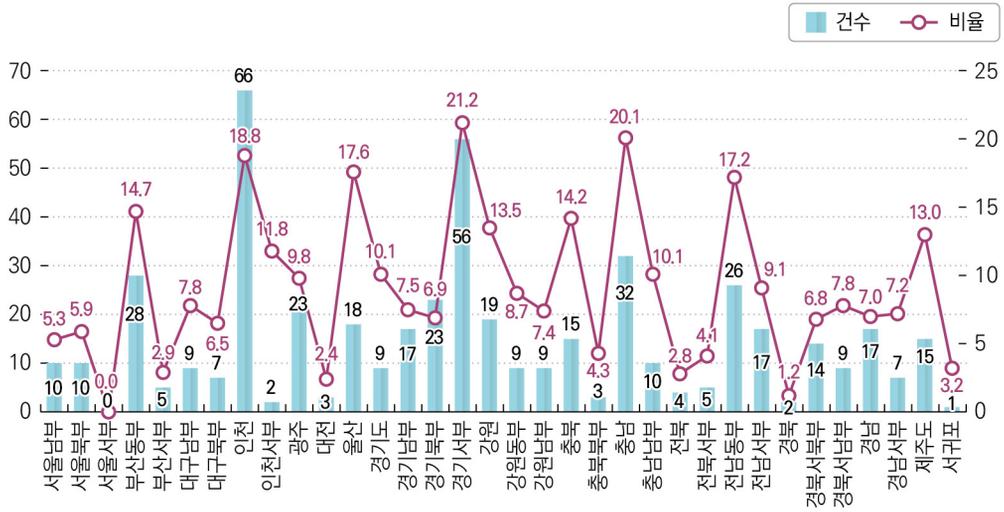
반면 서울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19년 한 해 동안 재학대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으며, 그 외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 1.2%, 대전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 2.4%, 전라북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8%의 순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5-29] 지역 및 기관별 재학대 현황

(단위: 건, %)

지 역	기관명	재학대		전체 학대사례 건수
		건 수	비 율	
서울	서울남부	10	5.3	188
	서울북부	10	5.9	169
	서울서부	-	-	177
	소계	20	3.7	534
부산	부산동부	28	14.7	190
	부산서부	5	2.9	174
	소계	33	9.1	364
대구	대구남부	9	7.8	116
	대구북부	7	6.5	108
	소계	16	7.1	224
인천	인천	66	18.8	352
	인천서부	2	11.8	17
	소계	68	18.4	369

지 역	기관명	재학대		전체 학대사례 건수
		건 수	비 율	
	광주	23	9.8	235
	대전	3	2.4	123
	울산	18	17.6	102
경기	경기도	9	10.1	89
	경기남부	17	7.5	228
	경기북부	23	6.9	333
	경기서부	56	21.2	264
	소계	105	11.5	914
강원	강원	19	13.5	141
	강원동부	9	8.7	103
	강원남부	9	7.4	121
	소계	37	10.1	365
충북	충북	15	14.2	106
	충북북부	3	4.3	69
	소계	18	10.3	175
충남	충남	32	20.1	159
	충남남부	10	10.1	99
	소계	42	16.3	258
전북	전북	4	2.8	144
	전북서부	5	4.1	122
	소계	9	3.4	266
전남	전남동부	26	17.2	151
	전남서부	17	9.1	186
	소계	43	12.8	337
경북	경북	2	1.2	170
	경북서북부	14	6.8	206
	경북서남부	9	7.8	116
	소계	25	5.1	492
경남	경남	17	7.0	242
	경남서부	7	7.2	97
	소계	24	7.1	339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15	13.0	115
	제주도서귀포시	1	3.2	31
	소계	16	11.0	146
계		500	9.5	5,243



[그림 5-22] 기관별 재학대 접수 건수 및 비율

## 2) 재학대 신고자 유형

재학대 사례와 신규사례의 신고자 유형을 비교하여 보면 신규사례의 경우 신고의무자 신고비율이 17.4%였으며 재학대 사례의 경우 신고의무자 신고비율이 10.4%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 타 신고의무자 직군에 비해 재학대 사례와 신규사례 모두 신고비율이 가장 높았다.

재학대 사례와 신규사례의 비신고의무자 신고비율의 경우, 신규사례는 82.6%였으며, 재학대 사례의 경우 89.6%로 비신고의무자 신고비율이 신규사례보다 높았다.

특히 비신고의무자 중 학대피해노인 본인의 신고비율이 신규사례(6.6%) 보다 재학대 사례(8.8%)에서 높았으며, 관련기관 신규사례 신고비율(63.1%)에 비해 재학대 사례 신고비율(72.8%)이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재학대 사례의 경우 신규사례 보다 학대피해노인 본인 또는 관련 기관에서 노인학대를 인지하여 신고하는 비율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5-30] 신규 - 재학대 신고자 유형

(단위: 건, %)

구분		신규		재학대 신고	
신고 의무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3	0.5	1	0.2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17	0.4	4	0.8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214	4.5	11	2.2
	장애인복지시설(장애노인)관련 종사자	3	0.1	-	-
	가정폭력 관련 종사자	73	1.5	10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61	7.6	14	2.8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 관련 종사자	15	0.3	2	0.4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22	0.5	2	0.4
	구급대의 대원	2	0.0	-	-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1	0.0	-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8	0.2	1	0.2
	응급구조사	-	-	-	-
	의료기사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61	1.3	5	1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7	0.1	2	0.4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8	0.4	-	-
	소계	825	17.4	52	10.4
비신고 의무자	학대피해노인 본인	314	6.6	44	8.8
	학대행위자 본인	5	0.1	-	-
	친족	354	7.5	32	6.4
	타인	251	5.3	8	1.6
	관련기관 <sup>22)</sup>	2,994	63.1	364	72.8
	소계	3,918	82.6	448	89.6
계	4,743	100.0	500	100	

22) 관련기관에는 어르신 지킴이단, 경찰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기타 관련기관 종사자 등이 해당됨.

### 3)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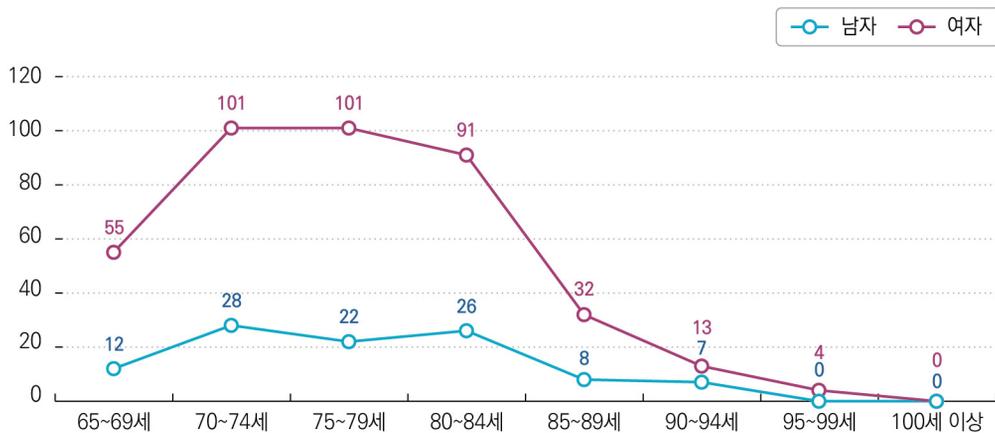
재학대 사례의 학대피해노인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노인이 103명(20.6%), 여성노인이 397명(79.4%)으로 여성 노인의 재학대 사례가 남성 노인에 비해 매우 높았다. 전체 학대피해노인의 성별 비율(남성노인 24.2%, 여성노인 75.8%)과 비교했을 때도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의 재학대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재학대 피해노인 중 70대가 252명(50.4%), 80대가 157명(31.4%), 60대가 67명(13.4%)으로 7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연령대에 따른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80대 이상의 고령의 경우 남성노인이 39.8%, 여성노인이 35.3%로 나타나 남성 재학대 피해노인의 고령 비율이 다소 높았다.

[표 5-31]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단위: 명, %)

성별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94세	95~99세	100세 이상	계
남성	12	28	22	26	8	7	-	-	103
	11.7	27.2	21.4	25.2	7.8	6.8	-	-	100
여성	55	101	101	91	32	13	4	-	397
	13.9	25.4	25.4	22.9	8.1	3.3	1.0	-	100
계	67	129	123	117	40	20	4	-	500
	13.4	25.8	24.6	23.4	8.0	4.0	0.8	-	100



[그림 5-23]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 4) 재학대 사례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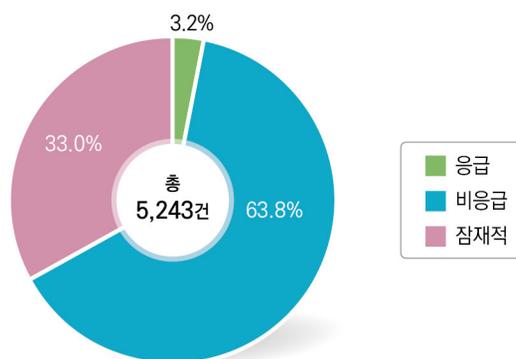
재학대에 대한 사례판정 유형을 보면 비응급 사례 319건(63.8%), 잠재적 사례 165건(33.0%), 응급 사례 16건(3.2%)으로 나타났다. 신규사례에 대한 사례판정 유형 또한 비응급 사례 3,003건(63.3%), 잠재적 사례 1,652건(34.8%), 응급 사례 88건(1.9%)의 순으로 재학대 사례판정과 동일 하였다.

재학대 사례와 신규사례의 사례판정 유형을 비교해보면 재학대 사례의 경우 신규사례에 비해 잠재적 사례 비율은 낮았으나, 응급 사례와 비응급 사례의 비율은 재학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2] 신규 -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사례판정

(단위: 건, %)

구분	응급	비응급	잠재적	계
신규	88	3,003	1,652	4,743
	1.9	63.3	34.8	100.0
재학대	16	319	165	500
	3.2	63.8	33.0	100.0
계	104	3,322	1,817	5,243
	2.0	63.4	34.7	100.0



[그림 5-24]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사례판정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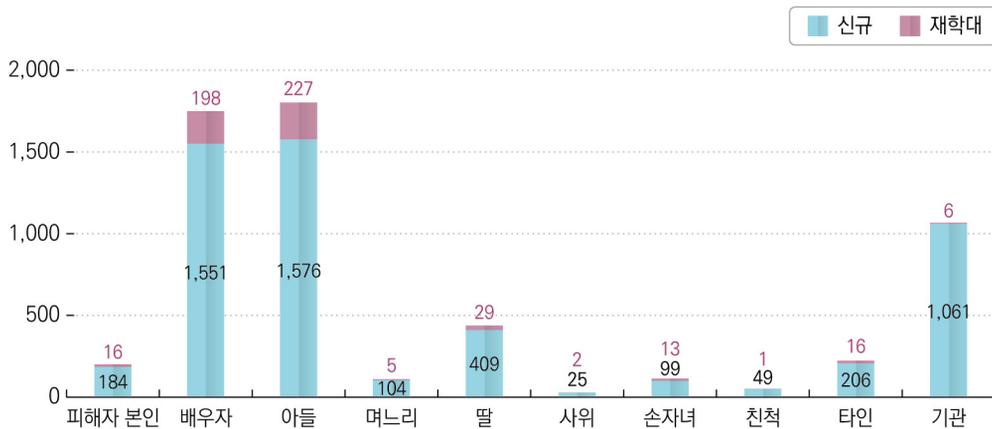
### 5) 재학대 학대행위자 유형

학대피해노인의 학대행위자 유형을 신규 사례와 재학대 사례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신규사례의 경우 아들 - 배우자 - 기관 순으로 나타났으며, 재학대 사례는 아들 - 배우자 - 딸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학대 사례의 경우 학대행위자 중 기관의 비율이 신규 사례보다 19.0%p 차이로 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학대예방 교육을 통해 학대발생원인을 제거하였거나 행정처분 등의 처벌로 인해 재학대로 신고 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5-33] 신규 - 재학대 학대행위자 유형

(단위: 명, %)

구 분	피해자 본인	친 족							타인	기관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신규	184	1,551	1,576	104	409	25	99	49	206	1,061	5,264
	3.5	29.5	29.9	2.0	7.8	0.5	1.9	0.9	3.9	20.2	100
재학대	16	198	227	5	29	2	13	1	16	6	513
	3.1	38.6	44.2	1.0	5.7	0.4	2.5	0.2	3.1	1.2	100
계	200	1,749	1,803	109	438	27	112	50	222	1,067	5,777
	3.5	30.3	31.2	1.9	7.6	0.5	1.9	0.9	3.8	18.5	100



[그림 5-25] 신규 - 재학대 학대행위자 유형

## 6) 재학대 사례의 학대유형

재학대 사례 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808건 중 정서적 학대가 395건(48.9%)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가 331건(41.0%), 경제적 학대 29건(3.6%)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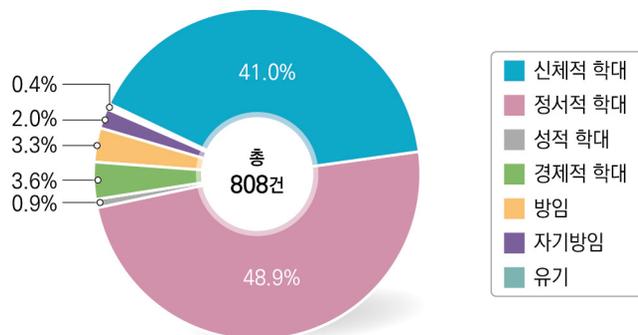
전체 노인학대 의 학대유형의 경우 정서적 학대 비율이 42.1%(3,465건), 신체적 학대 비율이 38.1%(3,138건) 라는 점에서 재학대 사례의 경우 비교적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더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34] 재학대 사례의 학대유형

(단위: 건,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계
331	395	7	29	27	16	3	808
41.0	48.9	0.9	3.6	3.3	2.0	0.4	100.0

\* 중복



[그림 5-26] 재학대 사례의 학대유형

## 7) 재학대 학대발생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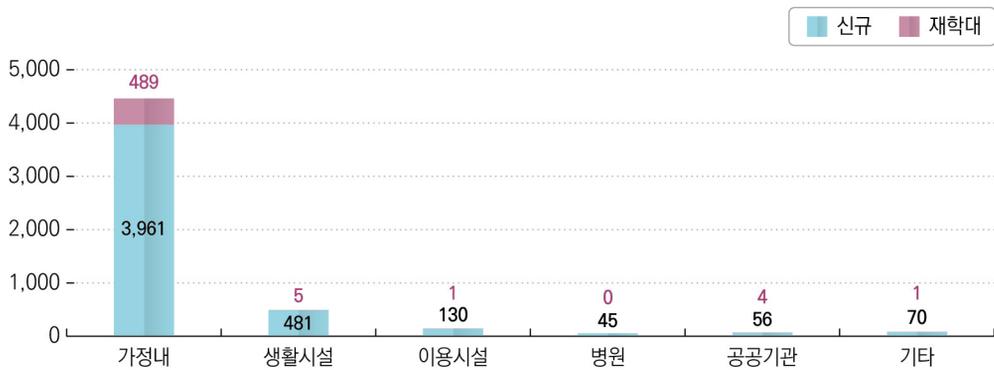
재학대 사례 총 500건 중 가정 내 학대가 489건(97.8%)으로, 재학대로 신고 된 사례의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사례의 가정 내 학대 비율이 83.5%인 것에 비하여 재학대 사례의 가정 내 학대 비율이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5-35] 신규 - 재학대 학대발생장소

(단위: 건, %)

구 분	가정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기관	기타	계
신규	3,961	481	130	45	56	70	4,743
	83.5	10.1	2.7	0.9	1.2	1.5	100.0
재학대	489	5	1	-	4	1	500
	97.8	1.0	0.2	-	0.8	0.2	100.0
계	4,450	486	131	45	60	71	5,243
	84.9	9.3	2.5	0.9	1.1	1.4	100.0

재학대의 발생장소별로 학대행위자 유형을 살펴보면 재학대 행위자 513명 중 가정내 학대의 경우 아들이 227명(44.2%)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우자가 198명(38.6%)으로 나타나 두 번째로 높았다. 즉 가정내 학대로 인한 재학대의 경우 주로 아들과 배우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27] 신규 - 재학대 학대발생장소

[표 5-36] 재학대 학대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유형

(단위: 명, %)

구 분	피해자 본인	친 족								타인	기관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소계			
가정내	16	196	224	5	27	2	13	1	468	16	1	501
	3.2	39.1	44.7	1.0	5.4	0.4	2.6	0.2	93.4	3.2	0.2	100.0
생활 시설	-	-	-	-	1*	-	-	-	1	-	4	5
	-	-	-	-	20.0	-	-	-	20.0	-	80.0	100
이용 시설	-	-	-	-	-	-	-	-	-	-	1	1
	-	-	-	-	-	-	-	-	-	-	100	100
병원	-	-	-	-	-	-	-	-	-	-	-	-
	-	-	-	-	-	-	-	-	-	-	-	-
공공 장소	-	2	2	-	1	-	-	-	-	-	-	5
	-	40.0	40.0	-	20.0	-	-	-	-	-	-	100.0
기타	-	-	1	-	-	-	-	-	-	-	-	1
	-	-	100.0	-	-	-	-	-	-	-	-	100.0
계	16	198	227	5	29	2	13	1	475	16	6	513
	3.1	38.6	44.2	1.0	5.7	0.4	2.5	0.2	92.6	3.1	1.2	100.0

\* 생활시설-딸: 학대행위자 중 딸이 포함되어 있으나 주학대행위자가 시설종사자이므로 시설학대로 분류됨

## 8) 재학대 학대발생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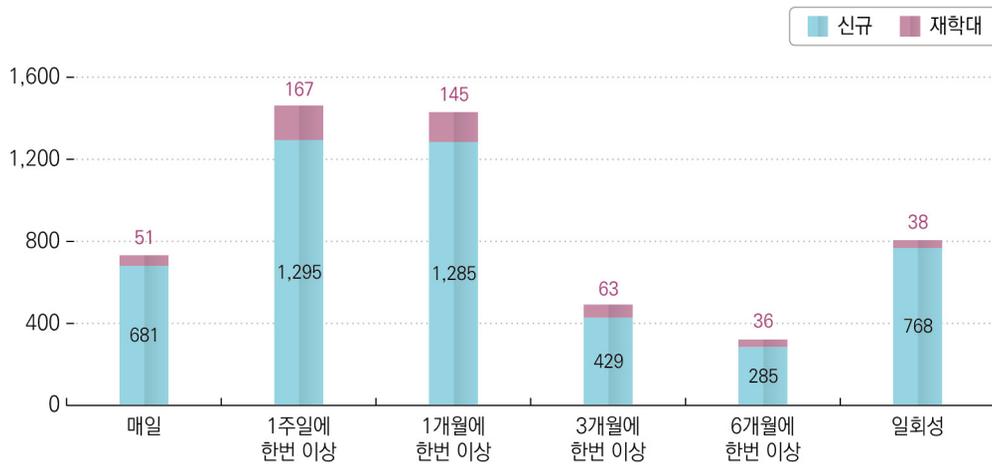
재학대 사례의 학대발생빈도는 1주일에 한번 이상이 167건(33.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개월에 한번 이상이 145건(29.0%), 3개월에 한번이상 63건(12.6%)의 순으로 많았다. 이를 신규 사례와 비교해보면 일회성의 경우 신규사례에 비해 8.6%p 낮은 반면, 1주일에 한번 이상의 비율은 6.1%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학대의 경우 1주일 한번 이상 잦은 횟수로 발생하는 학대가 신규 사례에 비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37] 신규 - 재학대 학대발생빈도

(단위: 건, %)

구 분	매일	1주일에 한번 이상	1개월에 한번 이상	3개월에 한번 이상	6개월에 한번 이상	일회성	계
신규	681	1,295	1,285	429	285	768	4,743
	14.4	27.3	27.1	9.0	6.0	16.2	100.0
재학대	51	167	145	63	36	38	500
	10.2	33.4	29.0	12.6	7.2	7.6	100.0
계	732	1,462	1,430	492	321	806	5,243
	14.0	27.9	27.3	9.4	6.1	15.4	100.0



[그림 5-28] 재학대 학대발생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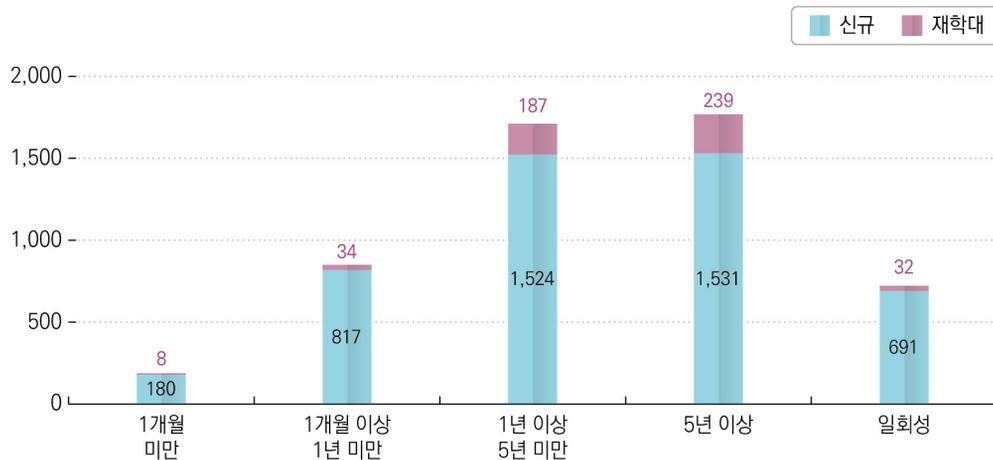
## 9) 재학대 학대지속기간

재학대로 신고된 학대피해노인의 학대지속기간을 살펴보면, 1년 이상 5년 미만 및 5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학대가 지속된 비율은 신규사례가 64.4%(3,055건), 재학대 사례가 85.2%(426건)로, 재학대 사례가 신규 사례 보다 장기간 지속된 학대 비율이 높았다.

[표 5-38] 신규 - 재학대 학대지속기간

(단위: 건, %)

구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일회성	계
신규	180	817	1,524	1,531	691	4,743
	3.8	17.2	32.1	32.3	14.6	100.0
재학대	8	34	187	239	32	500
	1.6	6.8	37.4	47.8	6.4	100.0
계	188	851	1,711	1,770	723	5,243
	3.6	16.2	32.6	33.8	13.8	100.0



[그림 5-29] 신규 - 재학대 학대지속기간



## 10)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재학대 학대피해노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재학대 피해노인 500명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03명(20.6%)이다. 2019년 전체 학대피해노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810명, 15.4%)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표 5-39]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단위: 명, %)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00	103
	20.6

## 11)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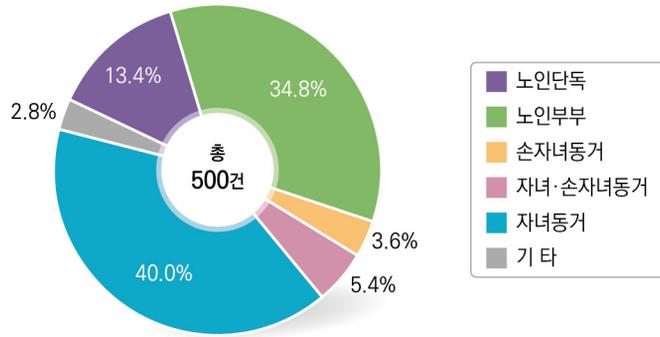
재학대 사례의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를 보면 자녀동거가구가 200건(40.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노인부부가구 174건(34.8%), 노인단독가구 67건(13.4%)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사례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의 가구형태는 노인부부가구로 1,495건(31.5%)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녀동거가구가 1,388건(29.3%), 노인단독 가구가 972건(20.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재학대 사례와 신규 사례를 비교해보면, 재학대 사례의 경우 신규 사례에 비해 노인단독가구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0] 신규 -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단위: 건, %)

구 분	노인단독	노인부부	손자녀 동거	자녀·손자녀 동거	자녀동거	기 타	계
신규	972	1,495	164	168	1,388	556	4,743
	20.5	31.5	3.5	3.5	29.3	11.7	100
재학대	67	174	18	27	200	14	500
	13.4	34.8	3.6	5.4	40.0	2.8	100
계	1,039	1,669	182	195	1,588	570	5,243
	19.8	31.8	3.5	3.7	30.3	10.9	100



[그림 5-30]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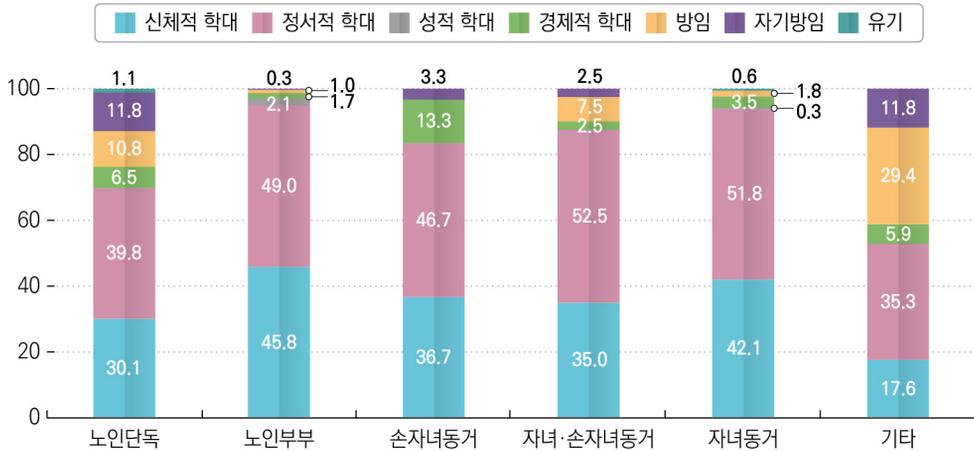
재학대 사례의 학대 유형 건수는 808건으로 가구 형태별로 학대유형의 차이가 나타난다. 노인단독의 경우 “정서적 학대-신체적학대-자기방임“, 노인부부의 경우 ”정서적 학대-신체적학대-성적학대“ 손자녀동거의 경우 “정서적 학대-신체적 학대-경제적 학대”, 자녀·손자녀의 경우 “정서적 학대-신체적학대-방임”, 자녀동거의 경우 “정서적 학대-신체적 학대-경제적학대”, 기타의 경우 정서적 학대-방임-신체적 학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41]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별 학대 유형 건수

(단위: 건, %)

구 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 임	자기 방임	유 기	계
노인단독	28	37	-	6	10	11	1	93
	30.1	39.8	-	6.5	10.8	11.8	1.1	100
노인부부	132	141	6	5	3	1	-	288
	45.8	49.0	2.1	1.7	1.0	0.3	-	100
손자녀동거	11	14	-	4	-	1	-	30
	36.7	46.7	-	13.3	-	3.3	-	100
자녀·손자녀 동거	14	21	-	1	3	1	-	40
	35.0	52.5	-	2.5	7.5	2.5	-	100
자녀동거	143	176	1	12	6	-	2	340
	42.1	51.8	0.3	3.5	1.8	-	0.6	100
기타	3	6	-	1	5	2	-	17
	17.6	35.3	-	5.9	29.4	11.8	-	100
계	331	395	7	29	27	16	3	808
	41.0	48.9	0.9	3.6	3.3	2.0	0.4	100

\* 중복



[그림 5-31]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별 학대 유형

## 12)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재학대 사례의 학대피해노인의 치매정도 결과를 보면 총 500건의 재학대 사례 중 치매가 의심되는 치매의심이 61건(12.2%), 치매로 진단 받은 치매진단이 42건(8.4%)으로, 치매가 의심되거나 진단받은 사례는 전체 재학대 사례의 103건(20.6%)으로 나타났다.

[표 5-42]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단위: 건, %)

재학대 사례	치매의심 (치매가 의심됨)	치매진단 (치매로 진단받음)	계
500	61	42	103
	12.2	8.4	20.6

## 13) 재학대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의 동거여부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513명 중 학대피해노인과 동거하는 비율은 432명(84.2%)이었으며, 동거하지 않는 비율은 81명(15.8%)로 나타났다. 전체 학대행위자가 학대피해노인과 동거하는 비율은 3,584명(68.4%)임을 미루어 볼 때, 재학대 사례의 경우 학대행위자가 학대피해노인과 동거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재학대 사례 중 학대행위자와 동거하는 경우 아들과 동거하는 비율이 191명(44.2%)로

가장 높았고, 배우자가 182명(42.1%)로 두 번째를 차지하였다. 전체 학대피해노인 중 아들과의 동거 비율(28.7%)과 비교해보면 재학대 사례에서 아들과의 동거비율(44.2%)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5-43] 재학대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의 동거여부

(단위: 명, %)

구 분	피해자 본인	친 족								타인	기관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소계			
동거	11	182	191	5	19	1	11	1	410	7	4	432
	2.5	42.1	44.2	1.2	4.4	0.2	2.5	0.2	94.9	1.6	0.9	100
비동거	5	16	36	-	10	1	2	-	65	9	2	81
	6.2	19.8	44.2	-	12.3	1.2	2.5	-	80.2	11.1	2.5	100
계	16	198	227	5	29	2	13	1	475	16	6	513
	3.0	38.6	44.2	1.0	5.7	0.4	2.5	0.2	92.6	3.1	1.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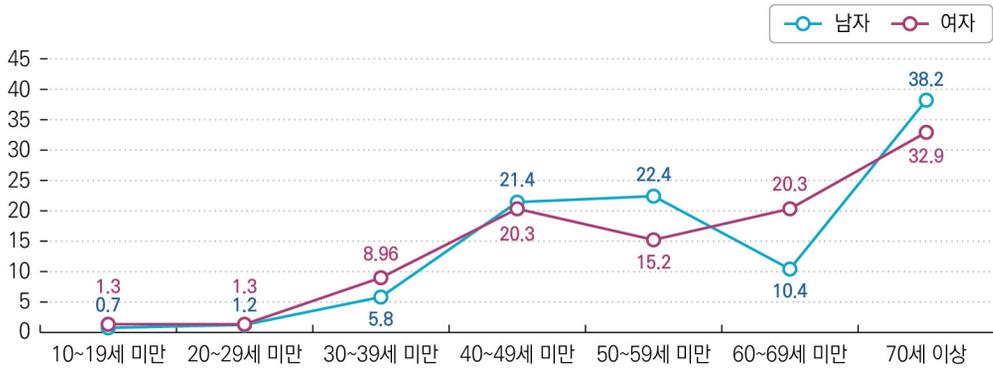
#### 14) 재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재학대의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를 살펴보면 총 513명 중 남성이 434명(84.6%), 여성이 79명(15.4%)으로 나타나 재학대 사례의 주된 학대행위자는 남성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학대행위자는 70세 이상이 37.4%로 가장 많으며, 40대, 50대가 21.2%로 같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5-44] 재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단위: 명, %)

구 분	10~19세 미만	20~29세 미만	30~39세 미만	40~49세 미만	50~59세 미만	60~69세 미만	70세 이상	계
남성	3	5	25	93	97	45	166	434
	0.7	1.2	5.8	21.4	22.4	10.4	38.2	100
여성	1	1	7	16	12	16	26	79
	1.3	1.3	8.96	20.3	15.2	20.3	32.9	100
계	4	6	32	109	109	61	192	513
	0.8	1.2	6.2	21.2	21.2	11.9	37.4	100



[그림 5-32] 재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 15) 재학대 학대행위자 중독 유형

재학대 행위자 513건 중 중독 유형을 가지고 있는 사례는 175건으로, 전체 재학대 사례의 34.1%를 차지하였다. 이 중 알코올 사용 장애가 166건(32.4%), 도박중독이 5건(1.0%), 약물사용장애가 4건(0.8%)으로 중독유형의 대부분은 알코올사용장애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5] 재학대 학대행위자 중독 유형

(단위: 건, %)

재학대 행위자	도박중독	알코올사용장애	약물사용장애	계
513	5	166	4	175
	1.0	32.4	0.8	34.1



2019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 제6장 학대피해노인 전용심터 현황

### 1. 학대피해노인 전용심터 실적







# 제6장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현황

### 1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실적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의 근거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의 안전과 재학대 예방 및 가족기능 회복을 위해 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 및 심리 치유 프로그램 제공, 학대행위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전국 18개<sup>23)</sup>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 1) 보호노인 현황

보호노인이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입소자와 이용자를 모두 일컫는다. “입소자”는 쉼터에서 숙식과 함께 치유 프로그램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있는 대상이며, “이용자”는 쉼터에서 제공하는 단기 치유프로그램 및 상담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대상을 의미한다.

2019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보호노인 현황을 보면 입소자가 487명(42.6%), 이용자가 656명(57.4%)으로 총 1,143명이다. 이는 기관 당 연평균 63.5명, 월평균 5.3명이 입소 및 이용한 수치이다.

[표 6-1] 보호노인 현황

(단위: 명, %)

구분	남성	여성	계
입소자	53	434	487
	10.9	89.1	100
이용자	142	514	656
	21.6	78.4	100
계	195	948	1,143
	17.1	83.9	100

23) 이 중 경북서북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지자체에서 설치하여 경상북도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음.



보호노인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입소자와 이용자 모두 70대가 각각 225명(52.4%), 347명(52.9%)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만 이용자가 입소자에 비해 0.5%p 정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노인의 성별은 입소자와 이용자 모두 여성노인의 수가 남성노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자의 경우 남성노인은 75~79세, 80~84세가 13명(24.5%), 여성노인은 70~74세가 125명(28.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용자의 경우 남성은 75~79세가 48명(33.8%), 여성은 75~79세가 136명(26.5%)로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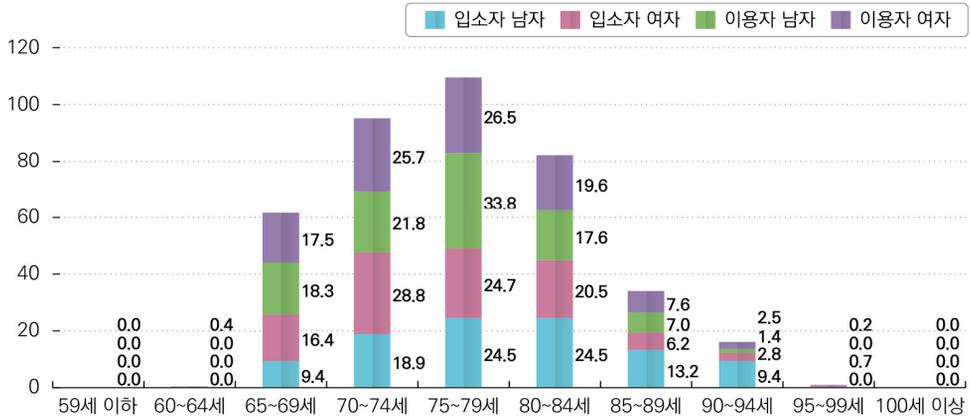
[표 6-2] 보호노인 성별 및 연령대

(단위: 명, %)

구 분		59세 이하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94세	95~99세	100세 이상	계
입 소 자 *	남 성	-	-	5	10	13	13	7	5	-	-	53
		-	-	9.4	18.9	24.5	24.5	13.2	9.4	-	-	100
	여 성	-	-	71	125	107	89	27	12	3	-	434
		-	-	16.4	28.8	24.7	20.5	6.2	2.8	0.7	-	100
	계	-	-	76	135	120	102	34	17	3	-	487
		-	-	15.6	27.7	24.6	20.9	7.0	3.5	0.6	-	100
이 용 자 **	남 성	-	-	26	31	48	25	10	2	-	-	142
		-	-	18.3	21.8	33.8	17.6	7.0	1.4	-	-	100
	여 성	-	2	90	132	136	101	39	13	1	-	514
		-	0.4	17.5	25.7	26.5	19.6	7.6	2.5	0.2	-	100
	계	-	2	116	163	184	126	49	15	1	-	656
		-	0.3	17.7	24.8	28.0	19.2	7.5	2.3	0.2	-	100

\* 입소자: 보호노인의 연령대에 65세 미만의 노인이 있는 이유는 2017년 말에 입소한 학대피해노인이 2018년도 까지 쉼터에 입소한 경우(2017년의 경우 학대피해노인의 기준이 60세 이상).

\*\* 이용자: 기존 학대피해노인 대상으로 사후관리 측면에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여 이용한 경우



[그림 6-1] 보호노인 성별 및 연령대

## 2) 보호노인 결혼 유형

입소자와 이용자의 결혼유형을 보면, 입소자의 경우 배우자 있음(282명, 57.9%)이 배우자 없음(205명, 42.1%)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경우 배우자 없음 349명(53.2%), 배우자 있음 307명(46.8%)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 보호노인 결혼유형

(단위: 명, %)

구분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파악 안됨	계
	초혼	재혼	사실혼	기타	소계	미혼	사별	이혼	별거	가출	기타	소계		
입소자	237	33	12	-	282	6	168	28	3	-	-	205	-	487
	48.7	6.8	2.5	-	57.9	1.2	34.5	5.7	0.6	-	-	42.1	-	100
이용자	268	27	12	-	307	11	278	50	10	-	-	349	-	656
	40.9	4.1	1.8	-	46.8	1.7	42.4	7.6	1.5	-	-	53.2	-	100
계	505	60	24	-	589	17	446	78	13	-	-	554	-	1,143
	44.2	5.2	2.1	-	51.5	1.5	39.0	6.8	1.1	-	-	48.5	-	100



### 3) 보호노인 동거자 유형

보호노인의 동거자 유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배우자 510명(47.2%), 아들 321명(29.7%), 손자녀 93명(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4] 보호노인 동거자 유형

(단위: 명, %)

구 분	배우자	아 들	며느리	딸	사 위	손자녀	기타 친인척	기타 동거인	파악 안됨	계
입소자	252	153	17	43	5	37	5	7	4	523
	48.2	29.3	3.3	8.2	1.0	7.1	1.0	1.3	0.8	100
이용자	258	168	19	42	-	56	7	8	-	558
	46.2	30.1	3.4	7.5	-	10.0	1.3	1.4	-	100
계	510	321	36	85	5	93	12	15	4	1,081
	47.2	29.7	3.3	7.9	0.5	8.6	1.1	1.4	0.4	100

### 4) 보호노인 가구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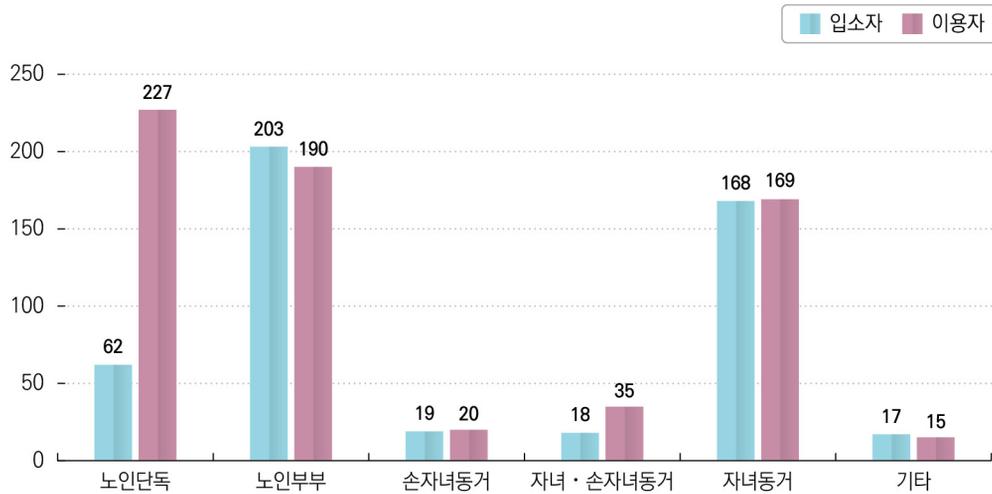
입소자의 가구형태를 보면 노인부부가구가 203명(41.7%), 자녀동거가구가 168명(34.5%), 노인단독가구가 62명(1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용자의 경우 노인단독가구가 227명(34.6%)로 가장 높고 노인부부가구 190명(29.0%), 자녀동거가구 169명(2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과 비교<sup>24)</sup>해 이용자의 노인단독가구 비율은 6.1%p 줄어든 반면, 자녀동거가구의 비율은 5.0%p 증가하였다.

[표 6-5] 보호노인 가구형태

(단위: 명, %)

구 분	노인단독	노인부부	손자녀 동거	자녀·손자녀 동거	자녀동거	기 타	계
입소자	62	203	19	18	168	17	487
	12.7	41.7	3.9	3.7	34.5	3.5	100
이용자	227	190	20	35	169	15	656
	34.6	29.0	3.0	5.3	25.8	2.3	100
계	289	393	39	53	337	32	1,143
	25.3	34.4	3.4	4.6	29.5	2.8	100

24) 2018년 보호노인 중 이용자의 가구형태는 노인단독가구 288명(40.7%), 노인부부가구 219명(30.9%), 자녀동거가구 147명(20.8%) 순이다.



[그림 6-2] 보호노인 가구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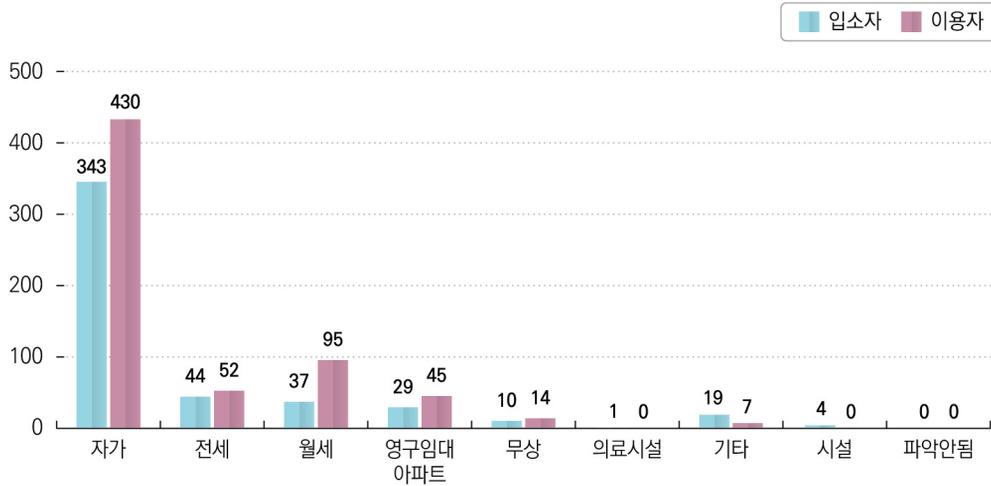
### 5) 보호노인 주거형태

보호노인의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입소자의 경우 자가가 343명(70.4%), 전세 44명(9.0%), 월세 37명(7.6%) 등의 순이며 이용자는 자가가 430명(65.5%), 월세 95명(14.5%), 전세 52명(7.9%) 등으로 나타났다.

[표 6-6] 보호노인 주거형태

(단위: 명, %)

구분	자 가	전 세	월 세	영구 임대 아파트	무상	의료 시설	기타	시설	파악 안됨	계
입소자	343	44	37	29	10	1	19	4	-	487
	70.4	9.0	7.6	6.0	2.1	0.2	3.9	0.8	-	100
이용자	430	52	95	45	14	-	7	-	-	656
	65.5	7.9	14.5	6.9	2.1	-	1.1	-	-	100
계	773	96	132	74	24	1	26	4	-	1,143
	67.6	8.4	11.5	6.5	2.1	0.1	2.3	0.3	-	100



[그림 6-3] 보호노인 주거형태

### 6) 보호노인 학대 유형

보호노인의 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입소자의 경우, 정서적 학대 403건(45.5%), 신체적 학대 369건(41.6%), 경제적 학대 48건(5.4%) 순이며, 이용자는 정서적 학대 518건(51.1%), 신체적 학대 324건(32.0%), 방임 75건(7.4%)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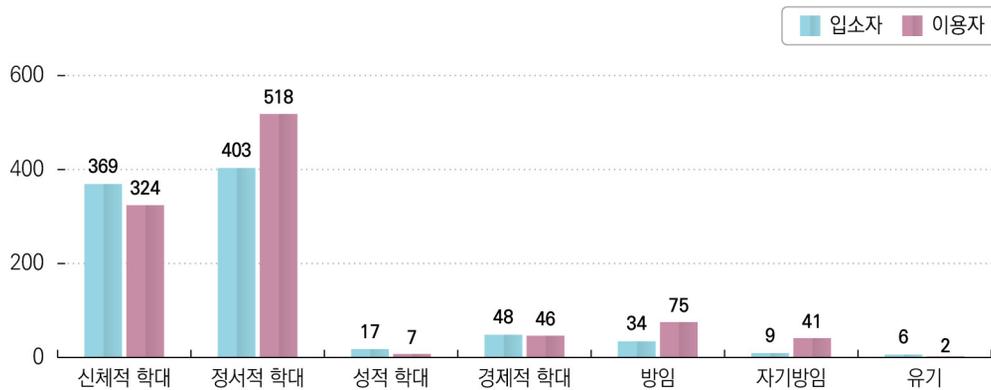
입소노인의 경우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유기 학대가 이용노인에 비해 비율이 높았으며, 이용노인의 경우 정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이 입소노인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6-7] 보호노인 학대 유형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계
입소자	369	403	17	48	34	9	6	886
	41.6	45.5	1.9	5.4	3.8	1.0	0.7	100
이용자	324	518	7	46	75	41	2	1,014
	32.0	51.1	0.7	4.5	7.4	4.0	0.2	100
계	693	921	24	94	109	50	8	1,900
	36.5	48.5	1.3	4.9	5.7	2.6	0.4	100

\* 중복



[그림 6-4] 보호노인 학대 유형

## 7) 보호노인 치매여부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는 병원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경우와 병원진단 없이 상담원이 임의로 간이정신상태검사지표나 학대피해노인의 상황에 따라 치매를 의심하는 치매의심으로 분류한다.

2019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자 중 치매로 진단 받거나 의심되는 사례는 82건(16.8%)이며 이용노인은 51건(7.8%)으로, 입소자의 치매진단 및 치매의심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6-8] 보호노인 치매여부

(단위: 건, %)

구 분	보호노인 수	치매 진단 및 의증		
		치매진단	치매의심	소계
입소자	487	46	36	82
		9.4	7.4	16.8
이용자	656	27	24	51
		4.1	3.7	7.8
계	1,143	73	60	133
		6.4	5.2	11.6



## 8) 보호노인의 우울증 검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입소자 및 이용자는 사전, 사후 자가우울증검사<sup>25)</sup>를 실시하여 우울증의 감소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보호노인 1,143명 중 급작스런 퇴소, 병원이송, 학대피해노인 거부, 치매,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우울증 검사를 실시한 보호노인은 총 938명이며 그 중 98.7%(926명)가 우울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9] 보호노인 우울증 검사결과

(단위: 명, %)

구 분	증 가	감 소	계
입소자	8	512	520
	1.5	98.5	100
이용자	4	414	418
	1.0	99.0	100
계	12	926	938
	1.3	98.7	100

## 9) 퇴소 후 거주 현황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퇴소 후 거주 현황을 살펴보면, 입소자 및 이용자의 916명(80.1%)이 원가정에 복귀하였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보호 기간이 종료된 입소노인의 324명(66.5%)은 원가정으로 복귀하였으나,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경우 생활시설 또는 의료기관 등 타 시설로 연계(47명, 9.7%)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0] 퇴소 후 거주현황

(단위: 명, %)

구 분	원가정 복귀	입소 전 거주지 복귀 (원가정복귀제외)	타부양자 가정	시설입소 (쉼터, 공동생활 가정, 요양원 등)	의료기관	별도공간 마련	기 타	소계
입소자	324	1	33	33	14	38	44	487
	66.5	0.2	6.8	6.8	2.9	7.8	9.0	100
이용자	592	-	1	12	1	4	46	656
	90.2	-	0.2	1.8	0.2	0.6	7.0	100
계	916	1	34	45	15	42	90	1,143
	80.1	0.1	3.0	3.9	1.3	3.7	7.9	100

25) Beck Depression Inventory(BDI) 척도 사용

## 10) 쉼터 서비스 제공 현황(입소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서는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숙식제공,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학대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 의료비 지원,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한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19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입소한 학대피해노인의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총 93,823명(연인원)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식사제공의 경우 45,051명에게 제공되었으며,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등의 법률서비스는 20명, 의료기관 서비스 제공 및 이송, 의료비 지급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은 2,946명에게 제공되었다.

상담서비스의 경우 쉼터 사회복지사 상담,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 전문가 상담, 가족상담 등이 포함되며 9,329명에게 제공되었으며, 건강증진, 문화여가, 사회기능회복, 심리치료 등의 각종 프로그램은 36,477명에게 제공하였다.

[표 6-11] 쉼터 서비스 제공 현황(입퇴소자)

(단위: 명, 회, %)

내 용		인 원		
		인원	비율	
식사제공	조식	15,404	16.4	
	중식	14,505	15.5	
	석식	15,142	16.1	
	소계	45,051	48.0	
법률서비스	법률상담연결	18	0.0	
	법률소송지원	2	0.0	
	소계	20	0.0	
의료서비스	연계	이송	37	0.0
		의료기관 서비스제공	359	0.4
	지원	이송 및 동행	796	0.8
		의료비 지급	409	0.4
	기타	1,345	1.4	
	소계	2,946	3.1	



내 용		인 원	
		인원	비율
상담서비스	쉼터 사회복지사 상담	3,711	4.0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	981	1.0
	전문가(강사)상담	677	0.7
	가족상담	151	0.2
	기타	3,809	4.1
	소계	9,329	9.9
프로그램	건강증진	19,567	20.9
	문화여가	3,849	4.1
	사회기능회복	2,891	3.1
	심리치료	7,134	7.6
	기타	3,036	3.2
	소계	36,477	38.9
계		93,823	100

\*횟수 : 2인 이상 동시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1회로 집계함

## 11) 쉼터 서비스 제공 현황(이용자)

2019년 보호노인 총 1,143명 중 이용자는 656명(57.4%)으로 보호노인의 상당수가 이용노인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쉼터 서비스 제공 횟수는 입소자가 훨씬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입소자의 경우 숙식과 함께 비교적 장기적인 상담 및 서비스가 제공되는 반면 이용자의 경우 1~2회성 서비스 및 상담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이용자에 대한 쉼터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식사제공은 2,390명이며 의료기관 연계 및 의료비 지원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237명을 대상으로 제공되었다.

상담서비스의 경우 쉼터 사회복지사 상담,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 전문가 상담, 가족상담 등이 2,925명에게 제공되었으며, 건강증진, 문화여가, 사회기능회복, 심리치료 등의 각종 프로그램은 1,932명에게 제공되었다.

[표 6-12] 쉼터 서비스 제공 현황(이용자)

(단위: 명, 회, %)

내 용		인 원		
		인원	비율	
식사제공	조식	301	4.0	
	중식	1,798	24.0	
	석식	291	3.9	
	소계	2,390	31.9	
법률서비스	법률상담연결	-	-	
	법률소송지원	-	-	
	소계	-	-	
의료서비스	연계	이송	-	-
		의료기관 서비스제공	2	0.0
	지원	이송 및 동행	34	0.5
		의료비 지급	-	-
	기타	201	2.7	
	소계	237	3.2	
상담서비스	쉼터 사회복지사 상담	405	5.4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	993	13.3	
	전문가(강사)상담	261	3.5	
	가족상담	193	2.6	
	기타	1,073	14.3	
	소계	2,925	39.1	
프로그램	건강증진	313	4.2	
	문화여가	525	7.0	
	사회기능회복	86	1.1	
	심리치료	673	9.0	
	기타	335	4.5	
	소계	1,932	25.8	
계		7,484	100	





## 제7장 연도별 노인학대 예방 사업 (2005~2019년)

1. 연도별 학대신고접수 건수
2. 연도별 재학대 건수
3. 연도별 신고자 유형
4. 연도별 전체 상담횟수
5.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6. 연도별 생활시설 학대 추이
7. 연도별 현장조사 현황
8.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9.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10.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11.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12.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13. 연도별 학대 유형 건수
14.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5. 연도별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6.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 제 7 장

## 연도별 노인학대 예방 사업 (2005~2019년)

### 1 연도별 학대신고접수 건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연도별 노인학대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대비 2019년 전체신고 건수는 52.1% 증가(10,569건 → 16,071건)였다. 학대사례의 경우 48.4% 증가(3,532건 → 5,243건)하였고, 일반사례의 경우 53.9% 증가(7,037건 → 10,828건)하였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처음 시작한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증설(05년 17개 → '19년 34개) 하였고, 중앙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속적 홍보활동과 노인학대예방 교육 등의 영향으로 매년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일반 및 학대사례의 비중을 살펴보면, 2016년에는 전년대비 일반사례의 비율이 감소하고 학대사례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2017년부터 다시 일반사례와 학대사례 모두 전년 대비 비율이 증가하였다.

[표 7-1] 연도별 학대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일반 사례	1,511	1,722	2,418	2,885	3,485	4,435	5,162	5,916	6,642	7,037	8,087	7,729	8,687	10,294	10,828
증감률	-	14.0	40.4	19.3	20.8	27.3	16.4	14.6	12.3	5.9	14.9	-4.4	12.4	18.5	5.2
학대 사례	2,038	2,274	2,312	2,369	2,674	3,068	3,441	3,424	3,520	3,532	3,818	4,280	4,622	5,188	5,243
증감률	-	11.6	1.7	2.5	12.9	14.7	12.2	-0.5	2.8	0.3	8.1	12.1	8.0	12.2	1.1
전체 사례	3,549	3,996	4,730	5,254	6,159	7,503	8,603	9,340	10,162	10,569	11,905	12,009	13,309	15,482	16,071
증감률	-	12.6	18.4	11.1	17.2	21.8	14.7	8.6	8.8	4.0	12.6	0.9	10.8	16.3	3.8



[그림 7-1] 연도별 신고접수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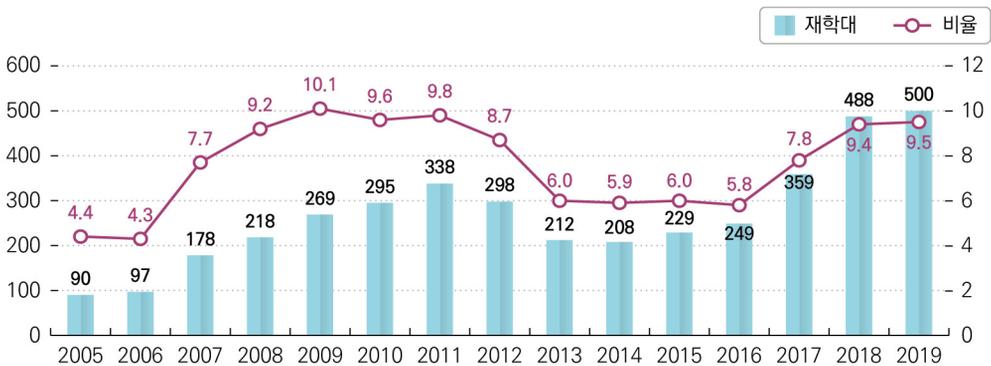
## 2 연도별 재학대 건수

연도별 재학대 건수를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던 재학대율은 2016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19년에는 지난해 대비 비율이 2.5% 증가하였다.

[표 7-2] 연도별 재학대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학대사례	2,038	2,274	2,312	2,369	2,674	3,068	3,441	3,424	3,520	3,532	3,818	4,280	4,622	5,188	5,243	
재학대	건수	90	97	178	218	269	295	338	298	212	208	229	249	359	488	500
	비율	4.4	4.3	7.7	9.2	10.1	9.6	9.8	8.7	6.0	5.9	6.0	5.8	7.8	9.4	9.5
증감률	-	7.8	83.5	22.5	23.4	9.7	14.6	-11.8	-28.9	-1.9	10.1	8.7	44.2	35.9	2.5	



[그림 7-2] 연도별 재학대 건수 및 비율 추이

### 3 연도별 신고자 유형

연도별 신고자의 경우, 2012년 이후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는 16.7%로 2018년(14.8%)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및 요양직 직원에 의한 신고건수가 증가한 결과로 보여 진다.

[표 7-3] 연도별 신고자 유형별 신고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9	33	33	26	43	38	33	41	43	42	44	27	20	26	24
	1.4	1.5	1.4	1.1	1.6	1.2	1.0	1.2	1.2	1.2	1.2	0.6	0.4	0.5	0.5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	-	-	-	-	-	-	-	-	-	-	-	9	12	21
	-	-	-	-	-	-	-	-	-	-	-	-	0.2	0.2	0.4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41	20	107	187	221	265	311	167	207	182	178	168	153	194	225
	2.0	0.9	4.6	7.9	8.3	8.6	9.0	4.9	5.9	5.2	4.7	3.9	3.3	3.7	4.3
장애인복지시설 (장애노인)종사자	5	-	3	2	2	10	2	2	-	5	16	2	2	1	3
	0.2	-	0.1	0.1	0.1	0.3	0.1	0.1	-	0.1	0.4	0.0	0.0	0.0	0.1
가정폭력관련 종사자	20	9	28	14	42	37	65	53	66	85	101	79	105	72	83
	1.0	0.4	1.2	0.6	1.6	1.2	1.9	1.5	1.9	2.4	2.6	1.8	2.3	1.4	1.6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74	39	153	180	190	332	305	259	263	322	290	382	283	398	375
	3.7	1.7	6.6	7.6	7.1	10.8	8.9	7.6	7.5	9.1	7.6	8.9	6.1	7.7	7.2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관련 종사자	-	-	-	-	-	-	-	16	24	17	31	44	18	12	17
	-	-	-	-	-	-	-	0.5	0.7	0.5	0.8	1.0	0.4	0.2	0.3
재가장기요양 기관 종사자	-	-	-	-	-	-	-	30	36	46	38	45	34	29	24
	-	-	-	-	-	-	-	0.9	1.0	1.3	1.0	1.1	0.7	0.6	0.5
구급대의 대원	-	-	-	-	-	-	-	5	6	8	9	3	5	2	2
	-	-	-	-	-	-	-	0.1	0.2	0.2	0.2	0.1	0.1	0.0	0.0
건강가정지원 센터 종사자	-	-	-	-	-	-	-	-	-	2	-	1	2	-	-
	-	-	-	-	-	-	-	-	-	0.1	-	0.0	0.0	-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	-	-	-	-	-	-	-	-	-	-	-	-	1	1
	-	-	-	-	-	-	-	-	-	-	-	-	-	0.0	0.0
성폭력피해 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 시설의 종사자	-	-	-	-	-	-	-	-	-	-	-	-	4	5	9
	-	-	-	-	-	-	-	-	-	-	-	-	0.1	0.1	0.2
응급구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료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국민건강보험 공단 소속 및 요양직 직원	-	-	-	-	-	-	-	-	-	-	-	-	-	5	66
	-	-	-	-	-	-	-	-	-	-	-	-	-	0.1	1.3
노인복지시설 설치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	-	-	-	-	-	-	-	-	-	-	-	-	5	18
	-	-	-	-	-	-	-	-	-	-	-	-	-	0.1	0.3
지역보건의료 기관의 장과 종사자	-	-	-	-	-	-	-	-	-	-	-	-	-	5	9
	-	-	-	-	-	-	-	-	-	-	-	-	-	0.1	0.2
소계	169	101	324	409	498	682	716	573	645	709	707	751	635	767	877
	8.3	4.4	14.0	17.3	18.6	22.2	20.8	16.7	18.3	20.1	18.5	17.5	13.7	14.8	16.7
학대피해노인 본인	646	664	662	627	673	773	954	825	842	777	722	582	431	387	358
	32.2	29.2	28.6	26.5	25.2	25.2	27.7	24.1	23.9	22.0	18.9	13.6	9.3	7.5	6.8
학대행위자본 인	-	7	2	4	10	7	11	10	7	10	8	4	6	4	5
	-	0.3	0.1	0.2	0.4	0.2	0.3	0.3	0.2	0.3	0.2	0.1	0.1	0.1	0.1
친족	729	662	555	633	643	640	716	606	592	519	567	500	407	472	386
	36.3	29.1	24.0	26.7	24.0	20.9	20.8	17.7	16.8	14.7	14.9	11.7	8.8	9.1	7.4
타인	255	371	290	286	321	329	306	295	292	300	320	236	755	156	259
	12.7	16.3	12.5	12.1	12.0	10.7	8.9	8.6	8.3	8.5	8.4	5.5	16.3	3.0	4.9
관련기관 <sup>26)</sup>	207	374	304	410	529	637	738	1,115	1,142	1,217	1,494	2,207	2,388	3,402	3,358
	10.3	16.4	13.1	17.3	19.8	20.8	21.4	32.6	32.4	34.5	39.1	51.6	51.7	65.6	64.0
129연계*	-	55	143	-	-	-	-	-	-	-	-	-	-	-	-
	-	2.4	6.2	-	-	-	-	-	-	-	-	-	-	-	-
기타	32	40	32	-	-	-	-	-	-	-	-	-	-	-	-
	1.6	1.8	1.4	-	-	-	-	-	-	-	-	-	-	-	-
소계	1,837	2,173	1,988	1,960	2,176	2,386	2,725	2,851	2,875	2,823	3,111	3,529	3,987	4,421	4,366
	91.7	95.6	86.0	82.7	81.4	77.8	79.2	83.3	81.7	79.9	81.5	82.5	86.3	85.2	83.3
계	2,006	2,274	2,312	2,369	2,674	3,068	3,441	3,424	3,520	3,532	3,818	4,280	4,622	5,188	5,243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129연계"의 경우 2008년부터 신고접수처로 분류됨



[그림 7-3] 연도별 신고자 유형별 신고 비율 추이

26) 관련기관에는 어르신 지킴이단, 경찰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이 해당됨.

## 4 연도별 전체 상담횟수

연도별 전체 상담횟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상담과 학대상담의 횟수 및 비율은 [표 7-1]의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신고접수 건수의 경우 일반사례가 67.4%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상담횟수는 학대상담의 비율이 일반상담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례 개입 정도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일반사례의 경우에는 1~2회 정도의 상담이 이루어지는 반면 학대상담은 학대사례의 문제해결을 위한 심층 상담과 학대피해노인과 그 가족에게 집중적인 상담이 제공되어 학대상담 횟수가 일반상담 횟수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2019년 한해 전체 상담 건수는 전년대비 9.7% 증가('18년 127,965건 → '19년 140,354건) 하였으며 학대상담은 110,226건으로 전체 상담 중 78.5%이다.

[표 7-4] 연도별 전체 상담횟수 및 비율

(단위: 회,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일반 상담	2,732	3,006	3,988	5,485	6,934	8,099	9,383	10,378	11,177	10,860	13,462	16,464	22,326	25,793	30,128
비율	16.5	13.6	12.7	13.4	12.9	14.4	14.0	13.7	14.1	13.1	14.7	16.6	20.1	20.2	21.5
증감률	-	10.0	32.7	37.5	26.4	16.8	15.9	10.6	7.7	-2.8	24.0	22.3	35.6	15.5	16.8
학대 상담	13,836	19,092	27,492	35,467	46,855	47,988	57,849	65,294	68,280	71,889	78,368	82,468	88,919	102,172	110,226
비율	83.5	86.4	87.3	86.6	87.1	85.6	86.0	86.3	85.9	86.9	85.3	83.4	79.9	79.8	78.5
증감률	-	38.0	44.0	29.0	32.1	2.4	20.5	12.9	4.6	5.3	9.0	5.2	7.8	14.9	7.9
계	16,568	22,098	31,480	40,952	53,789	56,087	67,232	75,672	79,457	82,749	91,830	98,932	111,245	127,965	140,354
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증감률	-	33.4	42.5	30.1	31.3	4.3	19.9	12.6	5.0	4.1	11.0	7.7	12.4	15.0	9.7



[그림 7-4] 연도별 전체 상담횟수 비율 추이

## 5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연도별 학대발생장소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가정 내 학대는 84.9%(4,450건)으로 2018년 보다 다소 감소하였지만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생활시설은 9.3%(486건)로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7-5】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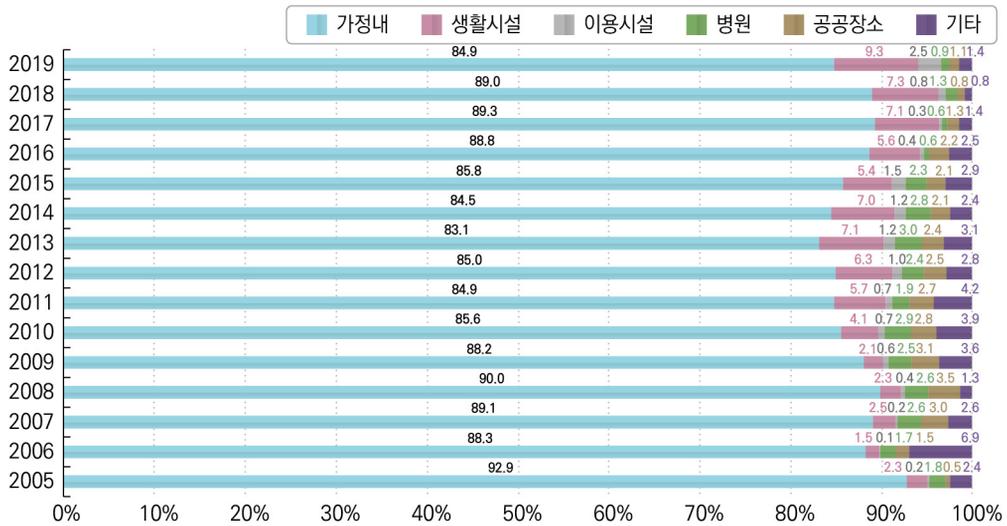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가정내	1,893	2,008	2,060	2,132	2,358	2,625	2,921	2,909	2,925	2,983	3,276	3,799	4,129	4,616	4,450
	92.9	88.3	89.1	90.0	88.2	85.6	84.9	85.0	83.1	84.5	85.8	88.8	89.3	89.0	84.9
생활 시설	46	33	58	55	55	127	196	216 <sup>주1)</sup>	251 <sup>주2)</sup>	246 <sup>주3)</sup>	206 <sup>주4)</sup>	238 <sup>주4)</sup>	327 <sup>주4)</sup>	380 <sup>주4)</sup>	486 <sup>주4)</sup>
	2.3	1.5	2.5	2.3	2.1	4.1	5.7	6.3	7.1	7.0	5.4	5.6	7.1	7.3	9.3
이용 시설	5	3	5	9	16	22	24	35	42	44	57	16	16	41	131
	0.2	0.1	0.2	0.4	0.6	0.7	0.7	1.0	1.2	1.2	1.5	0.4	0.3	0.8	2.5
병원	36	38	59	61	66	88	65	83	107	100	88	24	27	65	45
	1.8	1.7	2.6	2.6	2.5	2.9	1.9	2.4	3.0	2.8	2.3	0.6	0.6	1.3	0.9
공공 장소	10	34	70	82	83	87	92	86	86	74	80	94	58	42	60
	0.5	1.5	3.0	3.5	3.1	2.8	2.7	2.5	2.4	2.1	2.1	2.2	1.3	0.8	1.1
기타	48	158	60	30	96	119	143	95	109	85	111	109	65	44	71
	2.4	6.9	2.6	1.3	3.6	3.9	4.2	2.8	3.1	2.4	2.9	2.5	1.4	0.8	1.4
계	2,038	2,274	2,312	2,369	2,674	3,068	3,441	3,424	3,520	3,532	3,818	4,280	4,622	5,188	5,243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1) 학대행위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를 포함한 수치임(2005년~2012년)

2) 학대행위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를 포함한 수치임. 동 경우를 가정 내 학대로 포함할 경우, 203건(5.7%)

3) 학대행위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를 포함한 수치임. 동 경우를 가정 내 학대로 포함할 경우, 190건(5.4%)

4) 학대행위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를 가정 내 학대에 포함한 수치임(2015년~2019년)



[그림 7-5]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 6 연도별 생활시설 학대 추이

생활시설 학대란 노인복지법 제31조 제1호에 해당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과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발생하는 학대를 말한다. 생활시설 수는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 후 큰 폭으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2008년 2,179개소 → 2018년 5,677개소<sup>27)</sup>). 생활시설의 양적 증가에 따라 생활시설 학대도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 생활시설 학대 건수는 전체 학대사례 5,243건 중 486건(9.3%)으로 2018년 390건(7.3%)과 대비하여 27.9% 증가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2008년 이후 시점인 2009년(55건, 2.1%)과 비교하면 약 8.8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7-6] 연도별 생활시설 학대 추이

(단위: 건,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생활시설	46	33	58	55	55	127	196	216	251	246	206	238	327	380	486
학대사례	2,038	2,274	2,312	2,369	2,674	3,068	3,441	3,424	3,520	3,532	3,818	4,280	4,622	5,188	5,243

27) 보건복지부 「2019 노인복지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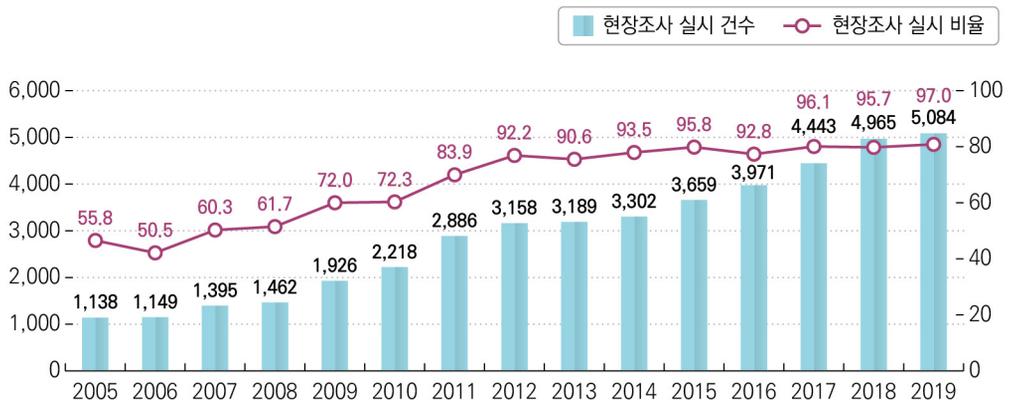
## 7 연도별 현장조사 현황

현장조사는 신고접수 된 학대의심사례의 학대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로 신고 된 자를 조사하기 위한 최초의 방문을 의미한다. 연도별 현장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3,659건(95.8%)에서 2019년 5,084건(97.0%)으로 1.2%p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는 학대의심사례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조사 실시를 원칙으로 하는 등, 현장조사에 대한 중요성을 강화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되며, 최근 8년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실시 비율은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7-기] 연도별 현장조사 현황

(단위: 건,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현장조사 건수	1,138	1,149	1,395	1,462	1,926	2,218	2,886	3,158	3,189	3,302	3,659	3,971	4,443	4,965	5,084
현장조사 실시 비율	55.8	50.5	60.3	61.7	72.0	72.3	83.9	92.2	90.6	93.5	95.8	92.8	96.1	95.7	97.0
현장조사 미실시 건수	900	1,125	917	907	748	850	555	266	331	230	159	476	179	223	159
현장조사 미실시 비율	44.2	49.5	39.7	38.3	28.0	27.7	16.1	7.8	9.4	6.5	4.2	11.1	3.9	4.3	3.0
계	2,038	2,274	2,312	2,369	2,674	3,068	3,441	3,424	3,520	3,532	3,818	4,280	4,622	5,188	5,243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그림 7-6] 연도별 현장조사 건수 및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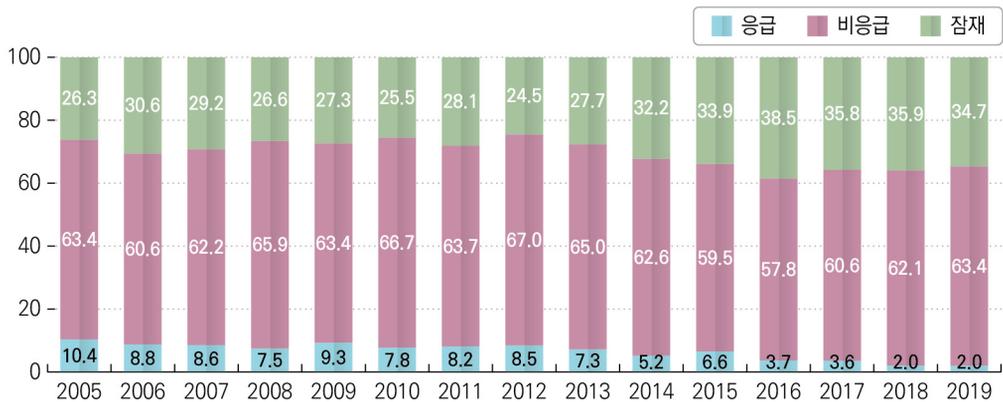
## 8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연도별 사례판정 결과를 살펴보면 응급사례는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에는 작년과 동일하게 2.0%로 지난 1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비응급 사례는 63.4%로 2015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전년 대비 1.3%p 증가하였다. 잠재적 사례의 경우 2015년 대비 40.2%(15년 1,296건 → '19년 1,817건) 증가하였다.

[표 7-8]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응급	211	200	199	177	250	240	283	291	258	184	251	159	165	105	104
	10.4	8.8	8.6	7.5	9.3	7.8	8.2	8.5	7.3	5.2	6.6	3.7	3.6	2.0	2.0
비응급	1,292	1,377	1,438	1,561	1,694	2,045	2,192	2,294	2,288	2,211	2,271	2,472	2,803	3,221	3,322
	63.4	60.6	62.2	65.9	63.4	66.7	63.7	67.0	65.0	62.6	59.5	57.8	60.6	62.1	63.4
잠재	535	697	675	631	730	783	966	839	974	1,137	1,296	1,649	1,654	1,862	1,817
	26.3	30.6	29.2	26.6	27.3	25.5	28.1	24.5	27.7	32.2	33.9	38.5	35.8	35.9	34.7
계	2,038	2,274	2,312	2,369	2,674	3,068	3,441	3,424	3,520	3,532	3,818	4,280	4,622	5,188	5,243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그림 7-7] 연도별 사례판정 비율 추이



## 9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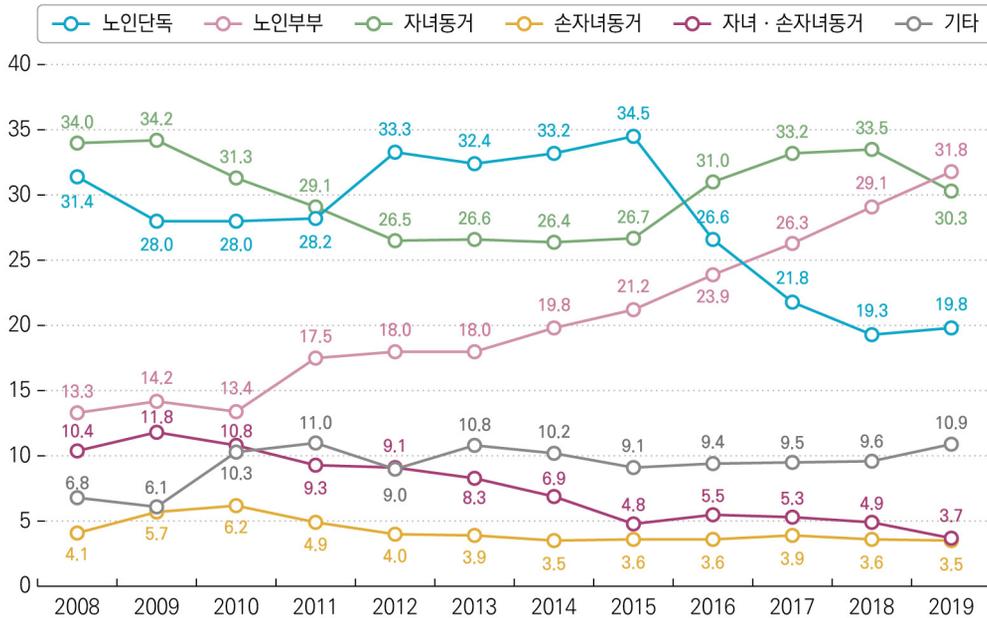
2019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를 살펴보면 노인부부가 31.8%로 가장 많고, 자녀동거(30.3%) - 노인단독가구(19.8%) - 기타가구(10.9%)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단독가구는 2015년 이후 노인부부가구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단독가구는 2012년 33.3%에서 2015년 34.5%로 증가하였으나, 201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9년에는 19.8%로 감소하였다. 노인부부가구는 2015년 21.2%에서 2019년 31.8%로 10.6%p 증가하였다.

[표 7-9]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단위: 건,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노인 단독	743	750	858	970	1,140	1,141	1,172	1,318	1,140	1,007	999	1,039
	31.4	28.0	28.0	28.2	33.3	32.4	33.2	34.5	26.6	21.8	19.3	19.8
노인 부부	315	379	412	603	618	635	701	808	1,023	1,216	1,512	1,669
	13.3	14.2	13.4	17.5	18.0	18.0	19.8	21.2	23.9	26.3	29.1	31.8
자녀 동거	806	914	960	1,003	909	937	932	1,021	1,328	1,536	1,738	1,588
	34.0	34.2	31.3	29.1	26.5	26.6	26.4	26.7	31.0	33.2	33.5	30.3
손자녀 동거	97	153	190	167	136	137	123	139	154	178	187	182
	4.1	5.7	6.2	4.9	4.0	3.9	3.5	3.6	3.6	3.9	3.6	3.5
자녀· 손자녀 동거	247	315	331	321	312	291	244	185	234	245	252	195
	10.4	11.8	10.8	9.3	9.1	8.3	6.9	4.8	5.5	5.3	4.9	3.7
기타	161	163	317	377	309	379	360	347	401	440	500	570
	6.8	6.1	10.3	11.0	9.0	10.8	10.2	9.1	9.4	9.5	9.6	10.9
계	2,369	2,674	3,068	3,441	3,424	3,520	3,532	3,818	4,280	4,622	5,188	5,243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그림 7-8]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비율 추이

## 10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를 보면 2019년 학대행위자 중 아들의 비율은 31.2%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배우자의 학대가 증가하여 2005년 6.5%였던 것이 2019년에는 30.3%로 약 5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반면 본인이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돌보지 않는 사례는 2018년 240명(4.2%)에서 2019년에는 200명(3.5%)으로 2016년 이후 계속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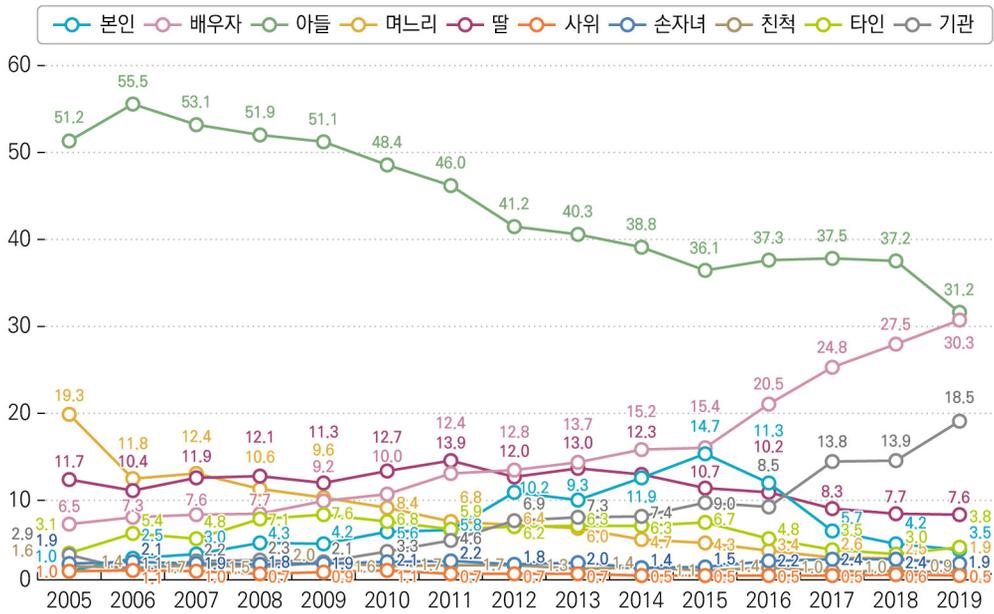
시설학대 증가와 함께 기관종사자에 의한 학대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379명(9.0%) 대비 2019년 1,067명(18.5%)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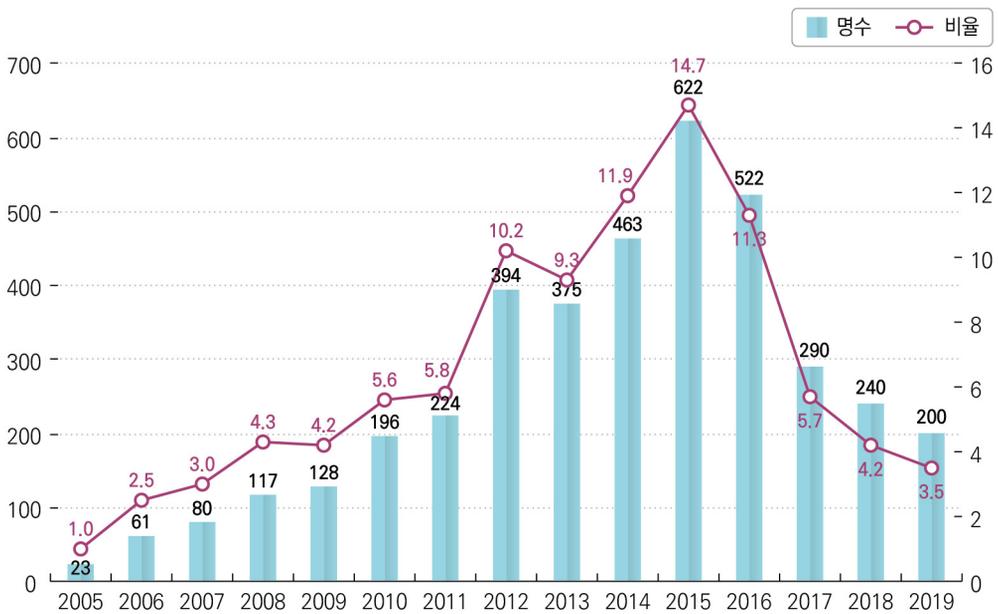
[표 7-10]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단위: 명,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본인	23	61	80	117	128	196	224	394	375	463	622	522	290	240	200
	1.0	2.5	3.0	4.3	4.2	5.6	5.8	10.2	9.3	11.9	14.7	11.3	5.7	4.2	3.5
배우자	156	184	200	210	279	347	481	494	551	588	652	952	1,263	1,557	1,749
	6.5	7.3	7.6	7.7	9.2	10.0	12.4	12.8	13.7	15.2	15.4	20.5	24.8	27.5	30.3
아들	1,237	1,393	1,399	1,416	1,544	1,686	1,777	1,586	1,619	1,504	1,523	1,729	1,913	2,106	1,803
	51.2	55.5	53.1	51.9	51.1	48.4	46.0	41.2	40.3	38.8	36.1	37.3	37.5	37.2	31.2
며느리	466	296	328	290	291	293	263	248	240	184	183	157	131	143	109
	19.3	11.8	12.4	10.6	9.6	8.4	6.8	6.4	6.0	4.7	4.3	3.4	2.6	2.5	1.9
딸	283	260	315	330	342	441	538	463	519	476	451	475	424	436	438
	11.7	10.4	11.9	12.1	11.3	12.7	13.9	12.0	13.0	12.3	10.7	10.2	8.3	7.7	7.6
사위	25	26	27	20	28	37	25	27	28	18	21	23	27	34	27
	1.0	1.1	1.0	0.7	0.9	1.1	0.7	0.7	0.7	0.5	0.5	0.5	0.5	0.6	0.5
손자녀	45	52	51	50	58	73	87	69	81	56	64	103	124	134	112
	1.9	2.1	1.9	1.8	1.9	2.1	2.2	1.8	2.0	1.4	1.5	2.2	2.4	2.4	1.9
친척	38	36	46	42	59	55	64	67	54	56	46	63	49	59	50
	1.6	1.4	1.7	1.5	2.0	1.6	1.7	1.7	1.3	1.4	1.1	1.4	1.0	1.0	0.9
타인	75	136	127	193	228	237	228	239	253	246	283	221	176	168	222
	3.1	5.4	4.8	7.1	7.6	6.8	5.9	6.2	6.3	6.3	6.7	4.8	3.5	3.0	3.8
기관	70	28	59	62	62	115	179	267	293	285	379	392	704	788	1,067
	2.9	1.1	2.2	2.3	2.1	3.3	4.6	6.9	7.3	7.4	9.0	8.5	13.8	13.9	18.5
파악 안됨	-	36	4	-	-	-	-	-	-	-	-	-	-	-	-
	-	1.4	0.2	-	-	-	-	-	-	-	-	-	-	-	-
계	2,418	2,508	2,636	2,730	3,019	3,480	3,866	3,854	4,013	3,876	4,224	4,637	5,101	5,665	5,77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그림 7-9]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그림 7-10] 연도별 학대행위자 본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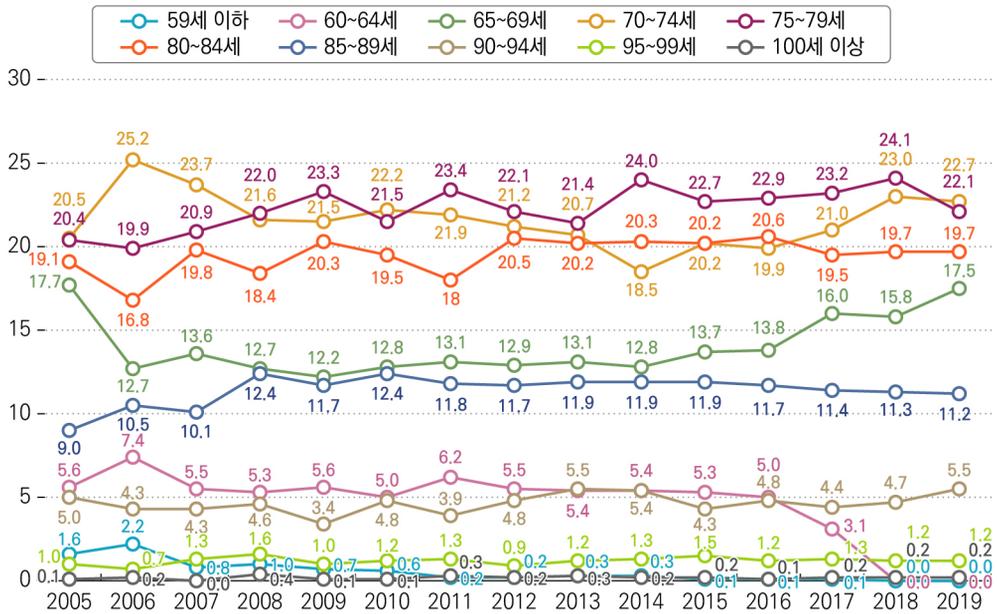
## 11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연도별 학대피해노인의 연령대를 보면 전체적인 추이는 연도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70세 미만의 비율은 계속해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 90대에서는 소폭 증가추이를 보였다.

[표 7-11]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단위: 건,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9세 이하	33	51	19	23	20	17	8	8	12	9	3	5	4	-	-
	1.6	2.2	0.8	1.0	0.7	0.6	0.2	0.2	0.3	0.3	0.1	0.1	0.1	-	-
60~64세	114	169	127	126	151	153	214	188	189	191	204	213	141	-	-
	5.6	7.4	5.5	5.3	5.6	5.0	6.2	5.5	5.4	5.4	5.3	5.0	3.1	-	-
65~69세	361	289	314	300	326	392	451	443	462	452	524	589	740	819	919
	17.7	12.7	13.6	12.7	12.2	12.8	13.1	12.9	13.1	12.8	13.7	13.8	16.0	15.8	17.5
70~74세	418	573	547	511	574	681	752	726	728	654	771	852	969	1,193	1,189
	20.5	25.2	23.7	21.6	21.5	22.2	21.9	21.2	20.7	18.5	20.2	19.9	21.0	23.0	22.7
75~79세	416	452	483	522	624	660	804	755	753	846	865	978	1,071	1,250	1,157
	20.4	19.9	20.9	22.0	23.3	21.5	23.4	22.1	21.4	24.0	22.7	22.9	23.2	24.1	22.1
80~84세	389	381	457	437	542	599	618	701	712	716	770	881	900	1,020	1,031
	19.1	16.8	19.8	18.4	20.3	19.5	18.0	20.5	20.2	20.3	20.2	20.6	19.5	19.7	19.7
85~89세	183	239	234	294	314	379	405	399	420	421	456	499	525	588	586
	9.0	10.5	10.1	12.4	11.7	12.4	11.8	11.7	11.9	11.9	11.9	11.7	11.4	11.3	11.2
90~94세	101	98	100	108	91	147	134	165	193	191	163	206	204	245	289
	5.0	4.3	4.3	4.6	3.4	4.8	3.9	4.8	5.5	5.4	4.3	4.8	4.4	4.7	5.5
95~99세	20	17	30	39	28	38	46	31	42	46	56	53	58	61	63
	1.0	0.7	1.3	1.6	1.0	1.2	1.3	0.9	1.2	1.3	1.5	1.2	1.3	1.2	1.2
100세 이상	3	5	1	9	4	2	9	8	9	6	6	4	10	12	9
	0.1	0.2	0.0	0.4	0.1	0.1	0.3	0.2	0.3	0.2	0.2	0.1	0.2	0.2	0.2
계	2,038	2,274	2,312	2,369	2,674	3,068	3,441	3,424	3,520	3,532	3,818	4,280	4,622	5,188	5,243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그림 7-11]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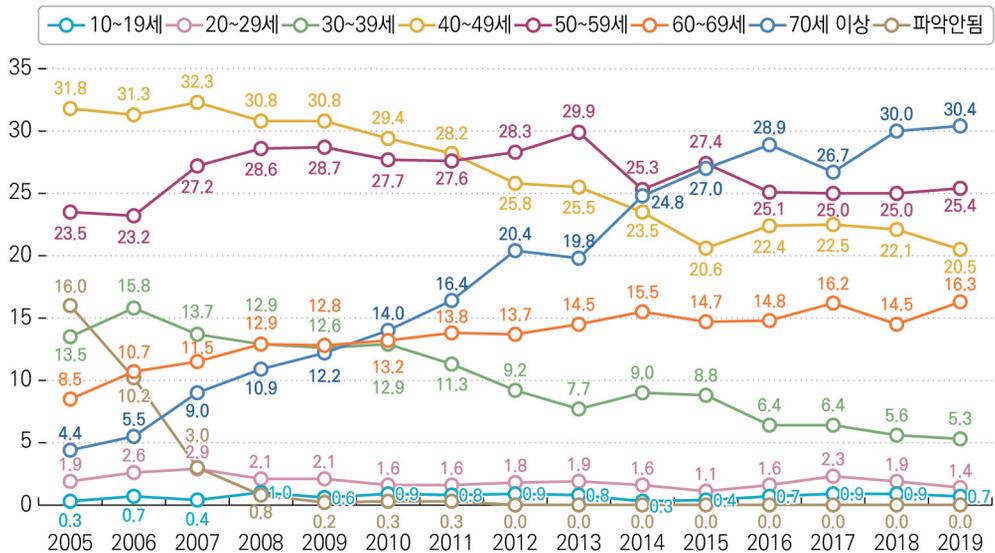
## 12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2019년 학대행위자의 연령대 현황을 살펴보면 70세 이상이 1,759건(30.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50~59세가 1,465건(25.4%)으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 성인자녀 등에 의한 학대 발생 비율이 높았던 이전과는 달리, 갈수록 노(老) - 노(老)학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7-12]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단위: 명,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0~19세	7	18	11	26	19	32	30	34	31	12	18	33	46	50	42
20~29세	0.3	0.7	0.4	1.0	0.6	0.9	0.8	0.9	0.8	0.3	0.4	0.7	0.9	0.9	0.7
30~39세	46	65	77	57	62	55	61	69	75	63	46	76	115	105	81
40~49세	1.9	2.6	2.9	2.1	2.1	1.6	1.6	1.8	1.9	1.6	1.1	1.6	2.3	1.9	1.4
50~59세	327	396	361	353	381	449	436	353	310	347	372	296	325	318	306
60~69세	13.5	15.8	13.7	12.9	12.6	12.9	11.3	9.2	7.7	9.0	8.8	6.4	6.4	5.6	5.3
70세 이상	770	783	851	841	930	1,022	1,090	993	1,022	911	870	1,040	1,150	1,253	1,184
파악 안됨	31.8	31.3	32.3	30.8	30.8	29.4	28.2	25.8	25.5	23.5	20.6	22.4	22.5	22.1	20.5
계	569	583	718	781	866	964	1,068	1,091	1,201	981	1,156	1,166	1,275	1,414	1,465
파악 안됨	23.5	23.2	27.2	28.6	28.7	27.7	27.6	28.3	29.9	25.3	27.4	25.1	25.0	25.0	25.4
계	205	268	302	353	386	460	536	528	580	602	622	687	827	824	940
파악 안됨	8.5	10.7	11.5	12.9	12.8	13.2	13.8	13.7	14.5	15.5	14.7	14.8	16.2	14.5	16.3
계	107	139	236	298	369	484	633	786	794	960	1,140	1,339	1,363	1,701	1,759
파악 안됨	4.4	5.5	9.0	10.9	12.2	14.0	16.4	20.4	19.8	24.8	27.0	28.9	26.7	30.0	30.4
계	387	256	80	21	6	12	12	-	-	-	-	-	-	-	-
파악 안됨	16.0	10.2	3.0	0.8	0.2	0.3	0.3	-	-	-	-	-	-	-	-
계	2,418	2,508	2,636	2,730	3,019	3,478	3,866	3,854	4,013	3,876	4,224	4,637	5,101	5,665	5,777
파악 안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그림 7-12]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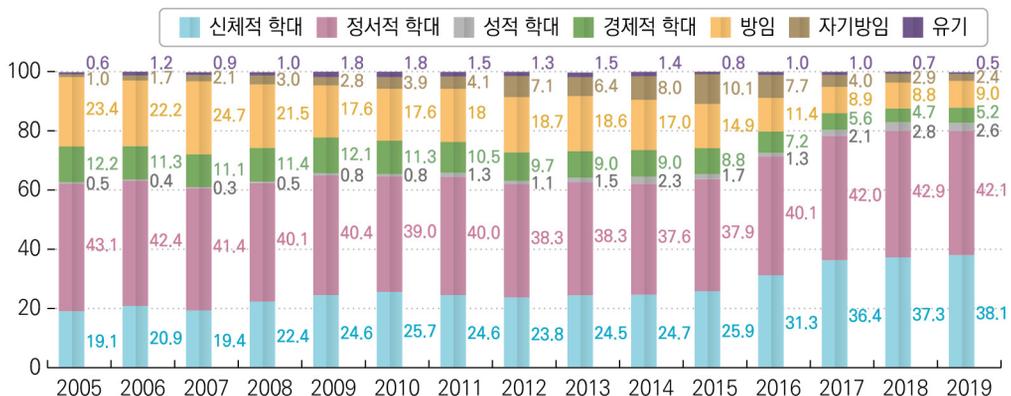
## 13 연도별 학대 유형 건수

연도별 학대 유형 현황을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학대의 경우 2014년 이후 감소 경향을 보였으나, 2019년에는 5.2%(426건)로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성적 학대, 자기 방임, 유기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 7-13] 연도별 학대 유형 건수

(단위: 건,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신체적 학대	665	768	739	874	1,127	1,304	1,419	1,326	1,430	1,426	1,591	2,132	2,651	3,046	3,138
	19.1	20.9	19.4	22.4	24.6	25.7	24.6	23.8	24.5	24.7	25.9	31.3	36.4	37.3	38.1
정서적 학대	1,499	1,557	1,577	1,561	1,853	1,981	2,307	2,134	2,235	2,169	2,330	2,730	3,064	3,508	3,465
	43.1	42.4	41.4	40.1	40.4	39.0	40.0	38.3	38.3	37.6	37.9	40.1	42.0	42.9	42.1
성적 학대	18	15	12	20	37	39	72	63	90	131	102	91	150	228	218
	0.5	0.4	0.3	0.5	0.8	0.8	1.3	1.1	1.5	2.3	1.7	1.3	2.1	2.8	2.6
경제적 학대	425	415	422	446	554	574	607	540	526	521	542	491	411	381	426
	12.2	11.3	11.1	11.4	12.1	11.3	10.5	9.7	9.0	9.0	8.8	7.2	5.6	4.7	5.2
방임	816	816	941	839	806	891	1,038	1,042	1,087	984	919	778	649	718	741
	23.4	22.2	24.7	21.5	17.6	17.6	18.0	18.7	18.6	17.0	14.9	11.4	8.9	8.8	9.0
자기방임	36	61	80	117	129	196	236	394	375	463	622	523	291	240	200
	1.0	1.7	2.1	3.0	2.8	3.9	4.1	7.1	6.4	8.0	10.1	7.7	4.0	2.9	2.4
유기	22	43	34	40	82	91	86	71	89	78	48	66	71	55	41
	0.6	1.2	0.9	1.0	1.8	1.8	1.5	1.3	1.5	1.4	0.8	1.0	1.0	0.7	0.5
계	3,481	3,675	3,805	3,897	4,588	5,076	5,765	5,570	5,832	5,772	6,154	6,811	7,287	8,176	8,229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그림 7-13] 연도별 학대 유형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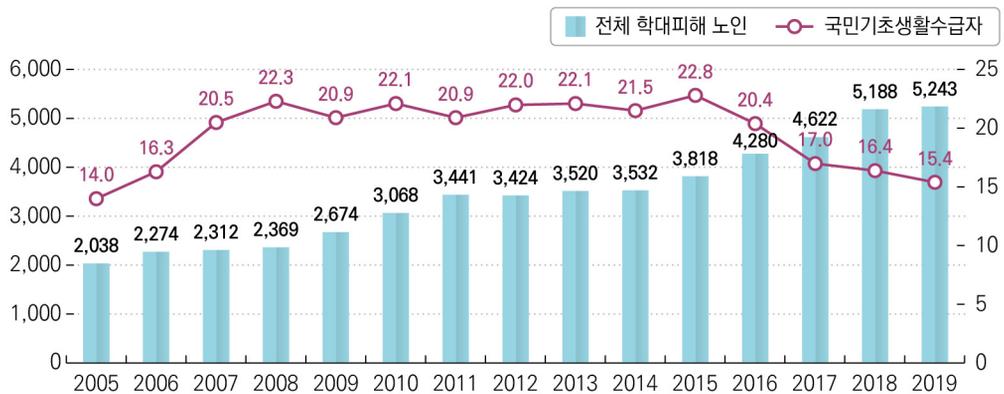
## 14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연도별 학대피해노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285명에서 2019년 810명으로 2.8배 이상의 증가를 보였다. 학대피해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비중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간 20%대였으나 2019년에는 15.4%로 감소하였다.

[표 7-14]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단위: 명,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85	370	474	528	559	679	719	753	778	758	870	871	785	851	810
전체 학대피해노인	2,038	2,274	2,312	2,369	2,674	3,068	3,441	3,424	3,520	3,532	3,818	4,280	4,622	5,188	5,243
비율 (%)	14.0	16.3	20.5	22.3	20.9	22.1	20.9	22.0	22.1	21.5	22.8	20.4	17.0	16.4	15.4



[그림 7-14]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추이

## 15 연도별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연도별 학대행위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7년에 이어 2019년에는 9.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5] 연도별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단위: 명,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100	130	206	248	300	369	367	429	449	445	546	947	575	591	544
	4.1	5.2	7.8	9.1	9.9	10.6	9.5	11.1	11.2	11.5	12.9	20.4	11.3	10.4	9.4
전체 학대 행위자	2,418	2,508	2,636	2,730	3,019	3,480	3,866	3,854	4,013	3,876	4,224	4,637	5,101	5,665	5,777



[그림 7-15] 연도별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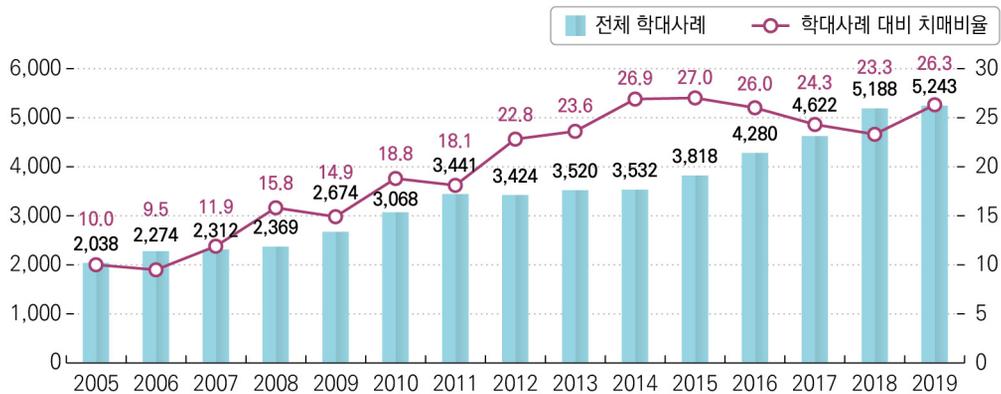
## 16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학대피해노인의 치매정도는 학대피해노인이 병원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치매진단과 상담원이 상담과정에서 파악한 객관적, 주관적 정보와 함께 간이정신상태검사지표<sup>28)</sup>를 활용하여 치매가 의심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치매의심으로 분류된다. 치매진단을 받았거나 치매가 의심되는 사례는 2015년 1,030건에서 2019년 1,381건으로 34.1% 증가하였다. 2019년 학대사례 대비 치매의심 및 진단사례 비율은 26.3%로 2018년 23.3%와 대비하여 3%로 증가하였다.

[표 7-16]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단위: 건,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 학대사례	2,038	2,274	2,312	2,369	2,674	3,068	3,441	3,424	3,520	3,532	3,818	4,280	4,622	5,188	5,243	
치매 정도	치매 의심	157	159	174	248	264	386	389	452	459	488	561	593	488	507	550
	치매 진단	47	56	102	126	135	191	233	330	372	461	469	521	634	700	831
	계	204	215	276	374	399	577	622	782	831	949	1,030	1,114	1,122	1,207	1,381
학대사례 대비 치매의심 및 진단사례 비율	10.0	9.5	11.9	15.8	14.9	18.8	18.1	22.8	23.6	26.9	27.0	26.0	24.3	23.3	26.3	



[그림 7-16]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치매 비율 추이

28) 치매 선별용 한국어판 간이정신상태검사(Korea version of MMSE for Dementia Screening: MMSE-DS)



2019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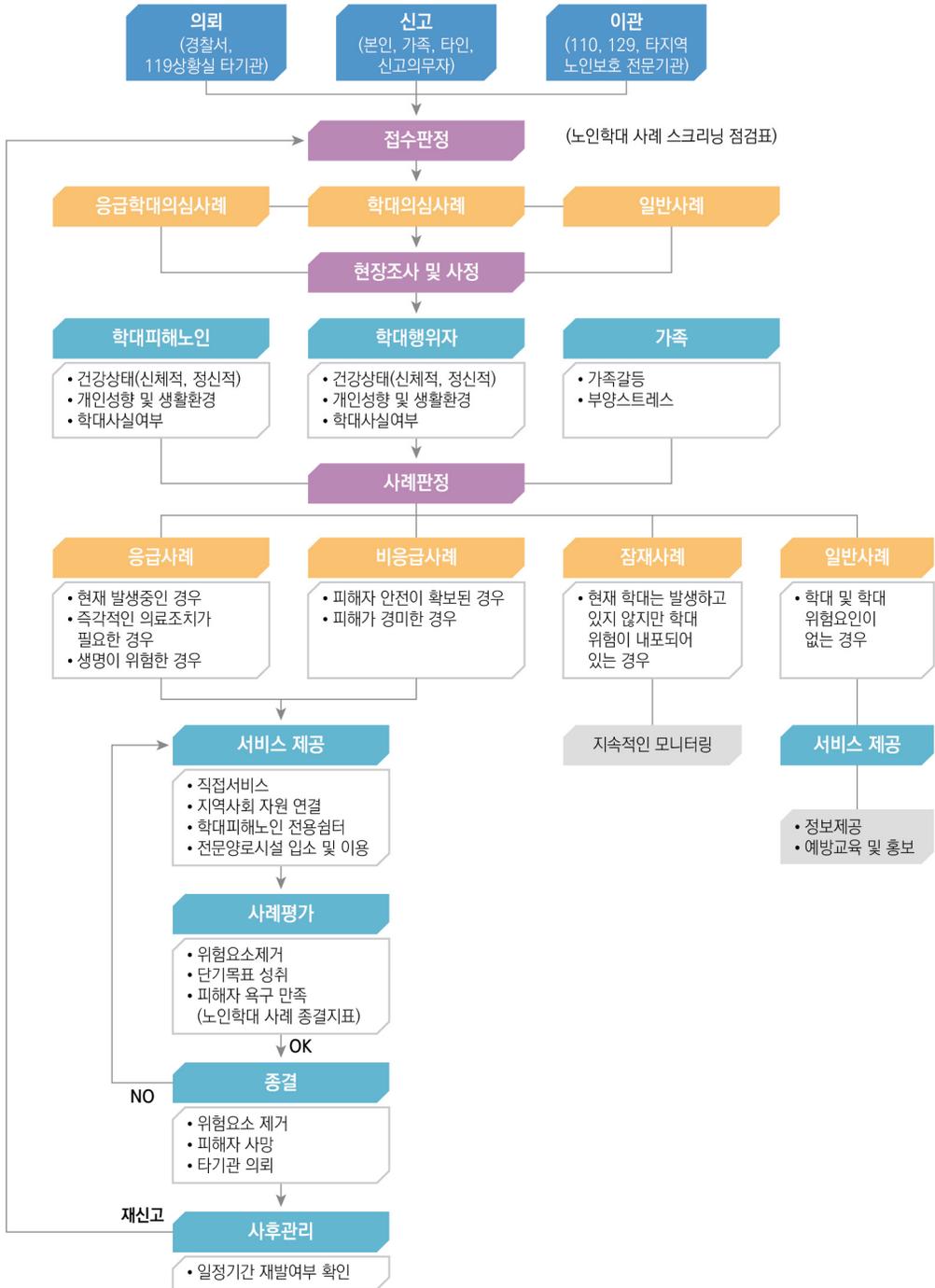
## 제8장 부 록

- ▣ 노인학대사례 업무진행도
- ▣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 노인학대사례 업무진행도





## ➔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2020. 6. 현재)

구 분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중 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가길 14 4층	02)3667-1389	www.noinboho.or.kr
서울특별시 남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124	02)3472-1389	www.seoul1389.or.kr
서울특별시 북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 69 대성빌딩 2층(수유3동)	02)921-1389	www.sn1389.or.kr
서울특별시 서부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말로10길 30-1	02)3157-6389	www.sw1389.or.kr
부산광역시동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38 연합뉴스빌딩 5층	051)468-8850 051)441-8359	www.bs1389.or.kr
부산광역시서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8번길46, 제이에스빌 5층	051)867-9119	1389.bulgukto.or.kr
대구남부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128, 3층	053)472-1389	www.dg1389.or.kr
대구북부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 284	053)357-1389	www.dgn1389.or.kr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인천시사회복지관 204호	032)426-8792~4	www.ic1389.or.kr
인천서부	인천 서구 완정로165번안길 12 2층	032-569-5382	www.innoin1389.or.kr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남구 사직안길 18	062)655-4155~7	www.gjw.or.kr/kj1389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170번길 103	042)472-1389 042)472-1390	www.dj1389.or.kr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 오산2길 28-2, 1층	052)265-1389 052)265-1380	www.us1389.or.kr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01번길 1, 4층	031)268-1389	www.gepa.co.kr
경기동부 <sup>29)</sup>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1, 505호	031)736-1389	www.kg1389.or.kr
경기북부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104, 5층	031)821-1461	www.gnnoin.kr
경기서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중로 68, 2층	032)683-1389	www.ggw1389.or.kr

구 분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강원도	강원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110번지 강원도사회복지관 2층	033)253-1389	www.1389.or.kr
강원동부	강원도 강릉시 울곡로 2954, 3층	033)655-1389	www.gd1389.or.kr
강원남부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170 새한빌딩 2층	033-744-1389	www.gn1389.co.kr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438번길 39-17(신봉동) 3층 사무실	043)259-8120~2	www.cb1389.or.kr
충청북도 북부	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76(지현동 1498번지)	043)846-1380~2	www.cbb1389.or.kr
충청남도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206번길 42(모종동)	041)534-1389 041)534-9222	www.cn1389.or.kr
충청남도 남부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9 2층	041)734-1389 041)734-1398	www.cnn1389.or.kr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57-23	063)273-1389	www.jb1389.or.kr
전북서부	전북 군산시 진포로 151번지 광동빌딩 3층	063)443-1389	www.jbw1389.or.kr
전라남도 동부	전남 순천시 저전길 84	061)742-3071 061)753-1389	www.jn1389.or.kr
전라남도 서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5길 전라남도노인회관 4층	061)281-2391	www.j1389.or.kr
경상북도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흥로 411 기쁨의복지관 B102	054)248-1389	www.noin1389.or.kr
경북서북부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24-21	054)655-1389	www.gbnw1389.or.kr
경북서남부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아포대로 981-8	054)436-1390	www.gbwn1389.or.kr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문화북4길(평화동) 금강노인복지관C동 2층	055)222-1389	www.gn1389.or.kr
경상남도 서부권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1098 2층	055)754-1389	www.gnw1389.co.kr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7길 3	064)757-3400	www.jejunoin.org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660, 2층(동홍동)	064)763-1999	http://sgpnoin.org/

29) 2020년 경기남부에서 경기동부로 명칭 변경을 하였음.



## 2019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인 쇄 일 : 2020년 6월

발 행 일 : 2020년 6월

발 행 인 :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편집기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02) 3667-1389

인 쇄 : 경성문화사 02) 786-2999

---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나비새김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